

경희궁 유보라 입주자모집공고



※ 본 아파트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행위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콜센터는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이용안내 및 기본적인 청약자격 상담을 하고 있으며 고객 상담 과정에서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한 정확하지 않은 정보의 제공으로 일부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청약콜센터 상담내용은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자세한 문의사항은 사업주체를 통해 확인하시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청약 시 부적격 방지를 위해 아래의 사항을 안내드리오니 유념하시어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1. 특별공급 청약시	- 특별공급은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청약신청할 수 없습니다. 주로 부부가 동시 청약하여 부적격 판정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으므로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생애최초 특별공급 추천제 청약시 1인 가구 중 단독세대는 전용면적 60㎡이하 주택형에 한하여 청약이 가능 하오니 전용면적 60㎡초과하는 주택형에 청약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가점제 청약시	- 무주택기간은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하고 주택공급신청자의 연령이 만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산정하여야 하고, 만30세 이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기산하여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 부양가족 산정은 청약자 본인을 제외하고 산정하여야 합니다. 청약자 본인을 부양가족 산정시 포함하여 부적격으로 판정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부양가족 산정시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은 주택공급신청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인 경우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 부양가족으로 봅니다. 단,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명이라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습니다.	
3. 일반공급 청약시	- 해당 주택건설지역(서울시 서대문구)는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으로 일반공급 1순위 청약시 입주자모집공고일(2024.02.22.) 현재 1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세대원도 1순위 청약 자격이 부여됩니다.

- 본 아파트는 2023.11.10.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 본 아파트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4.02.22.입니다.(청약자격조건의 기간, 나이, 지역우선 등의 청약자격조건 판단기준일입니다.)
- 해당 주택건설지역(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은 「주택법」 제63조 및 제63조의2에 의한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으로서, 본 아파트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1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도 1순위 자격이 부여됩니다.
- 본 아파트는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모든 주택(민간 사전청약, 분양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에 한하여 1인 1건만 신청이 가능하며, 2건 이상 중복신청 시 모두 무효처리 또는 당첨자 선정 이후에도 당첨 무효(예비입주자 지위 무효)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단, 동일단지 내 1인이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에 각 1건씩 청약가능하며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 시 일반공급 선정 대상에서 제외처리 함)
- 본 아파트는 수도권 내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의 민간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미착용 민영주택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따른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지 않고 기존 주택 당첨 여부와 관계없이 본 아파트 청약이 가능합니다. (단, 본 제도는 당첨된 청약통장의 재사용을 허용하는 제도가 아니므로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 본 아파트의 당첨자로 선정 시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가 제한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24.02.22.) 현재 서울특별시에 거주하거나 경기도 및 인천광역시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만19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 [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인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의 경우 청약이 가능합니다. 다만, 청약 신청자 중 같은 순위 내에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서울특별시 거주자가 우선합니다.
- 2019.11.0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5항 및 제23조제2항제7호에 따라 우선공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 출입국사실증명서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합니다. 장기해외체류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신청이 불가하며, 이를 위반하여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됩니다.

출입국사실증명서 해외체류기간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한 기간(입국 후 7일 내 동일국가 재출국 시 계속하여 해외에 체류한 것으로 봄) 국외에 거주한 기간은 국내 거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해당 주택건설지역으로 청약할 수 없습니다. 단, 90일 이내의 여행, 출장, 파견 등 단기 해외체류는 국내거주로 간주되어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1)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2)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한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불인정되며 기타지역 거주자라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8항에 따라 세대원 중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3, 제2조제4호에 의거 ‘세대’ 및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정의가 변경되었습니다.
 -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부모, 장인·장모, 시부모, 조부·조모, 외조부·외조모 등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하 같음)**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아들·딸, 사위·며느리, 손자·손녀, 외손자·외손녀 등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전혼자녀 등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 나목에 의거 주택(분양권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는 직계존속과 직계존속의 배우자는 가점제 항목의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습니다.

부양가족 판단 시 직계비속은 미혼자녀와 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혼의 손자녀인 경우에 한정하여 인정됩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7호의2, 제23조제4항, 제53조에 의거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을 소유한 경우 주택 소유로 간주하오니, 주택소유 여부 판정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참조)

※ 주택 소유로 보는 분양권등의 범위(국토교통부령 부칙 제3조, 제565호, 2018.12.11. 시행)

- **분양권등 신규 계약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정비사업) 또는 사업계획(지역주택조합)’ 승인을 신청한 주택의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공급계약 체결일’ 기준 주택 소유로 봄 (*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공급받은 경우는 제외되나, 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경우 주택소유로 봄)

- **분양권등 매수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매수 신고한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매매대금 완납일’(실거래 신고서상) 기준 주택 소유로 봄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7호의3에 의거 “소형·저가주택등”은 분양권등을 포함하며,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 제외)을 기준으로 가격을 판단합니다.

※ “소형·저가주택등”이란,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로서 주택가격이 1억원(수도권은 1억6천만원) 이하인 주택 또는 분양권등 (주택가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 가목2)의 기준에 따름)

■ 신청자격은 당청자를 대상으로 전산조회, 제출서류 등을 통해 사업주체에서 확인하며, 확인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청된 사실이 판명될 경우에는 부적격 당청자로서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일정기간 입주자 저축 사용 및 입주자선정 제한 등)을 받으시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신청자격, 기준, 일정, 방법, 유의사항 등을 정확히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자격	특별공급					일반공급	
	기관추천	다자녀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1순위	2순위
청약통장	필요 (6개월이상, 예치금) ※ 단, 월거민 및 도시재생 부 지제공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불필요	필요 (6개월이상, 예치금) ※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이상인 자	필요 (6개월이상, 예치금) ※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이상인 자	필요 (1순위, 12개월이상, 예치금) ※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이상인 자	필요 (1순위, 12개월이상, 예치금) ※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이상인 자	필요 (1순위, 12개월이상, 예치금) ※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이상인 자	필요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세대주 요건	-	-	-	필요	-	-	-
소득 또는 자산기준	-	-	적용	-	적용	-	-

※ 1순위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가입기간이 12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납입한 자

※ 2순위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였으나,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자

■ 본 아파트는 건전한 청약문화 정착을 위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 이전에 ①청약통장 가입은행 및 취급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동인증서를 신청 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거나, ②금융인증서, ③네이버인증서, ④KB국민인증서, ⑤토스인증서 ⑥신한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한국부동산원에서 운영하는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청약 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청약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으며, 아래와 같이 인증서 로그인이 가능하오니 서비스 이용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약신청구분	공동인증서 (☑ 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 (YESKEY)	네이버인증서	KB국민인증서	토스인증서	신한인증서
APT(특별공급/1·2순위)	○	○	○	○	○	○

- 단, APT 중 청약통장을 사용하지 않는 기관추천 특별공급(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월거민 주택 소유자) 청약자는 공동인증서 및 금융인증서만 사용 가능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0조 제1항에 따라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입주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실시합니다.

■ 본 아파트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제2항에 의거 청약접수 시 주택형별로 전용면적 60㎡이하의 주택과 전용면적 60㎡초과~85㎡이하의 주택에 대하여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입주자저축 가입 기간’을 점수로 계산하여 당청자를 선정하는 ‘청약가점제’를 우선적으로 적용하여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본 주택의 해당순위(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1순위, 2순위)의 청약자격과 입주자저축 요건을 충족 시,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않아도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격으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도권에서 건설되는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서울특별시) 아닌 기타지역(경기도 및 인천광역시) 거주자로 봅니다.

■ 2021.2.2.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9항에 의거 국방부 「군 주택공급 입주자 선정 훈령」 제18조에 따른 25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중 국방부(국군복지단)에서 추천한 자는 수도권(투기과열지구 가 아닌 지역으로 한정) 청약 시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않아도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보아 해당지역 거주자격으로 청약신청이 가능합니다.(해당지역의 의무거주기간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25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청약 추천자는 청약Home을 통한 인터넷(PC·모바일) 청약만 가능(건본주택 또는 은행 창구접수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고령자, 장애인, 다자녀가구(단, 미성년자녀 3명 이상)의 최하층 우선배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제1호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인 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 제2호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 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 제3호 미성년자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자 또는 세대에 속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신청(특별 및 일반공급)시 최하층의 주택배정을 희망한 당첨자에 대해서 해당 층을 우선 배정하오니 청약 시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하층이라 함은 1층을 말하며 1층이 없는 경우 최저층을 말하며, 해당 주택의 분양 가격이 바로 위층 주택의 분양가격보다 높은 경우는 제외한다)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제3호에 해당하는 자 사이에 경쟁이 있으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우선 배정합니다. 단, 신청자가 많은 경우 다른 층을 배정받을 수 있고, 적은 경우에는 미신청자(최하층 우선배정 신청 비대상자 포함)에게도 최하층이 배정될 수 있습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제1항제1호다목에 의거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 시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전 기존주택을 처분하여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경우 2순위 자격이 부여됩니다(부칙 제5조 신혼부부 특별공급 특례).

■ 신청접수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청약홈 및 LH청약플러스 등의 기관을 통해 청약접수 및 당첨자 선정을 진행하는 경우 포함)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신청 할 경우에는 모두를 무효처리 및 (민간 사전청약)당첨자 선정 후에도 무효처리 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단, 본인이 같은 주택에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중복신청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본인이 동일주택에 특별공급 중복청약 시에는 모두 무효처리)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에 의거 특별공급 신청 방법이 「건본주택 방문 신청」에서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인터넷 청약 신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접수를 원칙으로 하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및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만 사업주체 건본주택에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5조제7항에 의거 특별공급 대상 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의 입주자는 다른 공급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며,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의2에 의거 특별공급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도록 신설되었으며, 특별공급 접수종류 구분없이 주택형별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특별공급 당첨자 및 특별공급 예비입주자 선정 방식
- ① 각 주택형별 특별공급 종류별로 입주자를 선정
 - ② ①번에서 입주자가 선정 후 남은 세대가 있는 경우 다른 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기관추천특별공급 예비자 포함)에게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
 - ③ ②번 이후에도 낙첨자가 발생한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특별공급 세대수의 500%를 예비입주자로 선정
 - ④ 특별공급 신청자 수가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500%에 미달하는 경우 낙첨자 모두를 예비입주자로 선정하고, ②번 선정 후에도 잔여 세대가 있는 경우 일반공급 세대수로 전환

■ 2017.09.20.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제6항제2호에 의거 본 주택에 가정제로 당첨되신 분은 당첨일로부터 2년간 가정제 당첨 제한자로 관리되오니, 향후 당첨자 본인 및 세대원이 가정제가 적용되는 민영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가정제 제한사항 적용여부를 확인하신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 마이페이지 > 청약제한사항)

■ 본 아파트에 1순위 청약 시 모집공고일 현재 과거 2년 이내 가정제로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추첨제로 청약접수해야 합니다. 또한, 가정제 제한 청약자가 가정제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부적격 처리되오니 청약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2순위 접수방법이 「청약신청금 납부」에서 「청약통장 사용」으로 변경되었으니 2순위로 청약하고자 하시는 분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지역별 예치금액과 상관없이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부금 포함)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제8항에 의거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수도권 및 광역시에서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주택수보다 추첨 대상자가 많은 경우, 다음 순서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1.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되는 주택수의 75% : 무주택세대구성원
- 2. 나머지 25%의 주택(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 포함) : 무주택세대구성원과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
-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공급한 후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 1순위에 해당하는 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에게 공급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의2제1항 및 제26조제1항에 따라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은 순위에 따라 대상 주택수의 50퍼센트를 예비입주자로 선정합니다. 선정된 예비입주자 현황은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로부터 180일까지(예비입주자가 소진될 경우에는 그 때까지로 함) 당사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s://www.경희공유보라.com)에 공개되며, 공개기간이 경과한 다음 날에 예비입주자

의 지위는 소멸되며, 예비입주자의 지위가 소멸될 때 예비입주자와 관련한 개인정보는 파기처리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19.12.06.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에 의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는 청약신청자가 예비입주자 선정 총수에 미달되어도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순번을 부여합니다.

-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선정 시 주택형태로 공급 세대수의 500%를 아래와 같이 선정합니다.
 - 1순위 : 공급 세대수의 500%까지 지역우선공급을 적용하여 가점이 높은 자를 앞 순번으로 선정
 - 2순위 : 1순위에서 미달된 예비공급세대수 만큼 지역우선공급을 적용하여 추첨으로 선정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입주자로 선정된 자 중 당첨이 취소되거나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자 또는 공급계약을 해약한 자가 있으면 소멸기간이 지난 후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순번에 따라 공급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의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의 참가의사를 표시한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 대하여는 특별공급 물량을,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 대하여는 일반공급 물량을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하여 공급하고, 특별공급 물량 중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의 제6항에 의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예비입주자로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으며, 동·호수 배정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비입주자의 동호수배정일(당첨일)이 입주자 선정일보다 빠른 경우 예비입주자 계약체결은 가능하며 입주자선정내역은 무효처리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제2항에 따라 주택의 공급계약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사실 공고일부터 11일이 경과한 후 3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기간 동안에 체결합니다.

■ 부동산 거래신고,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신고 의무화로 비규제지역인 서울시 서대문구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및 별표1 규정에 의거 주택매매 계약(최초 공급계약 및 분양권·입주권 전매를 포함)의 부동산거래 신고 시 자금조달계획과 입주계획서 및 매수자 본인이 입주할지 여부, 입주 예정시기 등 거래대상 주택의 이용계획의 신고를 의무화 하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규정에 의거 부동산 계약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동산거래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신고에 따른 필요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공해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비·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부동산거래와 관련한 인지세 납부 안내

- 공급계약 등 부동산거래와 관련된 제세공과금은 계약자가 납부하여야 하며, 아파트 공급계약서는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에 해당되며, 발코니확장계약서 및 추가선택 품목 계약서는 인지세법상 '도급문서'로서 인지세 납부대상으로 「인지세법」 제1조 제항에 의거 사업주체와 분양계약자는 과세기준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연대하여 정부수입인지 형태로 균등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납부하지 않거나 과소납부,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분실했을 경우 발생하는 문제는 계약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수입인지 사이트(www.e-revenuestamp.or.kr) 또는 우체국, 은행에서 전자수입인지를 구입해야 합니다.]

※ 세액은 기재금액이 1천만원 초과 ~ 3천만원 이하 : 2만원 / 3천만원 초과 ~ 5천만원 이하 : 4만원 /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 7만원 /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15만원 / 10억원 초과 : 35만원입니다.

-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의거하여 공동주택 공급계약서와 권리의무승계(전매)계약서는 인지세법상 '부동산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로서 과세대상이므로 계약자는 과세기준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기재금액은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부동산거래 계약서에 기재된 실거래가격(분양대금과 프리미엄을 합한 금액)으로 등기원인서류로 등기소에 제출하기로 한 계약서에는 전자수입인지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2022.12.31. 개정된 「인지세법」 제8조 제3항에 따라 공급계약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함.) 단, 부적격당첨, 공급질서 교란행위, 위장전입 등의 사유로 향후 계약이 취소될 경우 사업주체에 인지세 환불을 요구할 수 없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순위요건을 만족하였으나, 청약 신청 전 청약통장을 해지한 경우에는 청약이 불가합니다.

■ 본 아파트의 전매제한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특별공급	일반공급
전매제한기간	당첨자 발표일로부터 1년	

※ 단, 「주택법」 및 「주택법 시행령」 등 관련 법령 개정에 따라 전매제한기간, 해당제한 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해당제한 기간 : 본 아파트는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따른 해당제한을 적용받지 않고 기존 주택당첨 여부와 관계없이 본 아파트 청약이 가능합니다.(단, 본 제도는 당첨된 청약통장의 재사용을 허용하는 제도가 아니며, 당첨통장은 계약여부에 상관없이 재사용 불가합니다.)
- 향후 1순위 자격 제한 : 본 아파트의 당첨자로 선정 시 당첨자 및 그 세대에 속한자(배우자, 직계존·비속, 세대분리된 배우자와 그 세대원)는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내 공급되는 주택의 1순위 접수제한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가정제 당첨 제한 : 2017.09.20.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제6항제2호에 의거 본 아파트에 가정제로 당첨된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당첨일로부터 2년간 가정제 당첨제한자로 관리되오니, 당첨자 본인 및 그 세대에 속한 자가 가정제가 적용되는 민영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가정제 당첨제한 사항 적용 여부를 확인하신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에 1순위 청약 시 모집공고일 현재 과거 2년 이내 가정제로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추첨제로 청약접수하여야 합니다. 또한, 가정제 제한 청약자가 가정제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부적격 처리되오니 청약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전매금지 및 해당제한, 가정제 당첨 제한 및 1순위자격 제한 등의 사항은 청약시점의 관계법규의 적용을 받으며, 향후 관계법규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부적격 당첨자(계약자)의 당첨(계약)취소

- 본 입주자모집공고의 자격제한 및 유의사항을 숙지한 후 청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행위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또한 당첨자로 선정되거나 계약을 체결한 이후라도 관계법령 및 공급자격 적격 여부에 따라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위장전입 및 불법 전매제한 등을 통한 부정합 당첨자는 「주택법」 제65조 및 「주민등록법」 제37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2021.02.19.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6조에 따라 「주택법」 제64조제1항 및 제65조제1항을 위반하여 적발된 경우, 위반한 행위를 적발한 날부터 10년간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하시어 부적격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제3항에 의거 부적격으로 당첨이 취소된 자는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 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민간 사전청약 및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투기 적발자 처벌(「주택법」 제64조, 제65조 및 제101조)

- 분양과 관련하여 주택 청약통장 및 주택 분양권을 불법 거래하다가 적발된 자는 「주택법」에 따라 주택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형사 고발되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거나 3천만원(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게 될 수 있습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6조에 따라 공급질서 교란자에 대해서는 공공주택지구, 투기과열지구 및 그 외 지역 모두 주택유형에 상관 없이 10년간 청약이 금지되며 입주자 자격에서 제외됩니다.

- 불법거래를 알선 또는 중개한 부동산업자에 대해서도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자격정지, 등록취소 등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 이와 관련하여 법원 등 공공기관으로부터 위법 여부 확인 등을 위한 개인정보 제공 요청시 사업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부정합 방법으로 공급받은 주택의 분양권이 제3자에게 전매된 경우에는 공급계약 취소 등에 관한 「주택법」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제2항의 공급계약을 체결하기 전 제출하는 서류 중 제2항제2호의 주민등록표등·초본은 과거 주소 변동사항 및 변동사유, 세대 구성일 및 사유, 발생일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제2항제7호의 출입국사실증명원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5항에 따라 거주기간을 정하여 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 제출대상에 해당하며,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된 것이어야 합니다.

■ 청약 및 계약 등 주요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구분	특별공급 (기관추천, 다자녀,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일반공급		당첨자발표	당첨자(예비입주자 포함) 자격검증서류 제출 (서류심사 및 부적격확인)	계약체결
		1순위 (해당/기타)	2순위			
일정	2024.03.04.(월)	2024.03.05.(화)	2024.03.06.(수)	2024.03.12.(화)	2024.03.15.(금) ~ 21.(목)	2024.03.25.(월) ~ 27.(수)
방법	인터넷 청약 (09:00 ~ 17:30)	인터넷 청약 (09:00 ~ 17:30)	인터넷 청약 (09:00 ~ 17:30)	개별조회 (청약Home 로그인 후 조회 가능)	건본주택 방문 (10:00 ~ 17:00)	
장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주체 건본주택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 청약통장 가입은행 구분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p>경희궁 반도 유보라 건본주택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23] * 서류제출, 계약일정 및 운영시간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p>		

※ 고령자,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해 특별공급은 건본주택 방문접수(10:00~14:00, 은행창구 접수 불가), 일반공급은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09:00~16:00)에서 청약 가능합니다.(단, 은행 영업정별 업무 시간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신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국방부(국군복지단) 추천한 "25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추천자"는 청약Home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청약만 가능(건본주택 또는 은행 창구접수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스마트폰앱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스마트폰앱을 이용하여 청약할 경우에는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공동인증서를 청약홈 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거나, 금융인증서, 네이바인증서, KB국민인증서, 토스인증서 또는 신한인증서를 미리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3.11.10. 시행된 내용 관련 자세한 사항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문은 작성 당시 법령 및 정책 등의 규정에 의거하여 작성하였으며, 이후 정책변경 및 법 개정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그로 인하여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I 공급내역 및 공급금액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거정비과 - 1401호(2024.02.20.)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 공급위치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영천동 69-20외 160필지

■ 공급규모 : 아파트 지하 5층, 지상 23층 2개동 총 199세대 중 일반분양 108세대(조합원 공급 91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특별공급 51세대(일반[기관추천] 10세대, 다자녀가구 8세대, 신혼부부 19세대, 노부모부양 4세대, 생애최초 10세대 포함)]

■ 입주시기 : 2026년 07월 예정(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 공급대상

(단위 : ㎡ / 세대)

주택 구분	주택관리번호	모델	주택형 (전용면적기준)	약식표기	주택공급면적(㎡)			기타 공용면적 (지하주차장등)	계약 면적	세대별 대지비분	총공급 세대수	특별공급 세대수						일반공급 세대수	최하층 우선배정 세대수
					주거 전용면적	주거 공용면적	소계					기관 추천	다자녀 가구	신혼 부부	노부모 부양	생애 최초	계		
민영 주택	2024000074	01	059.9494	59	59.9494	24.9720	84.9214	58.2614	143.1828	19.8702	42	4	2	8	1	5	20	22	4
		02	084.3669A	84A	84.3669	33.6645	118.0314	81.9915	200.0229	27.7583	3	0	0	0	0	0	0	3	2
		03	084.9994B	84B	84.9994	30.4248	115.4242	82.6061	198.0303	27.4575	50	5	5	9	2	4	25	25	4
				84B1	84.9994	30.4248	115.4242	82.6061	198.0303	27.4575									
		04	084.3669C	84C	84.3669	30.3987	114.7656	81.9915	196.7571	27.2809	13	1	1	2	1	1	6	7	1
합 계											108	10	8	19	4	10	51	57	11

- ※ 청약신청시 반드시 위 공급대상의 '주택형'으로 청약하여야 합니다.
- ※ 주택공급신청서의 "주택형" 또는 "형"란은 입주자모집공고상 주택형(㎡)으로 기재하니 평형으로 오해하여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라며, 주택규모 표시방법을 종전의 평형 대신 넓이 표시법 정단위인 제곱미터(㎡)로 표기하였으니 청약 신청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평형환산방법 : 공급면적(㎡) × 0.3025 또는 공급면적(㎡) ÷ 3.3058]
-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기타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생활지원센터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 최하층이라 함은 각호의 최저층을 말하며 5층 또는 5층이 필로티인 경우 필로티 바로 위층을 최저층으로 합니다.
- ※ 상기 면적은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표현되므로 면적 계산상 소수점 이하 단수조정으로 인하여 연면적과 세대별 계약면적 합과는 약간의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이는 공급금액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 주택형 표기방식이 기존(전용면적+주거공용면적)에서 주거전용면적만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으니 이점 유념하시어 청약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 상기 세대별 주거공용면적은 당해 세대 또는 동의 공용부분 실제면적과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동일 주택형의 경우라도 해당세대 주거공용부분은 동별로 형태 및 면적 등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 특별공급 미 청약분은 일반공급으로 전환됨에 따라 일반공급 세대수는 특별공급의 청약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주택형 표시 안내

주택형	059.9494	084.3669A	084.9994B		084.3669C
약식표기	59	84A	84B	84B1	84C

- ※ 상기 주택형 084.9994B는 084.9994B타입, 084.9994B1타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 동일한 주택형이라 하여도 타입별 세부면적과 해당동, 라인, 층은 상이할 수 있으니 입주자모집공고 내용 확인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 ※ 상기 주택형에 청약 시 타입별 주택형을 선택하실 수 없으니, 입주자모집공고 내용을 숙지하신 후 청약에 임하시길 바랍니다.
- ※ 청약신청 시 반드시 위 공급대상의 '주택형'으로 청약하여야 합니다. [청약접수는 층·호별 구분 없이 청약순위별로 접수하여 관계법령 등에 의거하여 호수가 배정됩니다.]
- ※ 주택형의 구분은 공고상의 표기이며, 견본주택 및 홍보 제작물은 약식으로 표현되었으니, 청약 및 계약 시 주택형에 대한 혼동 방지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주거공용공간, 지하주차장, 부대복리시설, 커뮤니티, 조경공간, 아파트임연 색채, 단지 내/외 도로(인도, 차도, 자전거도로, 비상차량 동선 등) 등은 실시공시 대관 인·허가 과정이나, 조합의 계획변경, 구조 및 성능개선을 위하여 현장여건에 따라 면적과 계획이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각 세대의 공용면적, 기타공용면적, 계약면적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공급금액 및 납부일정(발코니 확장금액 별도)

(단위 : 세대, 원)

주택형	약식 표기	동/호별	층 구분	해당 세대수	분양가격			계약금 (10%)	중도금 (60%)						잔금 (30%)
									1회	2회	3회	4회	5회	6회	
					대지비	건축비	총분양가	계약시	2024.07.11.	2024.11.11.	2025.03.11.	2025.07.11.	2025.11.11.	2026.03.11.	입주지정일
059.9494	59	101동 1,2호	5층	3	462,202,950	563,547,050	1,025,750,000	102,575,000	102,575,000	102,575,000	102,575,000	102,575,000	102,575,000	102,575,000	307,725,000
			6층	4	466,708,950	569,041,050	1,035,750,000	103,575,000	103,575,000	103,575,000	103,575,000	103,575,000	103,575,000	103,575,000	310,725,000
			7~9층	12	468,961,950	571,788,050	1,040,750,000	104,075,000	104,075,000	104,075,000	104,075,000	104,075,000	104,075,000	104,075,000	312,225,000
		102동 2,5호	10~19층	20	470,764,350	573,985,650	1,044,750,000	104,475,000	104,475,000	104,475,000	104,475,000	104,475,000	104,475,000	104,475,000	313,425,000
			20층이상	3	472,566,750	576,183,250	1,048,750,000	104,875,000	104,875,000	104,875,000	104,875,000	104,875,000	104,875,000	104,875,000	314,625,000
084.3669A	84A	102동 1,6호	5층	2	599,635,950	731,114,050	1,330,750,000	133,075,000	133,075,000	133,075,000	133,075,000	133,075,000	133,075,000	133,075,000	399,225,000
			6층	1	604,141,950	736,608,050	1,340,750,000	134,075,000	134,075,000	134,075,000	134,075,000	134,075,000	134,075,000	134,075,000	402,225,000
084.9994B	84B	101동 3호	5층	2	599,635,950	731,114,050	1,330,750,000	133,075,000	133,075,000	133,075,000	133,075,000	133,075,000	133,075,000	133,075,000	399,225,000
			6층	2	604,141,950	736,608,050	1,340,750,000	134,075,000	134,075,000	134,075,000	134,075,000	134,075,000	134,075,000	134,075,000	402,225,000
			7~9층	6	605,493,750	738,256,250	1,343,750,000	134,375,000	134,375,000	134,375,000	134,375,000	134,375,000	134,375,000	134,375,000	403,125,000
		102동 4호	10~19층	11	606,845,550	739,904,450	1,346,750,000	134,675,000	134,675,000	134,675,000	134,675,000	134,675,000	134,675,000	134,675,000	404,025,000
			20층이상	3	607,746,750	741,003,250	1,348,750,000	134,875,000	134,875,000	134,875,000	134,875,000	134,875,000	134,875,000	134,875,000	404,625,000
	84B1	101동 4호	5층	2	599,635,950	731,114,050	1,330,750,000	133,075,000	133,075,000	133,075,000	133,075,000	133,075,000	133,075,000	133,075,000	399,225,000
			6층	2	604,141,950	736,608,050	1,340,750,000	134,075,000	134,075,000	134,075,000	134,075,000	134,075,000	134,075,000	134,075,000	402,225,000
			7~9층	6	605,493,750	738,256,250	1,343,750,000	134,375,000	134,375,000	134,375,000	134,375,000	134,375,000	134,375,000	134,375,000	403,125,000
		102동 3호	10~19층	13	606,845,550	739,904,450	1,346,750,000	134,675,000	134,675,000	134,675,000	134,675,000	134,675,000	134,675,000	134,675,000	404,025,000
			20층이상	3	607,746,750	741,003,250	1,348,750,000	134,875,000	134,875,000	134,875,000	134,875,000	134,875,000	134,875,000	134,875,000	404,625,000
			084.3669C	84C	101동 5호	5층	1	599,635,950	731,114,050	1,330,750,000	133,075,000	133,075,000	133,075,000	133,075,000	133,075,000
6층	1	604,141,950				736,608,050	1,340,750,000	134,075,000	134,075,000	134,075,000	134,075,000	134,075,000	134,075,000	402,225,000	
7~9층	3	605,493,750				738,256,250	1,343,750,000	134,375,000	134,375,000	134,375,000	134,375,000	134,375,000	134,375,000	403,125,000	
10~17층	8	606,845,550				739,904,450	1,346,750,000	134,675,000	134,675,000	134,675,000	134,675,000	134,675,000	134,675,000	134,675,000	404,025,000

※ 편집 및 인쇄 과정에서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본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0조에 의거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구분하였으며, 동 규정에 의거 중도금 납부일자는 건축공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공동사항

- 상기 공급금액은 분양가 자율화에 따라 공급총액 범위 내에서 주택형별, 향별, 층별 등으로 사업주체가 적의 조정하여 책정한 금액이며, 전용면적 85㎡이하 주택은 부가가치세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 상기 공급금액에는 각 주택형별 소유권이전등기비용, 취득세 등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상기 공급금액은 추가 선택품목(가구, 가전 등 유상옵션) 금액이 포함되지 아니한 금액이며, 추가 선택품목은 계약자가 선택하여 계약하는 사항으로, 별도의 계약을 통해 선택이 가능합니다.
- 오피스텔 및 판매시설은 상기 공급대상 및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상기 공급금액 납부일정은 사전에 계약자 본인이 확인하고 청약 및 계약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에는 계단, 복도, 벽체, 주현관 등 주거공용면적과 지하주차장, 관리실, 주민공동시설, 기계/전기실 등의 그 밖의 공용면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상기 세대별 전용면적 및 계약면적은 소수점 이하 단수조정으로 등기면적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단, 소수점 이하 면적변경에 대해서는 정산금액 없습니다.)
- 상기 세대별 대지지분은 주택법 및 관련 법령에 의거 주택형별 공급면적(주거전용+주거공용)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으며, 향후 입주시 지적확정측량 결과 및 공부정리 결과에 따라 대지면적 증감이 있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공급금액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상기 세대별 공급면적, 계약면적 및 대지지분은 인·허가 과정,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절차 상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법령이 허용하는 오차 범위 내에서 증감이 있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정산요구를 할 수 없습니다.
- 상기 공급금액의 항목별 공시내용은 사업에 실제 소요된 비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층수는 건립 동별, 해당 주택형이 속한 라인의 최상층 기준입니다.(필로티가 있는 동은 필로티 공간에 해당하는 층·호수를 적용하여 층·호수를 산정하였으며, 실제 층수에 해당하는 층·호수를 고려하여 분양가를 산정하였습니다.)

- 공급금액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며, 잔금은 사용검사일 이후에 받으며 입주(열쇠 불출일) 전에 완납하여야 합니다. 단, 임시사용승인을 얻어 입주하는 경우에는 전체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잔금을 입주일에 납부하고, 전체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잔금은 사용검사일 이후에 납부하여야 합니다.(대지권에 대한 등기는 공부정리절차 등의 이유로 실입주일과는 관계없이 다소 지연될 수 있으며, 위 단서 조항은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 분양대금(계약금, 중도금, 잔금) 납부일이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익일 은행영업일을 기준으로 합니다.(연체료 납부시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로 인해 납부가 지연되는 경우라도 납부지연에 따른 연체일수로 산정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중도금 또는 잔금을 납부일자 이전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공급계약서의 할인율(선납 당일 기준)을 적용하여 선납일수에 따라 산정된 금액이 할인됩니다. 단, 잔금에 대하여는 입주지정기간 최초일 기준으로 이전에 납부한 경우에는 선납할인이 적용되며 입주지정기간에는 선납할인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계약자는 분양대금의 총 10% 완납 후 사업주체가 알선한 대출취급기관의 중도금 대출을 통해 중도금을 납입할 수 있으나, 중도금 대출 관련 정부 및 금융기관의 정책(중도금 대출의 제한 등), 대출기관의 규제 등으로 인해 대출 알선이 불가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계약자는 상기 분양대금(중도금 및 미납대금, 연체료 포함)을 납부일정에 따라 계약자의 부담으로 사업주체에게 납부하여야 합니다.
- ※ 중도금대출 금융기관의 알선은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의무사항이 아니며 정부정책, 금융기관,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사정 등으로 대출 알선 불가 및 대출관련 제반 사항[대출 취급기관(제1·2금융권 및 기타 대출방식 포함), 대출금리 조건 등]이 변경되더라도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 ※ 사업주체가 알선한 금융기관을 통해 중도금 대출 신청이 가능할 경우에도 대출 미신청자와 본인의 사유(보증제한, 신용불량 등)로 인하여 대출이 불가한 계약자는 상기 납부일정에 맞추어 본인이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 사업주체의 대출 알선이 불가하거나 개인별 대출축소·대출불가 등의 사유로 계약해지를 요청할 수 없으며, 계약자의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사업주체 등에게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잔금은 사용승인일 이후에 받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0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임시사용승인(동별사용검사 포함)을 얻어 입주하는 경우에는 총 공급대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잔금을 입주일에 납부하고, 총 공급대금의 10%에 해당하는 잔금은 사용승인일 기준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대지권에 대한 등기는 공부정리 절차 등의 이유로 실입주일과는 관계없이 다소 지연될 수 있으며, 본 조항은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 사업주체 및 시공사는 분양대금 납부일정을 별도로 통지하지 않습니다.
- 분양대금 납부일정은 사전에 계약자 본인이 숙지하고 청약 및 계약체결을 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 본 아파트는 정부가 출자한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분양보증을 받은 아파트로서, 사업주체가 장래에 주택도시보증공사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주택건설 사업부지(지상건출물을 포함한다)를 신탁하는 경우는 입주예정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본 아파트에 대한 신청자격 등 판단 시 기준이 되는 면적은 주거전용면적이고, 연령조건은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며,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등(초)본을 기준으로 하며, 당첨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본인의 책임과 비용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소명기간 이내에 소명을 완료하여야만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주민등록표등(초)본상 말소사실이 있는 경우 거주지역 및 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합니다.)
- 입주예정자의 사전방문에 대해서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제3항제27호 규정 및 「주택법」 제48조의2, 동법 시행령 제53조의2 및 제53조의3, 동법 시행규칙 제20조의2 및 제20조의3에 의하여 사전 방문 행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정확한 사전방문 예정일자는 별도 통보할 예정입니다.
- 입주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관리비선수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 분양가에 계산되지 않았거나, 변경되는 토지 관련 조세는 추후 부과되는 실과세금액을 입주자 잔금 납부시 납부하여야 합니다.
- 부동산 거래로 인해 발생하는 각종 제세공과금은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본 아파트 계약체결시 계약자의 부담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본 아파트의 지반(공급위치), 단지명칭, 동 표시, 외부 색채와 계획, 조경시설물 등이 관계기관 심의 및 협의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청약(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및 분양계약 시 모든 제출서류는 원본서류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한 원본서류는 계약여부와 상관없이 반환하지 않습니다.(사본불가)
- 전산검색결과 당첨 사실, 이중 당첨 및 주택 소유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므로 청약 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동주택(아파트)의 판매시점에 따라 향후 분양 및 판매조건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변경된 분양 및 판매조건은 소급해서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수분양자는 이와 관련하여 이의를 제기하실 수 없습니다.
- 본 표시재산의 구조물 등 제반사항은 설계도면 등을 통하여 반드시 확인 후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확인하지 못한 사항으로 인한 이의제기 및 그 밖의 인쇄물이나 구두약정의 내용은 인정하지 아니합니다.
- 본 주택에 적용된 단지 명칭, 사업주체의 브랜드 등은 향후 사업주체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II 특별공급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 방법

■ 특별공급 신청자격별·주택형별 공급세대수

구 분		59	84B	84C	합 계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국가보훈처	국가유공자	1	1	1	3
		장기복무 제대군인	-	1	-	1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1	1	-	2
	중소기업 근로자		1	1	-	2
	장애인	서울특별시	1	1	-	2
		경기도	-	-	-	-
		인천광역시	-	-	-	-
소계		4	5	1	10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서울특별시 거주자(50%)		1	3	1	5
	수도권(경기도, 인천광역시) 거주자(50%)		1	2	-	3
	소계		2	5	1	8
신혼부부 특별공급		8	9	2	19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1	2	1	4	
생애최초 특별공급		5	4	1	10	
합 계		20	25	6	51	

※ 주택형별 특별공급대상 세대수는 공급세대수, 비율 등을 감안하여 배정하였으며 배정 호수가 없는 주택형에 대하여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신혼부부) 2021.11.16.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50%(소수점 이하 올림)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00%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에게 우선공급하며, 세대수의 20%(소수점 이하 올림. 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40%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이하)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한다)합니다. 남은 세대수는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자산기준을 만족하는 신청자와 소득기준공급의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공급합니다.

※ (생애최초) 2021.11.16.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50%(소수점 이하 올림)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30%이하인 자에게 우선공급하며, 세대수의 20%(소수점 이하 올림. 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60%이하인 자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한다)합니다. 남은 세대수는 1인 가구 신청자,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자산기준을 만족하는 신청자 및 소득기준공급의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공급합니다.

■ 특별공급 공통사항

구분	내용
1회 한정/ 자격요건/ 자격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특별공급 주택을 분양받고자 하는 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에 따라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이 가능하고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향후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으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제1호 및 제8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특별공급 횟수 제한 제외)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요건, 청약자격요건 및 해당 특별공급별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무주택 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세대 내 무주택세대구성원(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주 한정) 중 1인만 신청가능하며,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의 구성원(부부 포함)이 중복 청약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체결 불가, 부적격당첨자로 관리되며 당첨일부터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민간 사전청약 및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당첨 제한] - 기관추천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 생애최초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 -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주 요건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3 및 제4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하 같음)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p>청약자격 요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관추천 특별공급(국가유공자, 장애인, 철거민 및 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제외)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자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85㎡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 노부모부양 /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자(※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신청자는 세대주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85㎡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p>※ 각 청약통장으로 신청가능한 전용면적 이하에 해당되는 주택형에만 청약 가능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청약예금의 예치금액]</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25%;">구 분</th> <th style="width: 25%;">서울특별시(및 부산광역시)</th> <th style="width: 25%;">인천광역시(그 밖의 광역시)</th> <th style="width: 25%;">경기도(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th> </tr> </thead> <tbody> <tr> <td>전용면적 85㎡ 이하</td> <td style="text-align: center;">300만원</td> <td style="text-align: center;">250만원</td> <td style="text-align: center;">200만원</td> </tr> <tr> <td>전용면적 102㎡ 이하</td> <td style="text-align: center;">600만원</td> <td style="text-align: center;">400만원</td> <td style="text-align: center;">300만원</td> </tr> <tr> <td>전용면적 135㎡ 이하</td> <td style="text-align: center;">1,000만원</td> <td style="text-align: center;">700만원</td> <td style="text-align: center;">400만원</td> </tr> <tr> <td>모든면적</td> <td style="text-align: center;">1,500만원</td> <td style="text-align: center;">1,000만원</td> <td style="text-align: center;">500만원</td> </tr> </tbody> </table> <p>※ '지역'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에 따른 거주지역을 말합니다.</p> 	구 분	서울특별시(및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그 밖의 광역시)	경기도(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전용면적 85㎡ 이하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600만원	40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1,000만원	700만원	400만원	모든면적	1,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구 분	서울특별시(및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그 밖의 광역시)	경기도(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전용면적 85㎡ 이하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600만원	40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1,000만원	700만원	400만원																		
모든면적	1,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p>유의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별공급 각 유형에서 미달세대 발생 시 타 유형의 특별공급 낙첨자(동일한 주택형의 낙첨자)에게 우선공급하며, 경쟁 발생 시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특별공급 예비입주자는 각 주택형별 특별공급 세대수의 500% 선정합니다. 단, 특별공급 신청자수가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500% 미만인 경우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특별공급 신청자 전원 예비입주자로 선정되며, 신청자 수가 특별공급 세대수의 600%를 초과할 경우 일부 신청자는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특별공급 각 유형(기관추천,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주택형별 낙첨자 중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 순번 부여(전체 신청자수가 특별공급 세대수의 600%에 미달하는 경우 낙첨자 모두를 예비입주자로 선정) • 특별공급 당첨 세대의 당첨 취소, 미계약 등 잔여세대 발생 시 해당 주택형별 특별공급 예비입주자 중에서 순번대로 입주자를 선정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잔여세대의 동·호수를 공개 후 이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합니다.(동·호수를 최초로 배정받은 예비입주자는 계약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며 예비입주자 명단은 당첨자명단 발표시 함께 발표됩니다.) • 특별공급 신청자가 없거나 신청자가 공급 세대수에 미달된 경우, 잔여물량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합니다. • 당첨자 발표 시 개별 통지는 하지 않으며 당첨자 명단에 대한 전화문의는 착오 안내 등의 혼동 방지를 위해 응답하지 않으니 양해 바랍니다. • 당첨자 선정과 동·호수 추첨은 한국부동산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프로그램에 의해 일반공급 당첨 대상자와 함께 진행되며 동·호수는 무작위로 결정합니다. • 본인이 특별공급 간 중복신청 할 수 없으며 중복 청약 시 모두 무효처리합니다. • 주택 소유여부의 판단에 있어 서류제출 시 무주택 증명서류로 우선 확인하며,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결과에 따른 세대원(분리세대 등)의 주택소유 여부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청약신청 시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재내용을 검색 또는 확인 결과 평점요소 자격이 다르거나 무주택 기간이 상이할 경우, 유주택자로 판명될 경우에는 분양계약 체결 이후라도 당첨 취소 및 계약해제는 물론 관련 법령에 의거 처벌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경우, 분양 일정상 계약일 이후라도 아파트 당첨 취소 및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자 및 그 세대에 속하는 자는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 제1항 제12호부터 제14호까지, 제27호의2, 제36조 제1호 및 제8호의2에 따라 주택을 특별공급하는 경우는 가능)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4항에 의거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본 주택의 해당 순위(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1순위, 2순위)의 청약자격과 입주자저축 요건 충족 시, 해당주택건설지역이 아닌 기타지역(수도권) 거주자격으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 특별공급 대상자로서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당첨자로 보며(한 차례의 특별공급 간주), 해당 구비서류 미비 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에 의거합니다. • 청약 신청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과거에 주택을 소유하였다라도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신혼부부 특별공급, 생애최초 특별공급 제외)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 시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전 기존주택을 처분하여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경우 2순위 자격이 부여됩니다.(부칙 제5조 신혼부부 특별공급 특례) ※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

- ※ 특별공급 현장접수(고령자 및 정보취약계층(장애인 등)) 시 공급 유형별 구비서류 미비자는 접수가 불가하며, 접수 마감 시간 이후에는 추가로 접수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자, 배우자, 세대구성원 등의 관계 및 신청자격 적격 여부 확인을 위해 추가로 별도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 한국부동산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기관추천 특별공급,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신혼부부 특별공급,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생애최초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방법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며, 동·호수 추첨은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무작위로 동·호수를 결정합니다.

중복청약 및 당첨 시 처리기준(공통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 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동일단지의 경우 특별공급 신청자가 일반공급에도 중복청약이 가능하나 특별공급에 당첨된 경우 일반청약은 무효로 처리(특별공급에 예비입주자로 당첨된 경우에도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선정에서 제외)하고, 특별공급 신청자가 타유형의 특별공급에 중복 청약 시 둘 다 무효처리 됩니다. 비규제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인 경우 특별공급 당첨자의 세대구성원이 동일단지(다른 단지 포함) 일반공급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둘 다 인정합니다.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 세대수의 10% 범위) : 10세대**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해당하는 자 중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특별공급 대상 해당 기관장의 추천 및 인정서류를 받으신 분.
(단, 거주요건 등 우선순위 기준은 해당 기관장이 정하며,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자는 제외함)
- ※ 청약자격요건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단, 국가유공자, 국가보훈대상자, 장애인, 철거민 및 도시재생 부지제공자 제외
- ※ 추천기관

신청구분	국가유공자	장기복무제대군인	10년이상장기복무군인	중소기업 근로자	장애인		
해당기관	서울지방보훈청 복지과		국방부 국군복지단 복지사업운영과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 성장지원과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서울시청 장애인 자립지원과	인천시청 장애인 복지과	경기도청 장애인 복지과
청약통장 구비 여부	청약통장 필요없음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해당 요건을 갖춘 자			청약통장 필요없음		
연락처	02-2125-0878		02-2225-6378	02-2110-6342	02-2133-9611	-	-

▪ **당첨자 선정방법**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의 경우 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먼저 해당기관에 신청해야 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의거하여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공급합니다.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미신청시 당첨자선정(동·호배정)에서 제외되며 계약불가]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해야 하며,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무작위 추첨으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므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은 해당 추천기관에서 자체 기준에 의거 대상자를 확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되므로 사업주체 및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한국부동산원)은 선정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 : 공급 세대수의 10% 범위) : 8세대**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내 거주하거나 수도권(경기도 및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만19세 미만의 자녀 3명(태아 포함) 이상을 둔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 경과,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과거에 주택을 소유하였다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3명 이상의 자녀 모두 민법상 미성년자(만19세 미만)이어야 함. 3명 이상의 자녀 중 전부 또는 일부가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주와 다른 지역에 거주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미성년자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 자녀수에는 태어나 입양자녀도 포함됩니다.(임신인 경우 서류제출 시 출산관련 자료(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임신 지속 시 임신진단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하며, 입양자녀는 입주 시 까지 입양자격을 유지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 허위임신, 입주 전 불법낙태 또는 파양한 경우에는 당첨취소 및 부적격 처리되어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출산 관련 자료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합니다.)
 - 입양의 경우 입주 시까지 입양자격을 유지하여야 하며, 입양자격이 유지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사업주체가 요구하는 입주서류를 제출하여 입증이 되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만 입주가 가능합니다.
 - 임신부부 또는 입양부부가 다자녀가구 특별공급의 입주자로 선정되는 경우,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에게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까지 출산 및 입양관련 서류(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진단서 등) 제출을 요구하여 출산여부 및 입양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입양의 경우에는 입주예정자가 입주하기 전에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하고, 임신부부의 임신상태가 입주지정 개시일까지 지속되는 경우에는 입주예정자가 입주하기 전에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를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입주예정자가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불법낙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사실이 판명되는 때는 공급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재혼으로 성이 다른 직계가 아닌 자녀를 부양하는 경우 자녀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녀 또는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이혼, 재혼한 경우 공급신청자 본인의 자녀는 공급신청자 또는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하여 자녀수에 포함되며, 재혼한 배우자의 친자녀(전혼 배우자의 자녀)는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하여 자녀수로 인정합니다.
 - 기타 본 입주자모집공고 상에 표시되지 않는 내용은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관련 법령에 따릅니다.

▪ **당첨자 선정방법 [거주지역 → 배점기준표 → 자녀 수 → 청약자 연령(생년월일) 높은 순]**

-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제5조에 따라 주택형별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50%를 서울특별시 거주자에게 우선공급하며, 나머지 주택(우선공급에서 미달된 주택을 포함한다.) 낙첨자와 수도권(경기도 및 인천광역시) 거주자에게 공급하며, 경쟁이 있는 경우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우선순위 배점표”에 의한 점수 순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 동일점수로 경쟁이 있을 경우 다음의 우선순위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①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태아포함) ② 자녀수가 같을 경우 공급 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 순으로 공급합니다.
 - 해당지역 우선공급에서 낙첨된 자가 수도권 거주자와 다시 경쟁하는 경우 해당지역 거주자 우선공급 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합니다.)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 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우선순위 배점 기준표(다자녀가구 특별공급 당첨자 발표 후 계약체결 전 서류접수 시 배점표에 자필 작성 및 점수 기재)**

평점요소	총배점	배점기준		비고
		기준	점수	
계	100			
미성년 자녀수(1)	40	미성년 자녀 5명 이상	40	자녀(태아, 입양아, 전혼자녀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19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만 포함
		미성년 자녀 4명	35	
		미성년 자녀 3명	30	
영유아 자녀수(2)	15	자녀 중 영유아 3명 이상	15	영유아(태아, 입양아, 전혼자녀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세 미만의 자녀
		자녀 중 영유아 2명	10	
		자녀 중 영유아 1명	5	
세대구성(3)	5	3세대 이상	5	공급신청자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무주택자로 한정)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공급신청자가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부모 가족으로 5년이 경과된 자
		한부모 가족	5	
무주택기간(4)	20	10년 이상	20	배우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정)도 무주택자이어야 하며, 무주택기간은 공급신청자 및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 청약자가 성년(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이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5년 이상 ~ 10년 미만	15	

		1년 이상 ~ 5년 미만	10	산정하되 청약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함)부터 무주택 기간 산정
해당 시·도 거주기간(5)	15	10년 이상	15	공급신청자가 성년자(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로서 수도권(서울·경기·인천)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을 산정 * 시는 광역시·특별자치시 기준이고, 도는 도·특별자치도 기준이며, 수도권의 경우 서울·경기·인천지역 전체를 해당 시·도로 본다.
		5년 이상 ~ 10년 미만	10	
		1년 이상 ~ 5년 미만	5	
입주자저축가입기간(6)	5	10년 이상	5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공급신청자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명의 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 기준으로 산정

유의사항

(1), (2)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이혼·재혼의 경우 자녀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경우(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도 포함)에 한함)

(3) : 한부모 가족의 경우 한부모가족증명서로 확인 (3), (4) : 주택소유여부 판단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를 적용

(4), (5)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주민등록표초본으로 확인 (6) : 입주자저축 가입확인서로 확인

※ 동점자 처리 ①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② 자녀수가 같을 경우 공급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

※ 공급신청자가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신청 시 작성한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 및 기재내용을 검색 또는 확인결과 평점요소 자격이 다르거나 무주택기간 오류, 유주택자 등 부적격자로 판명될 경우에는 당첨취소 및 계약해지는 물론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처벌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민등록표초본 상 말소사실이 있는 경우 당해 시·도 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합니다.

■ 신혼부부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 :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 세대수의 18% 범위) : 19세대

※ 국토교통부 공문(주택기금과-1589(2020.02.28.)), 특별공급 유형간 비율조정에 의거 주택형 59타입의 다자녀 특별공급 배정비율 축소(0.9%, 1세대) 세대를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1세대 추가 배정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경기도 및 인천광역시)에 거주하고 혼인기간이 7년 이내(혼인신고일 기준, 재혼 포함)인 무주택세대구성원(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 무주택자이어야 함*)**으로서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

* 단, 혼인기간 중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는 자는 **2018.12.11. 전에 기존 소유 주택을 처분한 이후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하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 기간이 2년을 경과한** 경우에 신혼부부 특별공급 특례에 따라 **2순위 청약 가능**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 경과,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출산은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표등본으로 판단하며, 임신의 경우 임신진단서, 입양의 경우 입양관계증명서(양자 및 친양자의 경우 입양관계 증명서 상 입양신고일이 적용됨) 등으로 확인 합니다.
- 자녀수에는 임신 중에 있는 태아, 입양자녀도 포함합니다.(임신인 경우 서류제출 시 출산관련 자료(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임신 지속 시 임신진단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하며, 입양자녀는 입주 시까지 입양자격을 유지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 허위임신, 입주 전 불법낙태 또는 파양한 경우에는 당첨취소 및 부적격 처리되어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출산관련 자료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합니다.)
- 입양의 경우 입주 시까지 입양자격을 유지하여야 하며, 입양자격이 유지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사업주체가 요구하는 입증서류를 제출하여 임증이 되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만 입주가 가능합니다.
- 임신부부 또는 입양부부가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입주자로 선정되는 경우,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에게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까지 출산 및 입양관련 서류(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 제출을 요구하여 출산여부 및 입양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입양의 경우에는 입주예정자가 입주하기 전에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하고, 임신부부의 임신상태가 입주지정 개시일까지 지속되는 경우에는 입주예정자가 입주하기 전에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를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입주예정자가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불법낙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사실이 판명되는 때는 공급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소득기준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4명 이상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한다) 기준의 140%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이하) ※ 단, 신혼부부 중 한사람의 소득은 140% 이하여야 합니다.

입주자모집공고일	상시근로자 근로소득 확인 시점	사업자 및 프리랜서 등 소득 확인 시점
2024.02.22.	(해당 세대의) 전전년도 소득	(해당 세대의) 전전년도 소득

- 자산기준 : 해당 세대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140%,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은 초과하나, 해당 세대의 부동산가액기준(3억3,100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자는 추첨제 자격으로 신청 가능

※ 부동산가액 산출기준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 및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제4조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 부과점수의 산정방법에서 정한 재산등급 29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출평균한 금액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은 3인 이하 세대에만 해당하며, 4명 이상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적용합니다.

※ 소득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신혼부부특별공급 신청이 제한되며 부적격 처리될 수 있으며, 관련 서류의 제출 책임은 공급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혼인가간은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하며, 재혼을 포함하나 동일인과 재혼한 경우에는 이전 혼인 기간을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 기타 본 입주자모집공고 상에 표시되지 않는 내용은 「신혼부부 특별공급 운용지침」 관련 법령에 따릅니다.

▪ **당첨자 선정 방법 [소득 → 순위 → 거주지역 → 미성년 자녀 수]**

- **2021.11.16.**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 ① 세대수의 50%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00% 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에게 우선공급
 - ② 세대수의 20%(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40%** 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이하)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
 - ③ 남은 주택(일반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140%,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은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기준을 충족하는 자(일반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경쟁이 있는 경우 당첨자 선정방법**

- 우선공급 또는 일반공급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제1순위에 해당하는 자에게 우선공급 합니다.
 - ① 제1순위 :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가간 중 자녀를 출산(임신 중이거나 입양한 경우 포함)하여 자녀가 있는 자[「민법」 제855조제2항에 따라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외의 출생자(현재 혼인관계인 배우자와의 자녀를 혼인신고일전에 출생신고한 경우를 말함)를 포함]
 - * 재혼일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가간 내 임신 중이거나 출산(입양포함)한 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
 - ② 제2순위 : 1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 무자녀 또는 2018.12.11. 전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
- 같은 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당첨자 선정방법
 - ①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서울특별시**) 거주자
 - ② 미성년 자녀(태아를 포함한다) 수가 많은 자
 - * 재혼인 경우 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입양한 미성년자녀(전혼자녀)를 포함하되, 그 자녀가 신청자 또는 세대 분리된 재혼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 상에 등재되어야 함.
 - * 재혼 배우자의 친자녀(전혼 배우자의 자녀)는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만 해당
 - ③ 미성년 자녀(태아를 포함한다) 수가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정된 자
- 추첨제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순위 상관없이 해당 주택건설지역(**서울특별시**) 거주자한테 우선공급하고,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으로 결정합니다.

※ **2022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2024년 적용)**

공급유형		구분	2022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 (2024년 적용)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소득 기준 구분	우선공급 (기준소득, 50%)	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100% 이하	~6,509,452원	~7,622,056원	~8,040,492원	~8,701,639원	~9,362,786원	~10,023,933원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00%초과~120% 이하	6,509,453원~ 7,811,342원	7,622,057원~ 9,146,467원	8,040,493원~ 9,648,590원	8,701,640원~ 10,441,967원	9,362,787원~ 11,235,343원	10,023,934원~ 12,028,720원
	일반공급 (상위소득, 20%)	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100%초과~140%이하	6,509,453원~ 9,113,233원	7,622,057원~ 10,670,878원	8,040,493원~ 11,256,689원	8,701,640원~ 12,182,295원	9,362,787원~ 13,107,900원	10,023,934원~ 14,033,506원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초과~160%이하	7,811,343원~ 10,415,123원	9,146,468원~ 12,195,290원	9,648,591원~ 12,864,787원	10,441,968원~ 13,922,622원	11,235,344원~ 14,980,458원	12,028,721원~ 16,038,293원
소득기준 초과 / 자산기준 충족 (추첨제, 30%)		배우자가 소득이 없는 경우	140%초과, 부동산가액(3.31억원) 충족	9,113,234원~	10,670,879원~	11,256,690원~	12,182,296원~	13,107,901원~	14,033,507원~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초과, 부동산가액(3.31억원) 충족	10,415,124원~	12,195,291원~	12,864,788원~	13,922,623원~	14,980,459원~	16,038,294원~

- 기준소득 :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부부 중 1인 소득이 월평균 소득기준 100%초과시 일반공급 20%(상위소득)[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월평균 소득기준 120%초과~160%이하)]를 선택하여야 합니다.
- 상위소득 :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4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 추첨제 : 해당 세대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140%,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은 초과하나, 해당 세대의 부동산가액기준(3.31억원) 이하에 해당하는 자

-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661,147) * (N-8), 100% 기준} ※ N → 9인 이상 가구원수
- * (가구원수 산정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산정. 단, 임신 중인 태아는 태아 수만큼 인정하되, 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포함.
- * (월평균 소득산정 대상) 가구원수에 포함되는 가구원 중 만19세 이상인 성년자(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 부양) 포함). 단, 세대원의 실종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 대상에서 제외
- * (월평균소득) 소득산정 대상자별 월평균소득을 합산한 금액.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총급여액(21년) 및 소득금액증명상의 지급받은 총액(수입금액)을 근로기간(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으로 나누어 산정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소득금액을 사업기간(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으로 나누어 산정.
- * 소득산정은 청약신청자의 상황(계속적인 근로자 또는 사업자, 신규취업자, 이직자, 신규사업자, 프리랜서 등)에 따라 산정방식이 달리 적용되므로 본인의 상황을 “주택청약 FAQ(국토교통부 발간)”를 확인하여야 하며, 소득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않으면 부적격처리 또는 계약포기로 간주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본인의 자격요건 및 증빙서류를 준비한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산보유기준

구분	자산보유기준	자산보유기준 세부내역												
부동산 (건물+토지)	3억3,100만원 이하	건축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축물가액은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건축물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없는 경우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table border="1"> <thead> <tr> <th colspan="2">건축물 종류</th> <th>지방세정 시가표준액</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2">주 택</td> <td>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td> <td>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td> </tr> <tr> <td>단독주택</td> <td>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td> </tr> <tr> <td colspan="2">주택 외</td> <td>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td> </tr> </tbody> </table>	건축물 종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주 택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	단독주택	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	주택 외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건축물 종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주 택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												
	단독주택	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												
주택 외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토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의 공시가격(표준지·개별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한 금액. 단, 아래 경우는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구·읍·면의 장이 관리하는 농지대장에 같은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 「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 「축산법」 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종중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 등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을 받는 경우로서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 건축물가액에 토지가액이 포함되지 않는 비주거용 건축물(상가, 오피스텔 등)의 부속토지도 토지가액에 포함(개별공시지가 기준)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 : 공급 세대수의 3% 범위) : 4세대

- 신청자격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경기도 및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면서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하고 있는 무주택 세대주(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따른 청약1순위 자격요건 및 세대주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 무주택기간은 청약신청자 및 그 배우자, 피부양자(노부모) 및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산정(「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 따라 피부양자 및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간은 신청자의 무주택기간에서 제외)
- ※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해야 함
- ※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피부양자의 배우자 포함)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
- ※ 기타 본 입주자모집공고 상에 표시되지 않는 내용은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관련 법령에 따릅니다.

▪ **당첨자 선정방법 [거주지역 → 가정산정 기준표]**

-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서울특별시)에 우선 공급하고, 동일지역 내 경쟁이 있는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제2항에 따라 가정제를 적용하되, 동점일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에 따릅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제2항에 따라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가정제를 적용하되, 동점일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에 따릅니다.
- 1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가정제 적용은 신청자 본인이 작성한 '청약가점 산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에 의거한 청약가점 점수를 우선순위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신청자 본인이 직접 작성한 청약가점의 점수가 본인의 기재 오류에 의한 잘못으로 판명될 경우, 당첨이 취소될 수 있으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습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생애최초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3조 :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 세대수의 9% 범위) : 10세대**

- ※ 국토교통부 공문(주택기금과-1589(2020.02.28.)), 특별공급 유형간 비율조정에 의거 주택형 59타입의 다자녀 특별공급 배정비율 축소(0.9%, 1세대) 세대를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1세대 추가 배정
- **신청자격**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3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경기도 및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면서 생애최초(세대에 속한 모든 자가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 한정)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 제28조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임양을 포함, 혼인 중이 아닌 경우에는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올라 있는 자녀를 말함)가 있는 자 또는 1인 가구*
 - * (1인 가구)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 아니면서(사별 또는 이혼을 포함) 미혼인 자녀(혼인 중이 아닌 경우에는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자녀)도 없는 신청자. **1인 가구는 추첨제로만 청약가능**하며, 단독세대(동거인이나 형제자매 등 세대구성원에 해당하지 않는 자와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포함)와 단독세대가 아닌 자로 구분하며, 단독세대는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형에 한하여 청약가능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과거 1년 내에 소득세(「소득세법」 제19조 또는 제20조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것을 말함)를 납부한 자를 포함]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자. 단, 이 경우 해당 소득세납부의무자이나 소득공제, 세액공제, 세액감면 등으로 납부의무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
 - **소득기준**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4명 이상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한다) 기준의 160% 이하인 자

입주자모집공고일	상시근로자 근로소득 확인 시점	사업자 및 프리랜서 등 소득 확인 시점
2024.02.22.	(해당 세대의) 전전년도 소득	(해당 세대의) 전전년도 소득

- 소득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생애 최초 특별공급 신청이 제한되며 부적격 처리될 수 있으며, 관련 서류의 제출 책임은 공급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자산기준** : 해당 세대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160%)은 초과하나, 해당 세대의 부동산가액기준(3억3,100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자는 추첨제 자격으로 신청 가능
 - ※ **부동산가액 산출기준**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 및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제4조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 부과점수의 산정방법에서 정한 재산등급 29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술평균한 금액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은 3인 이하 세대에만 해당하며, 4명 이상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적용합니다.
- 청약자가 근로소득(사업소득)에 따른 소득세 납부실적이 없을 경우 청약이 불가합니다.
- 소득세 납부내역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통산 5년의 납부실적을 의미하며, 특히 비연속적인 경우도 합산하여 인정 가능합니다. 단 5년 이상 소득세 납부실적은 청약자 본인이 납부한 경우만 인정하며, 그 배우자 또는 세대원의 납부실적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보험설계사, 방문판매원 등 자영업자가 아닌 경우에도 모집공고일 현재 1년 이내 소득세를 납부한 자로서 통산하여 5년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경우에는 신청 가능합니다.
-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여야 합니다.
- 배우자가 결혼 전에 주택을 소유하였다가 처분한 경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어 생애최초 특별공급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청약신청자의 세대원 전원이 구입, 상속, 증여 등 사유를 불문하고 과거 한번이라도 주택 또는 분양권등의 지분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만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이 가능하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따른 무주택으로 인정받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무주택으로 보아, 생애최초 자격을 부여합니다.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따른 청약1순위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기타 본 입주자모집공고 상에 표시되지 않는 내용은 「생애최초 특별공급 운용지침」 관련 법령에 따릅니다.

※ 2022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2024년 적용)

공급유형		구분	2022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 (2024년 적용)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소득 기준 구분	우선공급(기준소득, 50%)	130% 이하	~8,462,288원	~9,908,673원	~10,452,640원	~11,312,131원	~12,171,622원	~13,031,113원
	일반공급(상위소득, 20%)	130% 초과~160% 이하	8,462,289원~ 10,415,123원	9,908,674원~ 12,195,290원	10,452,641원~ 12,864,787원	11,312,132원~ 13,922,622원	12,171,623원~ 14,980,458원	13,031,114원~ 16,038,293원
추첨제 (30%)	소득기준 초과 / 자산기준 충족	160%초과, 부동산가액(3.31억원)충족	10,415,124원~	12,195,291원~	12,864,788원~	13,922,623원~	14,980,459원~	16,038,294원~
		160%이하	~10,415,123원	~12,195,290원	~12,864,787원	~13,922,622원	~14,980,458원	~16,038,293원
	1인 가구	160%초과, 부동산가액(3.31억원) 충족	10,415,124원~	12,195,291원~	12,864,788원~	13,922,623원~	14,980,459원~	16,038,294원~

-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661,147) * (N-8), 100% 기준} ※ N → 9인 이상 가구원수
- ※ (가구원수 산정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산정. 단, 임신 중인 태아는 태아 수만큼 인정하되, 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포함.
- ※ (월평균 소득산정 대상) 가구원수에 포함되는 가구원 중 만19세 이상인 성년자(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 부양) 포함). 단, 세대원의 실종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 대상에서 제외
- ※ (월평균소득) 소득산정 대상자별 월평균소득을 합산한 금액.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총급여액(21번) 및 소득금액증명상의 지급받은 총액(수입금액)을 근로기간(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으로 나누어 산정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소득금액을 사업기간(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으로 나누어 산정.
- ※ 소득산정은 청약신청자의 상황(계속적인 근로자 또는 사업자, 신규취업자, 이직자, 신규사업자, 프리랜서 등)에 따라 산정방식이 달리 적용되므로 본인의 상황을 “주택청약 FAQ(국토교통부 발간)”을 확인하여야 하며, 소득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않으면 부적격처리 또는 계약포기로 간주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본인의 자격요건 및 증빙서류를 준비한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 ※ 1인 가구 신청자는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 중 하나만 충족하면 청약자격을 만족하는 것으로 봅니다.

※ 자산보유기준

구분	자산보유기준	자산보유기준 세부내역												
부동산 (건물+토지)	3억3,100만원 이하	건축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축물가액은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건축물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없는 경우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table border="1"> <thead> <tr> <th colspan="2">건축물 종류</th> <th>지방세정 시가표준액</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2">주 택</td> <td>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td> <td>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td> </tr> <tr> <td>단독주택</td> <td>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td> </tr> <tr> <td colspan="2">주택 외</td> <td>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td> </tr> </tbody> </table>	건축물 종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주 택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	단독주택	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	주택 외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건축물 종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주 택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												
	단독주택	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												
주택 외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토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의 공시가격(표준지·개별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한 금액. 단, 아래 경우는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구·읍·면의 장이 관리하는 농지대장에 같은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 「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 「축산법」 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중중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 등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을 받는 경우로서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 건축물가액에 토지가액이 포함되지 않는 비주거용 건축물(상가, 오피스텔 등)의 부속토지도 토지가액에 포함(개별공시지가 기준) 													

■ 당첨자 선정방법 [소득 → 거주지역]

- 2021.11.16.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 ① 세대수의 50%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30% 이하인 자에게 우선공급
 - ② 세대수의 20%(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60% 이하인 자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
 - ③ 남은 주택(일반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 160%를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기준을 충족하는 자(일반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 및 1인 가구 신청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
- 소득기준구분 및 추첨제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서울특별시) 거주자가 우선하며, 동일지역 내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추첨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

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Ⅲ 일반공급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 일반공급 신청자격 및 유의사항

구분	내용
신청자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경기도 및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자) 중 입주자저축 순위별 자격 요건을 갖춘 자(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 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를 대상으로 주택형별 청약순위 별로 청약 접수가 가능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4항에 의거 10년 이상 장기복무중인 군인은 본 주택의 해당순위(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1순위, 2순위)의 청약자격과 입주자저축 요건을 충족 시, 해당 주택건설지역으로 한정) 청약 시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않아도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보아 해당지역 거주자격으로 청약신청이 가능합니다.(다만, 수도권에서 주택을 공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주택 건설지역(서울특별시)이 아닌 기타지역(경기도 및 인천광역시) 거주자로 봄)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9항에 의거 국방부 「군 주택공급 입주자 선정 훈령」 제18조에 따른 25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중 국방부(국군복지단)에서 추천한 자는 수도권(투기과열지구가 아닌 지역으로 한정) 청약 시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않아도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보아 해당지역 거주자격으로 청약신청이 가능합니다.(해당지역의 의무거주기간을 적용하지 않음) ※ 25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청약 추천자는 청약Home을 통한 인터넷(PC·모바일) 청약만 가능(건본주택 또는 은행 창구접수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통장에 가입하여 12개월이 지난 자로서 지역별 예치기준금액 이상을 납부한 자만 1순위 청약이 가능합니다.
청약신청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자격 및 요건 등의 기준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이며, 면적은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합니다. • 주민등록표초본상 주소 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시·도 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합니다. • 청약신청 접수는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중복신청이 불가(1인 1건만 신청 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신청할 경우에는 청약 모두를 무효 처리합니다. • 본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당첨자로 전산관리 되며,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가 제한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당첨자 발표일이 낮은 주택의 당첨은 자동 취소됩니다.(각각 동일한 청약통장으로 당첨된 경우에 한합니다.) • 청약접수 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형별로 층별, 동별, 호별, 향별 구분 없이 특별공급, 1순위, 2순위 순으로 청약 접수하되, 선순위 청약접수 결과 일반공급 세대수를 초과하더라도 예비당첨자 선정비율(일반공급 세대수의 500%)에 미달할 경우 차순위 접수를 받을 수 있으므로 청약신청 전 청약경쟁률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단, 2순위까지 청약접수 결과 신청자 수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600%에 미달하는 경우 더 이상 접수하지 않습니다.) • 1순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순위 청약자 전원은 가정제로 청약 접수하되, 과거 2년 이내 가정제로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추첨제로 접수하여야 하며, 가정제 낙첨자는 별도 신청절차 없이 추첨제 대상자로 전환합니다. - 각 주택형별로 전용면적 60㎡이하의 주택과 전용면적 60㎡초과~85㎡이하의 주택에 대하여 일반공급 대상 주택수의 40%를 가정제로, 60%를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2순위 : 청약신청자 전원 추첨제로 청약접수합니다. • 가정제 입주자 선정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정점수의 산정기준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에 의한 높은 점수 순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가정제 개요(가점항목, 점수, 항목별 판단기준 및 유의사항 등), 주택소유여부 판단기준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본 공고의 가정제 관련 내용 및 주택소유관련 유의사항 등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점수 입력은 청약자 책임(당첨자 결정 후에 당첨자의 청약내용에 대한 정확성을 확인하게 됨)이며 청약자가 인터넷 청약내용을 잘못하여 당첨자로 결정될 경우에도 부적격 당첨자에 해당되므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하여야 합니다. - 청약 신청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하여는 수정이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청약 신청 시 은행에서는 청약자의 청약자격에 대한 확인(검증) 없이 주택공급신청서에 기재한 내용으로만 청약접수를 받으므로 청약자는 본인의 청약자격(거주지역, 거주개시일,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주택소유여부 등)을 신청 전 확인하여 청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은 청약자 본인의 책임하에 이루어지므로 청약자격 착오 기재 등으로 부적격자로 판정되어 계약체결이 불가하거나, 계약이 취소될 경우 당사 및 접수은행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청약신청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소유 및 당첨사실 판단대상 : 청약자 본인 및 세대원 전원 ※ 주택소유로 보지 않는 경우 등 주택소유관련 유의사항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소유 및 과거 당첨사실 판단 대상 : 청약자 본인,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포함), 청약자 본인 또는 배우자와 같은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세대원인 직계존속 배우자 직계존속 포함. 단,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소유한 주택은 신청자격 판단 시 무주택으로 인정됨) 및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전원 - 인터넷 청약 절차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운영하는 “공고단지 청약연습”과 “청약가상체험”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에 청약신청하여 당첨된 입주자저축은 계약체결 여부와 상관없이 재사용이 불가하며, 당첨자로 전산 관리되므로 향후 다른 주택 청약 시 제한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단, 부적격당첨자가 소명기간 내에 해당 공급자격 또는 선정 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여 당첨이 취소된 자는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은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일정기간이 지난 후 분양전환되는 임대주택을 포함)의 입주자 민간 사전청약을 포함)로 선정될 수 없음] • 당첨 및 계약 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조치하며, 관계 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청약통장 관련 - 청약예금을 가입한 후 예치금액이 작은 지역에서 큰 지역으로 주거를 이전한 자는 신청일 현재 변경된 주거지역에 해당하는 청약예금 예치금액으로 증액하여야 청약 가능합니다. (단, 차액을 감액하는 경우 또는 주거지 변경 없이 가입한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청약 신청할 경우에는 지역간 예치금액 변경 없이 청약 가능합니다.) ※ 청약통장 관련 기준사항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 기준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 시 청약 신청 가능합니다. ② 청약예금 지역간 예치금액 총액 충족 기준 : 청약 접수 당일까지 충족 시 청약 신청 가능합니다. ③ 청약통장 예치금 기준(주택청약종합저축)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당일까지 예치금 충족 시 청약 신청 가능합니다. ④ 청약예금의 신청 가능 주택규모(전용면적 기준) 변경한 분 신청 요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한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단, 작은 주택규모로 변경할 경우 해당구간의 청약예치금액 충족 시 별도의 주택규모 변경 절차 없이 하위 면적 모두 청약 가능합니다.)
----------------------	------------------------------------------------------------------------------------------------------------------------------------------------------------------------------------------------------------------------------------------------------------------------------------------------------------------------------------------------------------------------------------------------------------------------------------------------------------------------------------------------------------------------------------------------------------------------------------------------------------------------------------------------------------------------------------------------------------------------------------------------------------------------------------------------------------------------------------------------------------------------------------------------------------------------------------------------------------------------------------------------------------------------------------------------------------------------------------------------------------------------------------------------------------------------------------------------------------------------------------------------------------------------------------------------------------------------------------------------------------------------------------------------------------------------------------------------------------------------------------------------------------------------------------------------------------------------------------------

중복청약 및 당첨 시 처리기준(공통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민간사전청약, 분양주택,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에 본인이 동시 청약신청이 불가(1인 1건만 신청 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신청 시 모두 무효처리합니다. • 청약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당첨자 발표일이 늦은 주택의 당첨은 자동 취소됩니다. • 본 아파트에 청약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당첨자로 전산관리되며,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가 제한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특별공급 인터넷 청약실시 및 특별공급 당첨자 발표일 변경에 따라 청약자 본인은 동일 단지의 경우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중복청약을 허용하되, 특별공급 당첨 시 일반공급은 무효처리하며 또한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에서 분양하는 주택으로서 동일 단지인 경우 동일세대 내에서 본인과 세대원이 특별공급(본인)과 일반공급(세대원) 각각 청약이 가능하며 둘 다 당첨될 경우 둘 다 계약이 가능합니다. •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에 세대분리된 부부가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타주택 포함) 또는 당첨자 발표일이 다른 주택 전체(타주택 포함)에 각각 청약(일반공급+일반공급)하여 모두 당첨되는 경우 모두 계약이 가능합니다. 	

■ **입주자저축의 예치금액(「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9조제3항 별표2 민영주택 청약 예치기준금액)**

구분	서울특별시(및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그 밖의 광역시)	경기도(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전용면적 85㎡ 이하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600만원	40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1,000만원	700만원	400만원
모든면적	1,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 ※ ‘지역’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에 따른 거주지역을 말합니다.
-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0조제1항 별표2[민영주택의 청약 예치기준금액]에 따라 지역별, 주택 규모별 예치금을 예치한 청약통장 가입자는 그 예치금 이하에 해당하는 면적의 주택에 대해 별도의 면적 변경없이 청약 가능합니다.
- ※ 주택규모 선택 및 변경 절차 폐지에 따라 순위 산정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의 가입기간 및 예치금(잔액기준)으로 순위를 산정합니다.
- ※ 예치금 잔액은 청약자가 청약 신청 당시 선택한 거주지(지역)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 입주자저축 순위 별 자격요건(「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

구분	순위	주택형	청약관련 신청자격
민영주택	1순위	전용 60㎡ 이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용면적 60㎡ 이하 : 가정제 (40%) 및 추첨제 (60%) 적용, 가정제 낙첨자는 추첨제 대상자로 자동 전환됨.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요건이 아래의 1순위를 충족하는 자. (가정제 접수) ①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되고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②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납입하여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③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되고 현재 납입인정 범위 내에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자. ④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되고 납입금액이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
		전용 60㎡ 초과 85㎡ 이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 : 가정제 (40%) 및 추첨제 (60%) 적용, 가정제 낙첨자는 추첨제 대상자로 자동 전환됨.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요건이 아래의 1순위를 충족하는 자. (가정제 접수) ①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되고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②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납입하여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③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되고 현재 납입인정 범위 내에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자. ④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되고 납입금액이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
	2순위	전 주택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예치금액과 상관없이 청약예·부금 및 주택청약종합저축(포함)에 가입한 자

■ 청약 가정제 적용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 1)

구분	내용
① 무주택기간 적용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원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합니다. 소형·저가주택등의 가격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산정합니다. 다만, 2007년 9월 1일 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2007년 9월 1일 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을 말합니다. 이하 이 별표에서 같다) 중 2007년 9월 1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릅니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입주자모집공고일 후에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 :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분양권등의 경우 :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에 대한 가격은 제외한다) 무주택기간은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하고, 주택공급신청자의 연령이 만 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하되, 만 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기산합니다. 이 경우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합니다.)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합니다.
② 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양가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세대원으로 합니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은 주택공급신청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원인 경우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봅니다. 다만,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으며,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직계존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외국인 직계존속 내국인 직계존속이라도 요양시설(「주민등록법」 제12조에 따라 주민등록을 하는 노인요양시설을 말함) 및 해외에 체류중(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인 경우 ※ 2019.11.01. 개정·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에 따라 부양가족을 산정 시에는 제53조제6를 적용하지 않으므로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녀(부모가 모두 사망한 손자녀 포함)의 경우 미혼으로 한정합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택공급신청자의 만 30세 이상인 직계비속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봅니다. 재혼배우자의 자녀는 주택공급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 부양가족으로 봅니다. 결혼 후 이혼한 자녀는 “미혼인 자녀”로 보지 않으며, 외국인인 직계비속과 아래의 경우처럼 해외 체류 중인 직계비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만 30세 미만)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만 30세 이상)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③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가입기간을 산정합니다.
④ 주택소유여부 및 무주택기간 산정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무주택기간 적용기준 및 ② 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에 따라 주택소유 여부를 판정하거나 무주택기간을 산정하려는 경우에는 제23조제4항 및 제53조에 따릅니다.

■ 청약 가점제 산정기준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의 2 나목)

가점항목	가점상한	가점구분	점수	가점구분	점수	확인할 서류 등
①주주택기간	32	만30세 미만 미혼자 또는 유주택자	0	8년 이상 ~ 9년 미만	18	■ 주민등록표등본 (배우자 분리세대 시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등 ■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 만 30세 이전에 결혼한 경우 혼인신고일 확인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20	
		1년 이상 ~ 2년 미만	4	10년 이상 ~ 11년 미만	22	
		2년 이상 ~ 3년 미만	6	11년 이상 ~ 12년 미만	24	
		3년 이상 ~ 4년 미만	8	12년 이상 ~ 13년 미만	26	
		4년 이상 ~ 5년 미만	10	13년 이상 ~ 14년 미만	28	
		5년 이상 ~ 6년 미만	12	14년 이상 ~ 15년 미만	30	
		6년 이상 ~ 7년 미만	14	15년 이상	32	
②부양가족수	35	0명	5	4명	25	■ 주민등록표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 청약신청자 본인은 부양가족수에서 제외 ■ 만18세 이상 성년자녀 부양가족인정 신청 시 추가확인서류 ① 만 18세 이상 ~ 만 30세 미만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② 만 30세 이상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는 부양가족수에서 제외
		1명	10	5명	30	
		2명	15	6명 이상	35	
		3명	20			
③입주자저축 가입기간	17	6개월 미만	1	8년 이상 ~ 9년 미만	10	■ 청약통장 (인터넷 청약 시에 자동 계산됨)
		6개월 이상 ~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11	
		1년 이상 ~ 2년 미만	3	10년 이상 ~ 11년 미만	12	
		2년 이상 ~ 3년 미만	4	11년 이상 ~ 12년 미만	13	
		3년 이상 ~ 4년 미만	5	12년 이상 ~ 13년 미만	14	
		4년 이상 ~ 5년 미만	6	13년 이상 ~ 14년 미만	15	
		5년 이상 ~ 6년 미만	7	14년 이상 ~ 15년 미만	16	
		6년 이상 ~ 7년 미만	8	15년 이상	17	
7년 이상 ~ 8년 미만	9					
총점	84	※ 본인 청약가점 점수 = ① + ② + ③				

※ 제28조제6항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과거 2년 이내에 가점제를 적용받아 다른 주택의 당첨자가 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제1순위에서 가점제 적용 대상자에서 제외되며, 추첨제의 적용 대상자에 포함됩니다.

※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에서 제외됩니다.

※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 소유주택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에 의거 신청자격 판단 시 무주택으로 인정합니다.(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제외)

IV 청약일정 및 신청방법

■ 청약신청 일정, 신청방법 및 유의사항

- 본 아파트는 건전한 주택청약 문화정책을 위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이전에 ① 청약통장 가입은행 및 취급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동인증서를 신청 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거나, ② 금융인증서, ③ 네이버인증서, ④ KB국민인증서, ⑤토스인증서 또는 ⑥ 신한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구분	신청대상자	신청일시	신청방법	신청장소
특별공급	일반(기관추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2024.03.04(월) (청약Home 인터넷 : 09:00~17:30) (사업주체 건본주택 : 10:00~14:00)	• 인터넷 청약 (PC 또는 스마트폰)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 (www.applyhome.co.kr)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일반공급	1순위	2024.03.05(화) 09:00~17:30		• 사업주체 건본주택 :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23
	2순위	2024.03.06(수) 09:00~17:30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 (www.applyhome.co.kr)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 청약통장 가입은행 창구

※ 스마트폰앱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스마트폰앱을 이용하여 청약할 경우에는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공동인증서를 청약홈 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거나, 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KB국민인증서, 토스인증서 또는 신한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특별공급 신청 방법이 '건본주택 방문 신청'에서 인터넷(청약Home 홈페이지 www.applyhome.co.kr) 청약 신청'으로 변경되었으며, 특별공급의 경우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건본주택 방문접수(은행창구 접수 불가) 허용됩니다. (방문 접수시간 : 10:00~14:00)

※ 일반공급의 경우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나 정보취약계층(고령자,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에서 청약이 가능합니다. (창구 접수시간 : 09:00~16:00. 단, 은행 영업정별 업무 시간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신 후 방문하시기 바람)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 시 가정항목 등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청약신청을 받으며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체결 시 주민등록표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주택공급 신청내용과 청약자격을 대조한 후 청약신청 내용과 청약자격이 일치할 경우에 계약체결이 가능하므로 청약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2순위 청약통장으로 당첨된 경우에도 계약과 상관없이 당첨자 관리되며, 당첨된 통장은 청약통장으로 효력 상실됩니다.

■ 인터넷 청약서비스 이용방법 및 절차 안내 (해당순위 청약신청일 09:00~17:30)

※ 한국부동산원에서 운영하는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청약 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청약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현재 해당 청약순위가 발생하신 분은 ①청약통장 가입은행 및 취급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동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거나, ②금융인증서, ③네이버인증서, ④KB국민인증서, ⑤토스인증서 또는 ⑥신한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한국부동산원(모든 은행의 청약통장 가입자)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PC 청약시]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접속 → 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청약신청」 → 청약자격 등 입력 → 청약 완료
[스마트폰 청약시]	스마트폰앱(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접속 → 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청약신청」 → 청약자격 등 입력 → 청약 완료
인터넷 청약 절차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운영하는 “공고단지 청약연습”과 “청약가상체험”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청약홈에서는 청약자의 편의제공을 위하여 아래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청약에 제한은 없습니다.	
① [마이데이터(“청약도움e”) 서비스]	청약신청 단계에서 본인정보 제3자 제공 요구 시, 주민등록표등·초본 등 행정정보를 수신하여 세대주 여부 및 해당지역 거주기간 등 청약신청 자격요건을 확인하여 드리는 서비스입니다. (선택사항이며, 청약신청 당일 통신망 연결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 및 연계 기관(정보 보유기관)의 상황 등에 따라 서비스 제공되지 않을 수 있음) • 「청약신청」 → 「APT청약신청」 → 「청약홈 마이데이터(“청약도움e”) 서비스 팝업」 → 「본인정보 제3자 제공 요구 시」. 단, 본인정보 제3자 제공 요구를 거부하더라도 기존과 동일한 절차대로 신청자가 직접 해당 자격을 판단하여 입력 가능
② [공고단지 청약연습(민영주택)]	공고일 다음날부터 일반공급 청약신청 전일까지 세대원을 등록하고, 해당 세대원(성년자에 한함)의 개인정보 동의를 완료되면, 실제 청약하고자 하는 모집공고에 대한 신청자 및 세대원의 청약자격(주택소유 및 각종 청약제한사실)을 미리 알아볼 수 있어, 부적격자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지원합니다. • 세대원 등록방법 : 「청약자격확인」 → 「세대구성원 등록/조회」 및 「세대구성원 동의」 • 청약연습방법 : 「공고단지 청약연습」 → 「공고단지 청약연습 신청」. 단, 세대구성원 등록 생략 시 신청자 본인에 대해서만 청약자격 검증

※ 상기 접수시간(17:30)은 청약접수 완료 기준으로 청약 신청 진행 중이라도 접수 완료하지 않고 17:30이 경과하면 청약신청이 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신청 시 해당 은행에서는 청약자격에 대한 확인(검증)없이 청약 신청자가 기재한 사항만으로 청약접수를 받으며, 청약자가 인터넷 청약내용을 잘못 입력하여 당첨자로 결정될 경우에도 부적격 당첨자에 해당되므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하여야 함.

■ 고령자, 장애인 등 은행창구 청약 (일반공급은 인터넷 청약 신청이 원칙이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및 장애인 등) 등을 제외하고는 은행창구에서의 청약접수는 불가함)

구분	구비사항
일반	본인 신청 시 • 주택공급신청서(청약통장 가입은행 비치)

공급	제3자 대리신청 시 추가사항 (배우자 포함)	·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부금 포함) 통장 · 예금인장 또는 본인 서명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사항 외에 다음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하여야 함		
		<table border="1"> <tr> <th>인감증명 방식</th> <th>본인서명확인 방식</th> </tr> <tr>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청약자의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신청 접수장소 비치)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약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 상의 서명) 1통 - 청약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td> </tr> </table>	인감증명 방식	본인서명확인 방식
인감증명 방식	본인서명확인 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청약자의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신청 접수장소 비치)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약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 상의 서명) 1통 - 청약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 ※ 상기 제증명 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또는 청약자격 전산등록 기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접수합니다.(단,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서류 제출)
-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산일 산정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이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 주택공급 신청서의 단말기 「(전산)인지란」의 인자된 내용과 주택공급신청내용을 확인하여 주시고, 동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당일 내로 공급신청서를 접수한 영업점에 정정 신청을 해야 합니다.
- ※ 본인 및 배우자가 인장 날인 없이 신청인[서명]으로 주택공급신청서를 작성한 경우는 신청자 성명을 인지할 수 있어야 하며, 주택공급신청서의 [서명]은 접수받은 직원 입회하에 신청인이 직접 기재해야 합니다.

V 당첨자발표

■ 당첨자 발표 일정

구분	신청대상자	당첨자 및 동·호수 / 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 발표
특별공급	일반(기관추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시 : 2024.03.12.(화) ■ 확인방법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www.applyhome.co.kr) 또는 스마트폰앱에서 인증서로 로그인 후 개별조회 ※ 개별 서면 통지는 하지 않으며, 전화문의는 착오 가능성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일반공급	1순위	
	2순위	

- ※ 당첨자 명단은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셔야 하며 당첨자 및 동·호수 확인 시에는 인증서 로그인 후 조회 가능함을 알려드리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다만, 고령자 및 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약으로서 인터넷 청약이 불가하여 견본주택(특별공급) 또는 은행창구(일반공급) 등에 방문하여 청약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정보입력(주택명, 주택형, 성명, 생년월일 입력) 조회가 가능하나 정보 오입력 등의 경우 부정확한 내역이 조회될 수 있으므로 인증서를 발급받으신 분은 반드시 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정확한 당첨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인터넷 청약신청 건에 대해서는 '정보입력'에 의한 당첨내역 조회가 불가(당첨여부에 관계없이 '당첨내역이 없음'으로 표기됨)하오니 반드시 인증서로 로그인하시어 당첨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당첨자 및 동·호수, 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 발표 시 개별서면 통지는 하지 않습니다. (전화문의는 착오 가능성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 당첨자의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실태 및 과거 당첨사실 유무 전산검색 소요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당첨자에 대한 주택소유실태 전산검색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등 적격자(정당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적격자로 재확인 후 계약을 체결합니다.
- ※ 당첨자 명단은 상기 장소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개별서면 통지는 하지 않습니다.
- ※ 예비당첨자의 서류검수 일정 및 동·호 추첨 일정은 추후 안내해 드릴 예정입니다.

■ 인터넷, 휴대폰 문자 당첨자발표 서비스 이용 안내

- 본 서비스는 청약신청자의 편의도모를 위한 부가서비스로서 정확한 당첨여부는 한국부동산원 청약홈페이지(www.applyhome.co.kr), 모바일에서 재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쑤 은행 청약자)	
이용기간	- 2024.03.12.(화) ~ 2024.03.21.(목) 10일간	
인터넷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접속 → 청약당첨조회 → 당첨조회(최근10일)	
	- 스마트폰앱 접속 → 청약당첨조회 → 당첨조회(10일간) ※ 당첨조회(10일) 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마이페이지 → 청약제한사항확인 또는 청약 소통방 → APT당첨사실조회를 통해 당첨내역 확인 가능	
휴대폰 문자서비스	대상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 신청 시 휴대폰번호를 등록하신 분 중 당첨(예비)자
	제공일시	- 2024.03.12.(화) 오전 08시 (* 제공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입주자 선정 방법 및 동·호수 결정

구 분	선 정 방 법
<p>특별공급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부동산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생애최초특별공급, 다자녀특별공급, 신혼부부특별공급, 노부모부양특별공급, 기관추천특별공급 당첨자 선정방법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며, 동·호수 추첨은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무작위로 동·호수를 결정합니다. • 특별공급 대상 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의 입주자는 다른 공급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며,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특별공급 입주자 선정 시 특별공급 접수종류 구분없이 주택형별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주택형별 공급세대의 500%까지 추첨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주택형별 전체 신청자수가 특별공급 세대수의 600%에 미달하는 경우 낙첨자 모두를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 • 특별공급 신청자가 없거나 신청자가 공급세대수에 미달된 경우,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p>일반공급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부동산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각 순위별로 청약통장 가입은행 구분 없이 1순위는 전용면적대별 가점제 및 추첨제 적용비율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2순위는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하며, 동·호수 추첨은 특별공급 당첨자와 함께 무작위로 동·호수를 결정합니다. • 전용면적대별 가점제 및 추첨제 적용비율은 다음과 같으며, 가점제가 적용되는 전용면적의 1순위 청약자는 해당 순위에서 가점제(가점점수가 높은 순)로 입주자를 선정하고, 가점제 낙첨자에 한해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추첨제 대상으로 전환하여 입주자를 재선정합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용면적 60㎡ 이하 : 일반공급 세대수의 40%를 가점제로, 나머지 60%는 경쟁이 있을 경우 추첨제 우선공급* 적용 - 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 : 일반공급 세대수의 40%를 가점제로, 나머지 60%는 경쟁이 있을 경우 추첨제 우선공급* 적용 *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수도권, 광역시) 민영주택 추첨제 공급 시 무주택자 우선공급 :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주택수보다 추첨 대상자가 많은 경우, 다음 순서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되는 주택수의 75% : 무주택세대구성원 2. 나머지 25%의 주택(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 포함) : 무주택세대구성원과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공급한 후 남은 주택 : 1순위에 해당하는 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 • 동일순위 신청자(가점제 및 추첨제 대상 모두 포함) 중 경쟁이 있을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 거주자가 수도권(경기도 및 인천광역시)지역 거주 신청자보다 우선합니다. • 입주자 선정 시 선순위 신청자(가점제 및 추첨제 대상 모두 포함)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600%를 초과할 경우 차순위 접수분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2019.12.06.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에 의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는 청약신청자가 예비입주자 선정 총수에 미달되어도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순번을 부여합니다. • 예비입주자 선정 시 주택형별로 일반공급 세대수의 500%를 아래와 같이 선정합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순위 : 일반공급 세대수의 500%까지 지역우선공급을 적용하여 가점이 높은 자를 앞 순번으로 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점제가 적용되지 않는 주택인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 - 2순위 : 1순위에서 미달된 예비공급세대수 만큼 지역우선공급을 적용하여 추첨으로 선정 • 미계약 또는 계약해제 발생 시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합니다. (동·호수를 최초로 배정받은 예비입주자는 계약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며 예비입주자 명단 및 순번은 당첨자명단 발표 시 함께 발표됨)
<p>유의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 제50조에 따라 특별공급도 인터넷청약(한국부동산원 청약Home)을 원칙으로 하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및 장애인 등)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는 건본주택 방문접수가 가능합니다. • 인터넷 청약(한국부동산원 청약Home)의 경우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당첨자 공급계약 체결 전 사업주체로 제출하시기 바라며, 건본주택 방문접수 시에는 공급별 구비서류를 지참하여야 합니다. • 특별공급 방문접수는 건본주택에서만 가능하며 은행창구에서는 접수하지 않습니다.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무작위 추첨으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므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특별공급 신청자가 일반공급에도 중복 청약이 가능하나 특별공급에 당첨된 경우 일반청약은 무효로 처리(특별공급에 예비입주자로 당첨된 경우에도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선정에서 제외)하고, 특별공급 신청자가 타 유형의 특별공급에 중복 청약 시 둘 다 무효처리 됩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 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소유여부의 판단에 있어 공급신청 당시 입력 값(자료)으로 우선 입주자선정을 하고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결과에 따른 세대주 및 세대원의 주택소유 여부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분양일정상 계약일 이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에는 아파트 당첨 및 계약이 임의 해지될 수 있습니다. • 특별공급 대상자로서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도 당첨자로 보며(1회 특별공급 간주), 해당 구비서류 미비 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제8항에 따라 부적격통보를 받고,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상의 기간에 소명하지 못할 경우 당첨 취소 및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된 경우 당첨자발표일로부터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촉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민간 사전청약 및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예비입주자 유의사항 및 공급방법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입주자선정(서류제출 및 동·호수 배정, 계약 등) 일정은 홈페이지(<https://www.경희공유보라.com>) 게시 또는 별도 통보할 계획입니다.
- 특별공급 당첨자 중 부적격 당첨자의 동·호와 미계약 동·호는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됩니다.
-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본 아파트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으며, 동·호수 배정을 위한 추첨에도 참가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비입주자의 동·호수 배정일(당첨일)이 공급 신청한 다른 주택의 당첨자발표일보다 빠를 경우 예비입주자 계약체결은 가능하며 다른 주택의 입주자 선정 내역은 무효처리됩니다.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당첨자 중에서 최초 동·호수 배정 추첨에 참가하여 당첨된 예비당첨자는 공급 계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당첨자로 관리되어 청약통장 재사용이 불가능합니다.
- 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은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로부터 180일까지(예비입주자 소진될 경우에는 그 때까지로 함) 홈페이지에 공개합니다.
- 정당 당첨자 계약여부 및 부적격소명 등에 따라 예비입주자의 공급이 없을 수 있으며, 예비입주자 공급 물량 발생 시 주택형별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추첨)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공급세대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합니다.
- 예비입주자(특별공급 및 일반공급)로 선정된 자는 연락처 변경 시 본인의 연락처(주소, 전화번호)를 당사에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하지 않을 경우 연락처 및 주소 불명 등의 사유로 예비입주자 공급(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당사에서는 책임지지 않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VI 입주대상자 자격 확인 서류 제출

■ 입주대상자 자격확인서류 제출 및 유의사항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에 따라 입주대상자 자격확인을 위해 아래 제출기한까지 공급(당첨)유형별 자격확인서류 일체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구분	자격확인서류 제출 대상	당첨자 자격검증 서류제출 일정	서류제출 장소
정당 당첨자	특별공급	당첨자 전원	• 경희공 반도 유보라 건본주택 -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23 (☎ 1661-0161) - 구비서류 등 지참 방문(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 ※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 배우자 서류 반드시 지참
	일반공급		
예비 입주자	특별공급	※ 예비입주자 서류접수 대상은 별도 통보 예정	
	일반공급		

- ※ 당첨자 자격검증 서류제출 일정 및 방법은 정부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별도 안내할 예정입니다.
-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정당 당첨자는 자격검증 서류제출기간에 관련 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상기 서류제출 일정 이외에는 방문이 불가합니다.
-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의 예비입주자는 예비순번 순 등으로 서류접수 일정이 조정될 수 있으며, 서류제출 대상자, 자격검증 서류제출일정, 공급(추첨) 방법 등을 당사 홈페이지(<https://www.경희공유보라.com>)에서 공지할 예정입니다.
- ※ 모든 제출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직인 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 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서류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 신청자격에 맞는 제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자의 착오 등으로 신청내용과 제출서류가 상이할 경우 당첨을 취소하며, 부적격 당첨에 따른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 당첨자가 신청한 내용과 당첨 후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다를 경우 별도의 보완자료 등으로 당첨자격을 소명하여야 하며, 제출서류로 신청자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소명자료 관련 추가서류 제출 요구 시 반드시 이에 응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자격확인서류 미제출」로 계약체결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 자격검증 서류제출 시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하신 서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4조에 따라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경우 접수일로부터 6개월간,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접수일로부터 5년 동안 보관한 뒤에 해당기간이 경과하고 나면 폐기합니다.
- ※ 계약 이후 부적격자로 판명되는 경우에도 당첨자(예비입주자 포함)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계약이 취소됩니다.
- ※ 관계법령에 따라 공고문에 표기된 서류 외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 위변조된 서류 등을 제출할 경우, 「주택법」 제65조(공급질서 교란) 위반으로 최대 10년의 범위에서 입주자격이 제한되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 입주대상자 자격검증서류 제출기간 미접수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기간 내 필히 서류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특별공급 입주대상자 자격확인서류(※ 공통서류와 특별공급 유형별 해당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공통서류	○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당첨자 자격요건 서약서	본인	• 건본주택 비치 • 무주택 입증서류(당첨자 자격요건 서약서로 대체)
	○		신분증	본인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20.12.21 이후 신규발급본인 경우 여권정보증명서로 발급)
	○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	• 용도 : 주택공급신청용(* 본인 발급용 / 대리인 발급용 불가)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도 가능하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제3자 대리 신청은 불가	
	○	인감도장	본인	• 인감증명서상의 인장 대조 확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자는 본인서명	
	○	주민등록표등본(전체포함)	본인	• 주민등록번호, 세대주 및 세대원 포함, 주소변동사항 및 변동사유,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포함하여 “전체포함” 발급	
	○	주민등록표초본(전체포함)	본인	•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사항·사유 및 발생(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전체포함”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본인	• 성명,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상세” 발급(배우자 및 자녀, 직계존속 등 공급주택신청자와의 관계)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본인	•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여 “상세” 발급	
	○	출입국사실증명서	본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5항에 따라 거주기간을 정하여 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단,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경우 생략) • 주민번호 전체 표시, 기록대조일은 당첨자 생년월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설정, 출입국 기록출력 여부 “Y” 설정 발급	
		○	복무확인서	본인	• 수도권 외 지역에 거주하는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이 수도권 거주자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 군복무기간(10년 이상)을 명시 • 해당지역 외 지역에 거주하는 25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이 해당지역으로 당첨된 경우 → 군복무기간(25년 이상)을 명시
	○	주민등록표등본(전체포함)	배우자	• 주민등록표등본상 배우자 분리세대에 한하며,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등을 포함하여 “전체포함” 발급	
해외 근우자 (단신부임)		○	해외채류 관련 증빙서류	본인	• 국내기업 및 기관소속 해외주재원 및 출장자인 경우 : 파견 및 출장명령서 • 해외 취업자 및 사업체 운영자인 경우 : 현지 관공서에서 발급받은 사업 또는 근로 관련 서류, 취업 또는 사업비자 발급내역 등 • 근로자가 아닌 경우 반드시 제출 : ① 비자 발급내역 ② 계약서 또는 근로계약서 등 * 유학, 연수, 관광, 단순채류자의 경우 생업사정을 인정할 수 없으며, 생업관련 증빙서류 제출이 불가능한 자 또는 인정 불가 * 해외에서 발급받은 서류의 경우 번역 공증 첨부 필수
		○	출입국사실증명서	배우자 및 세대원	• 세대원 및 주택공급신청자의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고 있지 않은 미성년자녀 전원의 해외채류 유무 확인 * 기록대조일 : 생년월일 ~ 현재로 설정(주민등록번호 공개에 체크, 행정복지센터 또는 정부 24, 출입국 기록출력 여부 “Y” 설정 발급
다자녀 가구 특별공급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배정기준표	본인	• 건본주택 비치
		○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 각서	본인 또는 배우자	• 건본주택 비치
		○	한부모가족증명서	본인	• 여성가족부의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라 한부모가족으로 지정된 지 5년이 경과된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배우자	•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재혼가정에서 배우자의 전혼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 또는 3세대 구성 시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포함된 경우(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한함)
		○	임신진단서 또는 출산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 임신의 경우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제출, (임신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의료기관명과 임신주차 확인이 가능해야 함) * 임신사실확인서 인정 불가
		○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배우자	• 입양의 경우(또는 친양자 입양관계증명서)
		○	주민등록표초본(전체포함)	피부양 직계존속	• 3세대 이상 세대구성 배정을 인정받고자 하나, 주민등록표상 신청자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 등본에 등재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과거의 주소변동사항(3년이상) 및 세대주 성명, 관계 등 “전체포함”으로 발급)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피부양 직계비속	• 만 18세이상 직계비속을 미성년자로 인정받고자 할 경우
신혼부부 특별공급		○	자격요건 확인서	본인	• 건본주택 비치
		○	건강보험차액득실확인서	본인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과거이력 포함하여 발급)으로 공급신청자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전원(* 배우자 분리세대 포함)
		○	소득증빙서류	본인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주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증빙서류 * 단, 배우자 분리세대는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된 세대원의 소득증빙서류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배우자	• 재혼가정에서 배우자의 전혼자녀 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경우(주택공급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한함)
		○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 각서	본인 또는 배우자	• 건본주택 비치
		○	임신진단서 또는 출산증명서		• 임신의 경우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제출, (임신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의료기관명과 임신주차 확인이 가능해야 함) * 임신사실확인서 인정 불가
		○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 입양의 경우(또는 친양자 입양관계증명서)
		○	비사업자 확인 각서		• 건본주택 비치
		○	부동산 소유현황	본인 및 세대원	•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부동산가액기준을 충족하는 조건으로 신청한 자(* 본인 및 세대구성원 전원의 서류제출 필요 / 주민등록번호 공개에 체크) * 발급처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 등기열람/발급 > 부동산 > 부동산소유현황(* 부동산소유현황이 없는 경우에는 신청결과)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본인 및 세대원	•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부동산가액기준을 충족하는 조건으로 신청한 자는 본인과 세대구성원 전원의 서류를 제출

	○	주인등록표초본(전체포함)	피부양 직계존속	• 당청자의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당청자 또는 당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하였음을 확인하여, 소득산정 시 당청자의 가구원수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1년 이상의 주소변동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 “전체포함” 발급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	청약가점 산정 기준표	본인	• 건본주택 비치
	○	주민등록표초본(전체포함)	피부양 직계존속	•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피부양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확인하기 위한 경우
	○	출입국사실증명서		•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으려는 경우(* 주민번호 전체, 기록대조일 : 생년월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설정, 출입국 기록출력 여부 “Y” 설정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배우자	•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 신청한 경우 또는 재혼가정의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신청한 경우(청약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	주민등록표초본(전체포함)	피부양 직계비속	• 만 30세 이상 미혼인 직계비속이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1년 이상 연속된 등재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경우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만 18세 이상 미혼인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재혼가정에서 배우자의 전혼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상세” 발급(* 공급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시만 인정) ※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전부공개 “상세” 발급
○	출입국사실증명서	•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으려는 경우(* 주민번호 전체, 기록대조일 : 생년월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설정, 출입국 기록출력 여부 “Y” 설정 발급)		
생애최초 특별공급	○	자격요건 확인서	본인	• 건본주택 비치
	○	소득세납부 입증서류	본인	• 당청자 본인의 소득세 납부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의 5개년도 서류 ※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세 납부 입증서류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본인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과거이력 포함하여 발급)으로 공급신청자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전원(* 배우자 분리세대 포함)
	○	소득증빙 서류	본인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주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입증서류 ※ 단, 배우자 분리세대는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된 세대원의 소득입증서류
	○	임신진단서 또는 출산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 임신의 경우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제출, (임신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의뢰기관명과 임신주차 확인이 가능해야 함) ※ 임신사실확인서 인정 불가
	○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배우자	• 입양의 경우(또는 친양자 입양관계증명서)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피부양 직계비속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 아닌 분이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상 만 18세 이상인 자녀를 ‘미혼 자녀’로 인정받고자 할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배우자	• 배우자의 전혼자녀 또는 직계존속을 소득산정 시 당청자의 가구원수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청약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	주민등록표초본(전체포함)	피부양 직계존속	• 당청자의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당청자 또는 당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하였음을 확인하여, 소득산정 시 당청자의 가구원수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1년 이상의 주소변동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 “전체포함” 발급
	○	부동산 소유현황	본인 및 세대원	•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부동산가액기준을 충족하는 조건으로 신청한 자(※ 본인 및 세대구성원 전원의 서류제출 필요 / 주민등록번호 공개에 체크) ※ 발급처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 등기열람/발급 > 부동산 > 부동산소유현황(* 부동산소유현황이 없는 경우에는 신청결과)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세대원	•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부동산가액기준을 충족하는 조건으로 신청한 자는 본인과 세대구성원 전원의 서류를 제출	
제3자 대리인 신청	○	위임장	본인	• 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건본주택 비치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본인	• 본인 외 모두 제3자로 간주함 • 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대리 신청 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불가), 본인 발급분에 한함 • 단, 외국인인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신분증	대리인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외국국적 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부적격 당첨 통보를 받은자	○	해당 주택에 대한 소명자료	해당주택	• 건축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가옥대장등본 포함) • 무허가건물 확인서 또는 철거예정 증명서 • 소형·저가주택임을 증명하는 서류(주택공시가격증명원 등) •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사업주체가 요구하여 인정하는 서류	해당주택	• 해당기관의 당청사실 무효 확인서 등
전세피해자 제출서류	○	해당 주택에 대한 소명자료	해당주택	• 임대차계약서, 낙찰 증명서류(경매 : 매각허가결정, 공매 : 매각결정통지서 등) • 등기사항증명서(임차주택), 임차주령 경·공매에서 채권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경매 : 배당표, 배당요구신청서 등 / 공매 : 배분계산서 등)

※ 상기 제 증명서류(신청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본인 및 세대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가 모두 표시된 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정보취약자(고령자, 인터넷취약 장애인 등)의 건본주택 방문 청약 시 상기 해당 접수 유형별 구비사항이 완비된 경우에 한하여 접수합니다.

- ※ 상기 서류 외 당첨자격 확인을 위하여 사업주체에서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미제출 시 자격 확인 불가로 계약체결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분의 당첨으로 인한 당첨 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등본상 세대구성원의 변경이 있는 경우(세대주변경, 세대구성원의 주민등록이전 등) 공고일기준 세대구성원을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및 주민등록초본,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증빙서류 미제출로 인한 불이익은 당첨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 특별공급 소득증빙서류(신혼부부 / 생애최초)

해당자격		소득입증 제출서류	발급처
근로자	일반근로자	① 재직증명서(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휴직기간을 명시하여 발급) ②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또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원본 - 전년도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 전년도 감중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증명서 원본(매월신고납부대상자 확인으로 발급) ※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 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연말정산 등으로 인해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되기 전에 특별공급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전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	① 해당직장 ② 세무서, 해당직장
	신규취업자 / 금년도 전직자	① 재직증명서 ② 금년도 월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또는 감중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증명서 원본 ※ 근로기간이 1개월을 경과하지 못하여 근로소득원천징수부가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과 동일한 직장의 동일 직급, 동일 호봉인 자의 전년도 원천징수영수증과 재직증명서를 제출받아 월평균소득을 추정 또는 해당 직장 연봉(근로계약서(직인날인)) ※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 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①, ② 해당직장
	전년도 전직자	① 재직증명서 ②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원본 ※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 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①, ② 해당직장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되지 않는 자 (건강보험증상 직장가입자만 해당)	① 소득금액증명원 ② 재직증명서 ※ 재직증명서는 사업자의 직인 날인 필수	① 세무서 ② 해당직장
자영업자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 면세사업자	①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원본 ② 사업자등록증명원 사본	* 세무서
	신규사업자(공고일 이전) 등	① 국민연금 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공고일 이전 가입) 또는 공고일 이전 최근의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서(부분) ② 사업자등록증명원	① 국민연금공단 ② 세무서
	법인대표자	① 전년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② 전년도 재무재표 ③ 사업자등록증명원 ④ 재직증명서	①, ②, ④ 해당직장 ③ 세무서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① 전년도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또는 간이지급명세서 ② 위촉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①, ② 해당직장 / 세무서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주민센터
일용직 근로자		①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또는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 ② 위촉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 금년도 신규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연금산정용가입내역확인서 ※ 직업이 프리랜서이고 소득이 불규칙한 경우 :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및 위촉(해촉)증명서	① 세무서, 해당직장 ② 해당직장
무직자		① 비사업자 확인각서 ② 사실증명(신고사실 없음)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에 소득(근로 또는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 : 전년도 1월1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총 소득을 동기간으로 나누어 월평균소득을 산정	① 견본주택 비치 ② 세무서

- ※ 상기 소득 입증 관련 서류 외 대상자의 적격 여부 확인을 위해 추가 서류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 ※ 소득산정의 대상시점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전년도 소득자료가 발급되지 않는 경우 “전전년도 소득자료 제출”로 하여야 합니다.
- ※ 전년도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재직증명서상 휴직기간 및 휴직유형(예시 :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을 명시하여야 하며, 정상적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한 소득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상기 제증명 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 사항이 완비된 경우에 한하여 접수합니다.
- ※ 해당직장, 세무서 등 해당기관의 직인 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소득증빙관련 모든 서류는 성명, 주민등록번호가 모두 표시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세 납부 입증서류

해당자격	서류구분	확인자격	제출서류	발급처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 입증서류	근로자 / 자영업자	• 재직증명서(직인날인) 또는 사업자등록증(사본)	해당직장 세무서
		근로자,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 납부자	• 납세증명서 및 납부내역증명서, 원천징수영수증 ※ 과거 1년 이내 및 해당년도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 납부분에 한함)	
	소득세납부 입증서류	과거 5개년도 소득세 납부내역 (근로자 및 자영업자,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분으로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 납부자)	• 5개년도 소득세 납부증명서류로 아래에 해당하는 서류 중 하나 ① 소득금액증명, 납세증명서 및 납부내역증명(종합소득세 신고자에 한함) ②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③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직인날인)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직인날인) ④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	①, ②, ③ 세무서 ④ 해당직장

- ※ 상기 소득세 납부 입증서류 외 대상자의 적격 여부 확인을 위해 추가 서류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 ※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 중 결정세액이 환급 또는 없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를 제출(해당년도 모두)해야 합니다.
- ※ 해당직장, 세무서 등 해당 기관의 직인 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 소득세 납부 입증관련 모든 서류는 성명, 주민등록번호가 모두 표시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산입증서류(추첨제, 소득기준 초과 신청자에 한함)

서류구분	해당자격	자산입증 제출 서류	발급처	
자산기준 입증서류	부동산 소유현황이 있는 경우	필수	• 부동산 소유현황(세대원별 발급) • 건물(토지)등기사항전부증명서(부동산 소유현황에 표시된 해당 부동산 모두에 대한 서류 발급)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해당 부동산의 재산세 납부내역을 입증하는 서류)	대법원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위택스(www.wetax.go.kr), 행정복지센터
		추가 (해당자)	• 공동(개별)주택가격 확인서(소유 부동산이 건축물대상상 주택인 경우) • 토지는 개별공시지가확인서 ※ 주택과 토지의 경우, 일사관리(kras.go.kr)에서 부동산종합증명서를 발급, 제출하시면 소유권 등기사항 및 공시가격 및 공시지가 확인 가능 • 건축물시가표준액 조회결과(소유 부동산이 건축물대상상 주택 외 건축물인 경우) - 서울시 : etax 이용안내 > 조회/발급 > 주택 외 건물시가표준액 조회에서 조회결과 인쇄·제출 - 서울시 외 : 위택스 > 지방세정보 > 시가표준액 조회에서 시가표준액 조회결과 인쇄·제출	행정부지센터 / 일사관리(kras.go.kr) 서울시(www.etax.go.kr), 서울시 외(www.wetax.go.kr)
	해당자	• 농지법 및 초지법 등에 따라 초지가액에서 제외되는 경우 ① 농지대장 ② 축산업 허가증 ③ 토지이용계획확인서	① 행정복지센터 ② 지자체 축산과 ③ 토지이음(www.eum.go.kr)	
부동산 소유현황이 없는 경우	필수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 등기열람/발급 > 부동산 > 부동산 소유현황 > 신청 및 열람하기 조회결과 인쇄·제출 ※ [조회 명의인] “신청하신 성명(명칭), (주민)등록번호로는 부동산소유현황 조회내역이 없습니다.” 내용 화면 인쇄 • 지방세 세목별 미과세증명서(관할자치단체 : 전체 / 과세연도 : 2023년 / 재산세는 ‘건축물, 토지, 주택’만 선택) ※ 위택스(www.wetax.go.kr) > 납부결과 > 증명서발급 > 세목별 과세증명서 > 세목별 미과세증명서 발급	대법원인터넷등기소 / 정부24 위택스(www.wetax.go.kr) 행정부지센터	

■ 일반공급 입주대상자(예비입주자 포함) 자격확인서류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공통서류	○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당첨자 자격요건 서약서	본인	• 건본주택 비치 • 무주택 입증서류(당첨자 자격요건 서약서로 대체)
	○		신분증	본인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20.12.21 이후 신규발급본인 경우 여권정보증명서로 발급)

	○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도 : 주택공급신청용(* 본인 발급용 / 대리인 발급용 불가)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도 가능하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제3자 대리 신청은 불가
	○	인감도장	본인	• 인감증명서상의 인장 대조 확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자는 본인서명
	○	주민등록표등본(전체포함)	본인	• 주민등록번호, 세대주 및 세대원 포함, 주소변동사항 및 변동사유,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포함하여 “전체포함” 발급
	○	주민등록표초본(전체포함)	본인	•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사항·사유 및 발생(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전체포함”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본인	• 성명,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상세” 발급(배우자 및 자녀, 직계존속 등 공급주택신청자와의 관계)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본인	•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여 “상세” 발급
	○	출입국사실증명서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5항에 따라 거주기간을 정하여 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 • 주민번호 전체 표시, 기록대조일은 당첨자 생년월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설정, 출입국 기록출력 여부 “Y” 설정 발급
		○	복무확인서	본인
	○	주민등록표등본(전체포함)	배우자	• 주민등록표등본상 배우자 분리세대에 한하며,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등을 포함하여 “전체포함” 발급
해외 근무자 (단신부임)	○	해외체류 관련 증빙서류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기업 및 기관소속 해외주재원 및 출장자인 경우 : 파견 및 출장명령서 • 해외 취업자 및 사업체 운영자인 경우 : 현지 관공서에서 발급받은 사업 또는 근로 관련 서류, 취업 또는 사업비자 발급내역 등 • 근로자가 아닌 경우 반드시 제출 : ① 비자 발급내역 ② 계약서 또는 근로계약서 등 ※ 유학, 연수, 관광, 단순체류자의 경우 생업사정을 인정할 수 없으며, 생업관련 증빙서류 제출이 불가능한 자 또는 인정 불가
	○	출입국사실증명서	배우자 및 세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대원 및 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고 있지 않은 미성년자녀 전원의 해외체류 유무 확인 ※ 기록대조일 : 생년월일 ~ 현재로 설정(주민등록번호 공개에 체크, 행정복지센터 또는 정부 24, 출입국 기록출력 여부 “Y” 설정 발급
가정제 (예비 입주자)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본인	• 만 30세 미만 나이에 혼인하여 혼인신고일로부터 우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배우자 및 직계존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혼가정의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주택공급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한함) •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청약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되어있거나, 분리된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을 경우
	○	주민등록표초본(전체포함)	피부양 직계존속	•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본인의 주민등록표등본상에 직계존속과의 관계가 확인되지 않거나 직계존속의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와 세대 분리된 경우
	○	출입국사실증명서	피부양 직계비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거주기간 확인 ※ 기록대조일 : 생년월일 ~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설정, 출입국 기록 출력 여부 “Y” 설정 발급 * 해외체류(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중인 경우에는 부양가족에서 제외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만 18세 이상 미혼인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주민등록표초본(전체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만 30세 이상 미혼인 직계비속이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1년 이상 연속된 등재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경우
○	출입국사실증명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으려는 경우(* 주민번호 전체, 기록대조일 : 생년월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설정, 출입국 기록출력 여부 “Y” 설정 발급) ※ 단, 아래의 경우 부양가족에서 제외 - 만 30세 미만 미혼 자녀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중인 경우 - 만 30세 이상 미혼 자녀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제3자 대리인 신청	○	위임장	본인	• 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견본주택 비치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인 외 모두 제3자로 간주함 • 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대리 신청 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불가), 본인 발급분에 한함 • 단, 외국인인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신분증	대리인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외국국적 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인 외국인등록증)
부적격 당첨 통보를 받은자	○	해당 주택에 대한 소명자료	해당주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가옥대장등본 포함) • 무허가건물 확인서 또는 철거예정 증명서 • 소형·저가주택임을 증명하는 서류(주택공시가격증명원 등) •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사업주체가 요구하여 인정하는 서류	해당주택	• 해당기관의 당첨사실 무효 확인서 등
전세피해자 제출서류	○	해당 주택에 대한 소명자료	해당주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대차계약서, 낙찰 증명서류(경매 : 매각허가결정, 공매 : 매각결정통지서 등) • 등기사항증명서(임차주택), 임차주택 경·공매에서 채권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경매 : 배당표, 배당요구신청서 등 / 공매 : 배분계산서 등)

※ 상기 제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합니다.

※ 상기 관련 서류 외 대상자의 적격 여부 확인을 위해 추가서류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제4항 및 제53조

- 검색대상 :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세대원 전원
- 주택의 범위 :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와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분양권 등
- 주택처분 기준일(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1.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 2의2. 분양권 등에 관한 계약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공급계약체결일
 - 2의3. 제2조제7호다목에 따른 분양권 등의 매매계약서
 - ㉞. 분양권 등의 매매 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경우에는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
 - ㉟. 분양권 등을 증여나 그 밖의 사유로 처분한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상 명의변경일
 3. 그밖에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주택소유 여부를 판단할 때 분양권 등을 갖고 있거나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봅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1.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 ㉞.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 ㉟. 85㎡이하의 단독주택
 - ㊱.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20㎡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6.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신청자 제외)
 - 가정제의 부양가족 인정 여부 판단시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에서 제외합니다.
 7.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 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남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8. 무허가건물[중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이 경우 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9.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소형·저가주택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10. 제27조제5항 및 제28조제10항제1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 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합니다.)
 11. 임차인으로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사람이 임차주택을 경매 또는 공매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그 주택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 ㉞. 주택가격이 1억5천만원(수도권은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이 경우 주택가격의 산정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가목2)를 준용합니다.
 - ㉟.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 소형·저가주택 1호를 보유한 경우의 특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 가목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전용면적 60㎡ 이하이며, 주택공시가격이 수도권은 1억 6천만원(비수도권 1억원) 이하인 주택 또는 분양권 등(소형·저가주택 등)을 1호 또는 1세대만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은 소형·저가주택 등 보유기간 동안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봅니다.
 - 현재 소형·저가주택 소유자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소형·저가주택 1호 또는 1세대만을 소유한 경우
 - 현재 무주택자 : 종전에 소형·저가주택을 처분한 후 계속 무주택자로 있는 경우 → 해당 소형·저가주택의 보유 기간도 무주택으로 간주함
- ※ 소형·저가주택 공시가격 적용기준
 - ① 입주자모집공고일 후에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 ②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 :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다만, 2007년 9월 1일 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2007년 9월 1일 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2007년 9월 1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릅니다.
 - ③ 분양권 등의 경우 :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에 대한 가격은 제외)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7호의3에 의거 소형·저가주택 등은 분양권 등을 포함하며, 공급계약서의 고급가격(선택품목 제외) 기준으로 가격을 판단합니다.

Ⅶ 계약체결

■ 계약체결 일정 및 장소

■ 당청 동·호수의 공급대금 및 계약금을 확인 후 지정된 분양대금계좌(계약금)로 계약금 납부하고 필수 구비사항과 해당 추가구비사항을 준비하시어 반드시 지정된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구분	계약 체결 기간	계약 체결 장소
당첨자 계약 체결	2024.03.25.(월) ~ 2024.03.27.(수) 10:00 ~ 17:00	경희궁 유보라 건본주택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23)

- ※ 당첨자 계약 체결 일정 및 방법은 정부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추후 별도 안내할 예정입니다.
- ※ 당첨자에 대한 주택소유실태 전산검색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등 적격(정당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적격자로 재확인 후 계약을 체결합니다.(부적격자는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사업주체가 통보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당첨된 주택은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 계약체결 이후라도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하지 못하면 계약은 취소됩니다.
- ※ 지정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정당 당첨자 계약기간 내 계약 미체결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 계약금은 지정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여야 합니다.(현금 및 수표 수납 불가)

■ 계약 체결 시 구비사항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본인 계약 시	○		계약금 입금 증빙서류	본인	• 무통장 입금 영수증 또는 입금 확인증
	○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본인 발급용 인감증명서에 한함 / 용도 : 주택공급신청용 ※ 단,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본인만 인정(제3자 대리신청은 불가) / 자격확인서류 제출기한 내 제출한 경우 제외
	○		신분증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20.12.21 이후 신규발급분인 경우 여권정보증명서로 발급) ※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1통 및 국내거주사실증명서 1통 / 외국인 : 외국인등록증 및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		전자수입인지		• 전자수입인지 납부증명서 ※ 아파트 공급대금, 발코니확장계약 등 추가선택품목에 따른 인지세를 사업주체와 1/2씩 균등 부담
	○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 홈페이지 서식 참조(6억 초과 주택에 한함)
	○		당첨 유형별 입주대상자 자격확인서류		• 입주대상자 자격확인서류 제출기한 내 제출한 경우 제외
		○	추가 개별통지 서류		• 기타 사업주체가 적격여부 확인을 위해 요구하는 서류(개별통지)
대리인 계약 시 추가사항 (본인 외 모두)	○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청약자	• 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대리 신청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불가), * 본인 발급분에 한함 ※ 외국인인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위임장	청약자	• 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당사 견본주택 비치
	○		대리인 신분증 및 인장	대리인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20.12.21 이후 신규발급분인 경우 여권정보증명서로 발급) ※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1통 및 국내거주사실증명서 1통 / 외국인 : 외국인등록증 및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 ※ 모든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24.02.22.)이후 상세 발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용도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단,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외국인은 공급신청 시와 동일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청약자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배우자, 직계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공통/추가서류 외에 대리인 접수 시 서류를 추가로 구비하여야 합니다.
- ※ 수입인지 구매금액 - 공급대금, 발코니확장(추가선택품목 대금 포함)대금의 1/2을 사업주체와 분양계약자가 균등 부담

1천만원 초과 ~ 3천만원 이하	3천만원 초과 ~ 5천만원 이하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10억원 초과
2만원	4만원	7만원	15만원	35만원

※ 구매절차 : 홈페이지 접속 > 회원가입 or 비회원 구매 > 구매 > 납부정보 입력(인지세납부 / 부동산 등 소유권 이전 / 금액선택 / 1건) > 테스트 출력 > 결제(계좌이체 or 신용카드) > 출력

※ 주의사항 : 인지세 납부 이후 출력된 전자수입인지 원본의 변경(소인 등)시, 인지세를 재납부하는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분양대금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구분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분양대금	신한은행	140-014-429423	영천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주)반도건설

※ 상기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분양금액은 인청치 않으며 또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무통장 입금증은 계약체결 시 지참 요망(무통장 입금증은 분양금액 납부 영수증으로 같음되며, 별도의 영수증은 발행되지 않으므로 필히 보관하시기 바람)

※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위하여 온라인 수납만을 인정하며, 견본주택에서 일체의 현금 및 수표 수납은 하지 않으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착오납입에 따른 문제 발생시 사업주체는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단, 무통장 입금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소명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이자는 없음)

■ 계약체결 조건 및 유의사항

• 당첨자 계약 체결기간 준수

- 본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계약 체결 여부와 무관하게 당첨자로 전산 관리합니다.
- 지정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실대 및 과거 당첨사실 유무 전산검색 소요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당첨자에 대한 주택소유실대 전산검색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등 적격자(정당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 지정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기간 내 계약 미 체결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계약금은 지정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며 현장수납은 불가)

■ 계약체결 전 서류심사 및 부적격 여부 확인

- 주택의 공급계약이 입주자로 선정된 날부터 5일이 지난 후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던 것을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사실 공고일로부터 11일이 경과한 후 체결하도록 함에 따라 계약체결 이전에 견본주택을 방문하여 아래 계약 시구비서류를 제출하시고 부적격 사항 및 적격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자격, 세대주, 당해 거주요건, 주택소유, 배우자 분리세대 확인 등)
- 사전검수 기간 내에 서류심사를 하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계약체결 이후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된 경우에는 불이익(당첨 및 계약 취소, 다른 주택의 입주자 선정 제한 등)이 발생함을 유념하시고, 계약체결 전 기간 내에 견본주택을 방문하시어 관련 서류 제출 및 계약체결 자격 적격성 여부를 점검 받으시기 바랍니다.

■ 이중 당첨자 및 부적격 당첨자에 처리 및 계약 취소에 관한 사항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제24호

- 입주대상자 자격 확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에 따라 당첨자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및 계약 신청 시 제출서류 확인 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로 판정된 자에 대해서는 그 결과를 즉시 통보하며, 통보한 날로부터 7일 내에 부적격 사항에 대한 소명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 부적격 사항 소명 안내 : 관련기관의 전산시스템과 입주자모집공고일 당시 입주대상자의 현황이 상이할 수 있으며, 부적격 사항 및 적격여부 확인이 필요한 자로 통보된 경우 소명기간(7일) 내에 서류 확인등을 통하여 소명을 할 경우에 한하여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 계약체결 이후 관련 법령 등의 처리 및 검증으로 인한 당첨 및 계약취소 확인 : 계약체결 후에도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될 경우 입주자 선정대상에서 제외되고, 공급계약을 취소하며 부적격당첨자로 관리됩니다.
 - ① 1순위 당첨자 중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의 소유여부가 신청한 사실과 다른 경우 - 주택 및 '분양권 등' 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 참조
 - ② 특별공급 당첨자 중 과거 다른 주택에 특별공급 자격으로 당첨된 사실이 있는 경우
 - ③ 가정제의 적용 대상자가 아닌 자가 가정제를 적용받아 당첨된 경우
 - ③ 위장전입,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 관련서류 변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된 경우
 - ④ 부적격자는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통보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기간(7일)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 단, 부적격 당첨자 중 당사 견본주택에 방문하여 '계좌부활 요청서 (당사 비치) 작성 시 청약통장 재사용이 가능하며 당첨이 취소된 자는 공급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본 아파트의 당첨일부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 외 6개월, 위촉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입주자(민간 사전청약을 포함)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상기 기준에 의거 주택소유 여부 판단 시 당첨자 본인,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전원 포함) 및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원 전원의 주택소유 사실을 포함하며, 특별공급 및 1순위자(분리세대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는 국토교통부에 무주택 여부를 검색하여 부정 당첨자를 판명합니다.

- 부적격자로 판명됨으로 인한 청약통장 사용불가 등의 불이익에 대해서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 등에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 행정구역 및 단지 내 시설 명칭, 동·호수는 관계기관의 심의 결과에 따라 공급 시의 명칭과 상이할 수 있으며, 변경 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당첨 및 계약 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확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 될 수 있으며,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습니다.
- 계약신청 시 제출한 서류가 사실이 아님이 판명된 경우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기 체결된 계약은 취소하며 부적격 당첨자로 관리하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인에게 귀속됩니다.
- 청약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 발표일이 우선인 다른주택에 당첨이 되면 본 주택의 당첨을 취소합니다.
- 본 아파트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계약 체결 여부와 무관하게 당첨자로 전산 관리합니다.
- 행정구역 및 단지 내 시설 명칭, 동·호수는 관계기관의 심의 결과에 따라 공급 시의 명칭과 상이할 수 있으며, 변경 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는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으로 지정되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규정에 의거 부동산 계약 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동산 거래신고”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신고에 따른 일정한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공하여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건본주택에서 발생하는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시공업체, 부동산중개업자 등의 영업행위)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와 무관한 사항입니다.
- 입주지정일 이후 발생하는 제세공과금에 대해서는 입주 및 잔금납입이나 소유권 이전 여부와 관계없이 계약자가 부담하며 또한 계약자 불이행으로 인해 사업주체가 입은 손해는 계약자가 배상합니다.
- 주변단지의 신축으로 인한 건축사화와 아파트 배치, 구조 및 동·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진동(주변도로의 비산분진, 소음문제 등을 포함) 등으로 환경권 및 사생활 등이 침해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청약신청 및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건본주택에서 확인이 곤란한 사항인 공용부문의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의 용량, 속도, 탑승위치 등) 등은 현장여건에 맞게 설계 변경된 최종 사업시행인가(사업계획승인) 도면에 준하며, 이로 인해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계약체결 후 계약자의 변심, 귀책사유 등으로 인하여 분양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계약 내용에 따라 위약금을 배상하여야 합니다.
- 계약체결 시 계약자가 선택하는 마감재 선택사항 및 추가옵션계약은 변경이 불가하며, 공사에 착수하거나 별도품목 상품을 제작업체에 주문 또는 발주한 이후에는 해제가 불가하므로 이점 유념하시어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부동산 거래(분양계약)로 인해 발생하는 인지세(가산세) 및 제세공과금 등은 납부기한 내 공급계약자 부담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기타 계약조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에 준합니다.

■ 부적격 당첨자에 대한 명단 관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

- 사업주체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제3항 및 제57조제8항에 따른 부적격 당첨자가 소명기간에 해당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고 제4항에도 해당하지 못하여 당첨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그 명단을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자의 명단을 당첨자 명단에서 삭제하는 등 전산관리하고, 제57조제7항에 따라 사업주체에게 전산검색 결과를 통보할 때 제3항에 해당하는지를 표시하여 통보하여야 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 제1항에 따라 당첨이 취소된 자는 공급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당첨일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역에서 해당 호에서 정한 기간 동안 다른 분양주택(민간 사전청약주택 및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한다)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① 수도권 및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 1년
 - ② 수도권 외의 지역: 6개월
 - ③ 제1호 및 제2호의 지역 중 위축지역: 3개월
- 사업주체는 부적격 당첨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당첨자로 봅니다. 다만, 제57조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① 같은 순위(제27조 및 제28조에 따른 순위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서 경쟁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순위의 자격을 갖춘 자
 - ②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제52조제3항에 따른 소명기간에 재산정한 가점제 점수(가점제를 적용하여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공급 순차별 자격(순차별로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이 해당 순위의 당첨자로 선정되기 위한 가점제 점수 또는 자격 이상에 해당하는 자
- 예비입주자 선정 시 제출한 청약신청 서류 검토 결과, 가점점수가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재산정한 가점점수가 다음 순위 예비입주자의 점수를 초과한 경우에만 예비입주자 자격이 유지될 수 있으며, 다음 순위 예비입주자 점수보다 같거나 낮은 경우에는 예비입주자에서 제외됩니다.

■ 계약자 중도금 대출안내

- 사업주체 및 시공사는 대출기관이 아니므로 분양상당 시 대출여부에 대해 확정할 수 없으며, 추후 금융기관 심사를 통하여 대출여부가 결정됩니다. 이에 고객의 대출비용 축소 또는 대출 불가에 대하여 분양상당(전화 상담 포함) 내용을 근거로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대출 책임을 요구할 수 없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의 중도금 대출은 공급대금의 **60%** 범위(중도금1회부터 중도금6회까지) 내에서 이자후불제 조건으로 용자 알선을 할 예정이며, 중도금 대출관련 세부내용은 추후 별도 공지 및 안내예정입니다.
- **중도금 대출 이자납부는 대출 개시일부터 입주지정기간 개시 직전 이자납부일까지 발생한 대출이자에 대해서는 사업주체가 대납(잔금납부시 사업주체에게 전액 지급)하고 이후부터 발생하는 대출 이자**

는 계약자가 납부하여야 합니다. 단, 사업주체가 대납한 이자는 계약자가 사업주체에게 잔금납부 시 함께 납부하여야 합니다.

- 적격대출 가능 계약자가 중도금 대출을 받고자 하는 경우 해당 계약자는 분양계약 체결 후 사업주체가 알선한 중도금 대출 협약 금융기관에 중도금 대출을 별도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단, 대출 미신청자와 본인의 부적격 사유로 인하여 대출이 불가한 자, 대출규제 대상자는 분양대금을 자기 책임하에 조달하여 기일내에 납부하여야(미납 시 연체료가 부과됨)하며, 이 경우 무이자 조건에 대한 요구를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할 수 없습니다.
- 계약자는 법률의 변경 및 금융관련 정부정책(주택담보대출의 제한 등), 금융시장 변화 또는 대출 금융기관의 규제 등에 따라 사업주체의 중도금 대출 알선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하며, 이러한 제한에도 불구하고 분양대금은 계약자 본인 책임하에 조달하여 기일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중도금 대출 금융기관의 알선은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의무사항이 아니며, 계약자에 대한 편의 제공에 불과함)
- 본 아파트는 사업주체가 알선한 금융기관을 통해 중도금 대출 신청이 가능할 경우에도 금융관련 정부정책, 대출 금융기관의 여신관리규정, 집단대출 보증기관의 관리규정 등으로 대출조건이 각 세대별, 각 개인별로 상이하거나, 최종적으로 중도금 대출 실행이 불가할 수 있음을 인지하시기 바라며 이에 따른 중도금 대출 불가 및 대출한도 축소 등으로 인한 개인적인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고 이와 관련된 책임을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부담하지 않습니다.(재외동포 및 외국인의 경우 대출 가능 여부 반드시 확인)
- 적격대출 시 대출 금융기관과의 중도금 대출협약 등에 의거하여 사업주체는 대출 금융기관에 중도금 대출을 위한 분양계약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금융관련 정부정책, 대출 금융기관의 여신관리규정, 집단대출 보증기관의 관리규정 등을 감안한 대출(이하“적격대출”) 시 금융기관, 집단대출 보증기관의 중도금 대출협약 조건에 의거 계약금 완납 이후 중도금 대출이 가능하고 계약금 일부 미납 시에는 중도금 대출이 불가합니다.
- **중도금 대출에 필요한 대출 취급수수료(집단대출 보증기관의 보증수수료 등), 인지대 등 제반 경비는 금융기관 등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약자가 부담**해야 하며, 적격대출은 금융 신용불량 거래자, 타 은행 대출, 대출 한도 및 건수 초과, 주택도시보증공사(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각종 대출보증서 발급제한 등 계약자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 또는 금융관련 정부정책 등에 의해 제한되고 있음을 계약자 본인이 인지하고, 중도금 대출이 불가하거나 중도금 대출한도가 부족할 경우 계약자는 분양대금 납부조건에 따라 중도금(잔금)을 직접 납부(미납 시 연체료가 가산됨)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대출 불가사유로 인한 분양계약 해지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 중도금 대출 기간 이내라도 계약자의 금융 신용불량 등 결격사유가 발생하여 대출 금융기관의 중도금 대출중단 요구로 분양대금이 납부되지 않을 경우 사업주체는 분양계약해지를 할 수 있으며, 이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잘못이 아닌 계약자의 결격사유에 기인하므로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적격대출 관련 중도금 대출 신청 관련 안내는 사업주체 의무사항이 아니며 “개인사유로 인한 대출 미신청” 또는 “금융거래 신용불량자 등” 계약자의 사정에 의한 대출 불가 등으로 발생하는 개인적인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사업주체가 알선한 대출의 대출 기간 만료 시(준공 후 미입주 등) 금융기관의 대출기간 연장 및 공정율에 따른 중도금 납부 일자의 변경에 대해 별도의 절차 없이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분양권 전매 요청 시 해당 주택의 사업주체 및 대출 취급기관은 양수인의 신용등급 등의 제반조건을 확인하기 위하여 추가 증빙서류를 요구할 수 있으며, 대출취급기관 또는 사업주체의 판단에 따라 양수인이 신용등급 등의 제반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분양권 전매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계약자는 사업주체가 알선한 금융기관에서 중도금을 대출받았을 경우 준공 후 소유권 이전등기 및 대출은행의 1순위(제2금융권에서 추가대출을 받은 경우 제2금융기관의 2순위 포함) 근저당 설정 시까지 분양 계약한 부동산에 임대차계약을 할 수 없습니다.
- 계약자는 입주 전까지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담보대출로 전환하여야 하며, 대출금을 담보대출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급금액을 전액 완납하고 소유권 이전 및 근저당권 설정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담보대출에 따른 보증수수료, 인지대 등 제반 수수료 및 근저당설정 비용 등은 대출 취급 기관이 정한 부담 주체가 부담하여야 하며, 담보대출로 전환시 대출한도, 대출금리 등 기타대출조건 등은 대출 취급 기관의 조건에 따르기로 합니다.
- 본 아파트의 입주지정일이 앞당겨지거나 늦춰질 경우에도 중도금 대출 이자는 변경된 입주지정기간 최초일 전까지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대신 납부하며, 변경된 입주지정기간 최초일부터 발생하는 이자는 계약자가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 사업주체의 부도·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대납하던 중도금 대출이자는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계약자는 중도금 대출 최초 신청시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제시한 중도금 대출금리 등의 조건으로 대출신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추후 중도금 대출금리 조건(대출금리 인상 등)이 변경되더라도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게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중도금 대출금액은 준공 후 후취담보 취득 시 담보금액 부족 등의 사유로 감액될 수 있습니다.
- 중도금 및 잔금의 선납할인을 및 연체이자는 공급계약서를 기준으로 합니다.

■ 입주자 사전방문 안내 (「주택법」 제48조의2 제1항, 「주택법 시행규칙」 제20조의2)

- 도장공사·도배공사·가구공사·타일공사·주방용구 공사 및 위생가구 공사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주기간 시작일 45일전까지 2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입주자 사전방문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사전방문기간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사전방문시작일 1개월 전까지 별도로 안내할 예정입니다.

■ 입주예정월 : 2026년 07월 예정 (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

- 2021.02.19.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사업주체는 실제 입주가 가능한 날부터 2개월 전에 입주예정월을, 실제 입주가 가능한 날부터 1개월전에 입주 가능일을 통보할 예정이며, 본 아파트는 500세대 미만의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로 입주지정기간을 45일 이상 제공할 예정입니다.

-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중도금과 잔금을 실입주일에 함께 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선납할인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입주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공사 중 지하암반발생, 천재지변, 문화재 발견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 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발생하는 제세공과금에 대해서는 입주 및 잔금완납이나 소유권 이전 유무에 관계없이 계약자가 부담합니다. 또한, 계약자의 불이행으로 인해 사업주체가 입은 손해는 계약자가 배상합니다.
- 소유권 보존등기 및 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지적공부정리 절차 등으로 지연될 수 있습니다. (특히 대지의 이전등기는 상당기간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건물등기와 대지권 등기를 별도로 이행하여야 함)

■ 부대복리시설 : 관리사무소, 운동시설(휘트니스, GX룸, 골프연습장),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세대창고 등이 있습니다.

■ 벌칙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관련서류 변조 및 도용, 주민등록법령 위반, 청약동장 등을 타인 명의로 가입하거나 가입한 분의 청약 동장 등을 사실상 양도 받아 신청 및 계약하는 등의 불법행위로 적발될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취소 및 고발 조치하며, 「주택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공급질서 교란자(알선자도 포함) 및 전매행위 제한을 위반한 자는 적발한 날로부터 10년간 입주자 자격이 제한됩니다.
- 계약체결 후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분양계약서에서 규정한 위약금을 공제합니다.
- 본 아파트는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신청서의 내용변조 등의 행위로 주택공급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 등으로 관련 법령을 위반할 경우 법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 불법거래를 알선 또는 중개한 부동산업자의 경우에도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자격정지, 등록취소 등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규정에 의거 거래당사자인 사업주체 및 계약자는 본 아파트에 대한 공급계약 체결 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동산거래신고'해야 합니다. 또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및 별표1 규정에 의거 거래가격 6억원 이상의 주택에 대해서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합니다.(추가 설치 품목 계약 등 추가 계약 체결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신고가 필요할 수 있음) 따라서 부동산 거래신고에 따른 필요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공해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비·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2항에 따라 부동산 거래신고를 하지 아니한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하자판정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보상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5조, 「공동주택 관리법」 제36조, 제37조 및 동법시행령 제36조, 제37조에 따라 적용됩니다.

■ 하자담보 존속기간 및 하자보수

- 하자담보 존속기간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동법시행령 제5조,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36조에 의거하여 적용됩니다.
- 하자의 판정은 국토교통부 고시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이 적용됩니다.
- 콘크리트의 폭 0.3mm이하의 미세한 균열은 공사상의 하자 범위에서 제외합니다.
- 하자보수 절차는 「공동주택관리법」 제37조에 의거하여 적용됩니다.
- 하자 판정 기준 도면은 사용검사(사용승인) 도서를 기준으로 합니다.
- 아파트 입주자의 하자보수 관련 일체의 입주자 피해보상은 「공동주택 관리법」 제36조, 제37조, 제38조에 따라 적용됩니다.

■ 학교 배치등 관련분야 유의사항

- 초등학교는 금화초등학교에 배정할 예정이며, 향후 배정방법은 교육부의 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주체 및 시공사와 무관한 사항으로, 이에 대해 사업주체가 이익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학생배정계획은 향후 입주시기 및 학생수 등을 감안하여 해당 관청에서 결정하는 사항이며, 사업추진계획의 변동 및 관할 기관의 정책변화에 따라 분양 당시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관할 교육청 등 해당 관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Ⅷ 발코니확장 및 추가 선택 품목 계약

■ 발코니 확장

- 발코니 확장 및 플러스옵션 품목의 계약은 공동주택 공급계약과 별도로 계약을 진행합니다.
- 발코니 확장 및 플러스옵션 품목의 납부 방법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 순으로 분할 납부 예정이며, 자세한 사항은 계약 시 별도 안내 예정입니다.

1. 발코니 확장비

(단위 : 원, VAT포함)

주택형(타입)	적용사항	공급금액	계약금(10%)	중도금(10%)	잔금(80%)	비고
			계약시	2024.07.11.	입주지정일	
59	거실+주방+침실1+침실2	16,500,000	1,650,000	1,650,000	13,200,000	
84A	거실+주방+알파룸	16,700,000	1,670,000	1,670,000	13,360,000	
84B	84B 거실+주방+침실1+침실2	16,900,000	1,690,000	1,690,000	13,520,000	
	84B1 거실+주방	10,700,000	1,070,000	1,070,000	8,560,000	
84C	거실+주방+알파룸	16,700,000	1,670,000	1,670,000	13,360,000	

2. 발코니 확장 공사비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구분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발코니 확장 공사비	BNK 부산은행	101-2087-2672-01	(주)반도건설

- ※ 상기 입금계좌는 분양대금 및 추가선택품목 납부계좌와 상이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람
- ※ 발코니확장 공사비는 약정된 계약금, 중도금, 잔금 납부일에 지정된 계좌로 무통장 입금(입금시 비교란에 동·호수 또는 계약자 성명 필히 기재)하시기 바라며, 별도의 통지를 하지 않음.
- ※ 무통장 입금증은 계약체결시 지참 요망(무통장 입금증은 분양금액 납부 영수증으로 같음되며, 별도의 영수증은 발행되지 않으므로 필히 보관하시기 바람)
- ※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위하여 온라인 수납만을 인정하며, 견본주택에서 일체의 현금 및 수표 수납은 하지 않으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람
- ※ 착오납입에 따른 문제 발생시 사업주체는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 무통장 입금시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람. (단, 무통장 입금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소명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이자는 없음)
(예시 - 101동 1502호 계약자 → '1011502홍길동' / 102동 703호 계약자 → '1020703홍길동')

3. 발코니 확장 유의사항

- 동일 타입일지라도 층/구간별 발코니 확장면적 및 공급금액이 상이하오니 사전에 반드시 견본주택에 비치된 건축도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발코니 확장 공사비에는 취득세 등 제세공과금이 미포함된 금액이므로 추후 분양계약자가 취득세 등 제세공과금을 별도 부담하여야 합니다.
- 발코니 외부창호류, 세대내 목창호류, 가구류, 유리, 석재, 타일, 바닥재 등 마감자재의 색상, 디자인, 재질 등은 실제 시공 시 견본주택과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의 면적은 관계법령에 의거하여 산출되는 면적으로 실사용 면적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 확장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질의 타사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주택형별 확장위치 등 세부사항은 분양카탈로그 및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외부 샷시는 단일창호로 설치되며 내풍압, 구조경도 등의 결과에 따라 세대별, 층별, 위치별로 창호규격 및 사양(유리, 창틀), 문의 방향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간 형별, 층별에 따라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천장 환기구 위치, 에어컨 실내기 위치, 세대간 마감 등이 상이할 수 있으며, 실내습도 등 생활습관에 따라 발코니 샷시 및 유리, 기타 확장부위에 결로현상이 발생 될 수 있으니 계약자가 환기 등으로 예방하여야 하며(주기적인 실내환기는 결로발생 예방에 큰 도움이 됨), 이로 인한 하자 발생 시 하자보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전후면 발코니 및 콘크리트 난간 높이는 동 위치 및 층수에 따라 차이가 있을수 있으므로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실제 시공 시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인접세대 및 동일세대 내부 각 부위별 확장여부에 따라 추가단열공사로 인해 발코니 벽체일부가 돌출될 수 있습니다.
- 세대에 설치되는 창호의 개폐 방향 및 분할은 본 공사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에 설치되는 난간과 발코니 샷시의 형태 및 사양은 기능 및 미관개선을 위하여 형태 및 재질이 실시공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외벽은 발코니 확장 등으로 단열재 추가 설치 시 구조체 및 인테리어, 가구 등이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시공 시 외관 구성 상 일부 세대의 발코니에 장식물이 부착될 수 있습니다.
- 준공 이후 발코니 구조변경을 할 경우 개별세대로 행위허가(신고) 절차를 득하여야 하고 사전허가 없이 불법구조 변경하여 확장하는 행위는 [건축법], [주택법], [공동주택관리법]을 위반하는 사항으로 입주 후 불법구조 변경시, 엄중한 처벌과 원상복구 등 강력한 행정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주체에서 시행하는 발코니 확장은 건축법에 의거 적법하게 설치되었으며, 입주 후 개별적으로 확장 시에는 「건축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발코니 피난공간의 구조변경 및 설치기준을 준수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관리주체에 반드시 신고, 확인 후 설치하여야 합니다.
- 발코니 외부사시는 층, 향에 의한 바람의 영향 차이로 유리의 강도 및 두께 또는 재질의 안정성을 위해 견본주택과 다르게 시공될 수 있으며, 풍압테스트 결과 및 안전성 등의 이유로 세대별, 각 실별 (실별내에서도 차등가능) 유리두께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계약체결 이후 관계법령 해석상의 차이 등의 사유로 발코니 확장공사가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에 따른 단일창호, 단열재의 추가 설치로 발코니 실사용 면적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 각 세대의 발코니에 필요 시 선홍통 및 드레인 등이 시공될 수 있으며, 발코니 사용 및 우천으로 인해 소음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과 가변형 벽체 칸막이의 개별 시공 및 철거(관계법령에 의거 입주자 등의 동의 필요)를 할 경우 계약자는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적합하게 시공하여야 하며, 관계법령 위반에 따른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단위세대 주방 상판, 주방가구 등 마감재를 사전에 확인하시어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전용면적에 발코니 초과면적이 포함되어 있는 타입이 있으며, 이 면적은 확장면적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으니 유념하시기 바라며 세부사항은 견본주택 현장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확장 면적에 초과 발코니 면적 중 비확장 부분과 공유되는 부분의 면적이 일부 포함되오니 양지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주택형별 단위세대 구조 및 외부 입면변화에 따라 발코니 면적 및 확장면적에 차이가 있으며, 발코니 확장 시 동일 주택형이라도 해당 동·호수에 따라 확장구간의 폭 및 깊이가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 확장범위는 확장형 단위세대 평면도를 기준으로 하며 계약체결 이후 관계법령 해석상의 차이 등의 사유로 발코니 확장공사가 일부 변경될 경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 확장으로 인하여 생기는 침실(거실, 주방) 부분에 가구 배치로 인하여 창문을 통해 어린이들이 떨어지는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니, 가구 배치시 창문과 이격 또는 난간 높이 확보를 통하여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라며, 추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선시공 후분양 아파트의 특성상 공정상의 사유로 선 시공된 발코니 확장은 계약기간 동안 계약하여야 하며 계약 이후 취소는 불가합니다.

■ 추가 선택 품목(유상옵션)

1. 시스템에어컨 종류 및 가격

(단위 : 원, VAT포함)

타입	설치위치		설치대수	공급금액	계약금(10%)	중도금(10%)	잔금(80%)	비고
					계약시	2024.07.11.	입주지정일	
59	선택1	거실+안방	2대	3,730,000	373,000	373,000	2,984,000	LG전자
	선택2	안방+침실1+침실2	3대	4,630,000	463,000	463,000	3,704,000	
	선택3	거실+안방+침실1+침실2	4대	6,130,000	613,000	613,000	4,904,000	
84A	선택1	거실+안방	2대	3,720,000	372,000	372,000	2,976,000	
	선택2	안방+침실1+침실2+알파룸	4대	5,980,000	598,000	598,000	4,784,000	
	선택3	거실+안방+침실1+침실2+알파룸	5대	7,660,000	766,000	766,000	6,128,000	
84B/B1	선택1	거실+안방	2대	3,720,000	372,000	372,000	2,976,000	
	선택2	안방+침실1+침실2	3대	4,780,000	478,000	478,000	3,824,000	
	선택3	거실+안방+침실1+침실2	4대	6,460,000	646,000	646,000	5,168,000	
84C	선택1	거실+안방	2대	4,100,000	410,000	410,000	3,280,000	
	선택2	안방+침실1+침실2+알파룸	4대	6,210,000	621,000	621,000	4,968,000	
	선택3	거실+안방+침실1+침실2+알파룸	5대	7,660,000	766,000	766,000	6,128,000	

※ 모델명

타입	제조사	거실	안방	침실1	침실2	알파룸	실외기
59	LG전자	R-W0600C2WP	R-W0200C2WP	R-W0200C2WP	R-W0160K2WP	R-W0120K2WP	선택1 RPUQ0303S2R 선택2 RPUQ0403S2R 선택3 RPUQ0253S2R
84A		R-W0720C2WP	R-W0320C2WP	R-W0160K2WP	R-W0160K2WP		선택1 RPUQ0403S2R 선택2 RPUQ0504S2R 선택3 RPUQ0303S2R
84B/B1		R-W0720C2WP	R-W0320C2WP	R-W0200C2WP	R-W0200C2WP	R-W0120K2WP	선택1 RPUQ0403S2R 선택2 RPUQ0504S2R 선택3 RPUQ0253S2R
84C		R-W0720C2WP	R-W0320C2WP	R-W0200C2WP	R-W0200C2WP		선택1 RPUQ0403S2R 선택2 RPUQ0504S2R 선택3 RPUQ0303S2R

- 시스템에어컨에는 공기청정기능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시스템에어컨 계약은 제안된 사항 외에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으며, 시스템에어컨 옵션 금액은 별도의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시스템에어컨 설치 시 설치되는 실외기에 스탠드형 및 벽걸이형 에어컨을 추가로 연결하여 가동할 수 없습니다.

- 시스템에어컨 설치 시 에어컨 배관으로 인한 환기 디퓨저 위치, 스프링클러 위치, 천장 배관 위치, 우물천장의 크기 및 깊이, 에어컨 설치부위의 천장 높이 등이 이동(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시스템에어컨 설치 시 설치에 따라 일부 배선기구 및 조명기구의 사양, 수량, 종류,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시스템에어컨은 냉방전용제품으로 난방운전이 불가하며, 운전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시스템에어컨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질·품귀 또는 생산·공급의 중단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질 및 동급의 타사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기 선정된 제품의 형태·설치위치 등의 세부사항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시스템에어컨은 설치에 따라 각 세대 내 실외기실에는 에어컨 실외기가 설치되며, 이로 인해 실외기실 공간이 협소해 질 수 있고 운전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시스템에어컨 설치 시 설치 위치는 계약체결시 배포되는 안내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시스템에어컨 설치 시 별도의 무선 리모컨을 제공합니다.
- 시스템에어컨 위치는 등기구 위치를 고려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시스템에어컨 실외기는 설치한 실내기 소요 용량에 맞는 제품이 설치됩니다.
- 세대 내 제공되는 시스템에어컨 컨트롤러는 무선 리모콘으로 제공되며, 유선 컨트롤러는 설치되지 않습니다.
- 타입별 형태에 따라 실외기실, 전면 발코니 등에 시스템에어컨 배관이 노출로 시공 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구조, 운전 조건 또는 실내 환경 등에 따라 냉방 사각지역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 시스템에어컨 설치 시 기 선정된 시스템에어컨 제조사 및 모델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2. 확장형 가구 등 추가 선택 품목(주방가구, 일반가구, 시스템가구 등)

(단위 : 원, VAT포함)

위치	품목	적용사항	주택형	공급금액	계약금(10%)	중도금(10%)	잔금(80%)	비고
					계약시	2024.07.11.	입주지정일	
공통	조명특화 패키지	라인등(주방, 거실)+간접조명패키지 (욕실장, 신발장, 주방상부장 하부)	59	1,370,000	137,000	137,000	1,096,000	
			84A	1,540,000	154,000	154,000	1,232,000	
			84B, 84B1	1,700,000	170,000	170,000	1,360,000	
			84C	1,540,000	154,000	154,000	1,232,000	
현관	3연동 자동중문	3연동 중문(자동형)	59	3,230,000	323,000	323,000	2,584,000	
			84A	3,290,000	329,000	329,000	2,632,000	
			84B, 84B1	3,260,000	326,000	326,000	2,608,000	
			84C	3,290,000	329,000	329,000	2,632,000	
거실	거실 아트월	대형 수입 타일(600×1200)	59	700,000	70,000	70,000	560,000	
			84A	650,000	65,000	65,000	520,000	
			84B, 84B1	520,000	52,000	52,000	416,000	
			84C	650,000	65,000	65,000	520,000	
거실+복도	세대공용부 마감특화	시트판넬+픽처레일	59	1,350,000	135,000	135,000	1,080,000	
			84A	1,400,000	140,000	140,000	1,120,000	
			84B, 84B1	1,610,000	161,000	161,000	1,288,000	
			84C	1,420,000	142,000	142,000	1,136,000	
세대 전실	바닥재	원목마루	59	3,600,000	360,000	360,000	2,880,000	
			84A	4,670,000	467,000	467,000	3,736,000	
			84B, 84B1	4,720,000	472,000	472,000	3,776,000	
			84C	4,630,000	463,000	463,000	3,704,000	
주방	주방 장식장	고급장식장	59	2,230,000	223,000	223,000	1,784,000	
	주방상판+벽	세라믹타일(상판+벽)	59	1,790,000	179,000	179,000	1,432,000	
			84A	2,340,000	234,000	234,000	1,872,000	
			84B, 84B1	2,200,000	220,000	220,000	1,760,000	
			84C	2,320,000	232,000	232,000	1,856,000	
주방상판 패키지	세라믹타일(상판/벽)+아일랜드	84B, 84B1	3,430,000	343,000	343,000	2,744,000		
안방드레스룸 (알파룸)	안방드레스룸 특화	안방 드레스룸 시스템선반 84A, 84C : 안방드레스룸(알파룸) 84B, 84B1 : 안방드레스룸	84A	710,000	71,000	71,000	568,000	
			84B, 84B1	380,000	38,000	38,000	304,000	
			84C	710,000	71,000	71,000	568,000	
침실1, 침실2	드레스룸 특화	시스템선반 59 : 침실2 84A, 84B, 84B1, 84C : 침실1	59	1,830,000	183,000	183,000	1,464,000	
			84A	1,910,000	191,000	191,000	1,528,000	
			84B	2,290,000	229,000	229,000	1,832,000	

불박이장	59 : 침실1 84A, 84B, 84B1, 84C : 침실2	불박이장	84B1	1,830,000	183,000	183,000	1,464,000	
			84C	1,890,000	189,000	189,000	1,512,000	
			59	970,000	97,000	97,000	776,000	
			84A	1,090,000	109,000	109,000	872,000	
			84B, 84B1	1,090,000	109,000	109,000	872,000	
			84C	1,090,000	109,000	109,000	872,000	

3. 가전 추가 선택 품목

(단위 : 원, VAT포함)

위치	품목	주택형	공급금액	계약금(10%)	중도금(10%)	잔금(80%)	비고
				계약시	2024.07.11.	입주지정일	
주방	냉장고 패키지 59 : 냉장고 + 냉동고 + 김치냉장고 84 : 냉장고 + 냉동고 + 김치냉장고 + 빌트인 냉장고장	59	5,440,000	544,000	544,000	4,352,000	
		84A	6,070,000	607,000	607,000	4,856,000	
		84B, 84B1	6,020,000	602,000	602,000	4,816,000	
		84C	6,070,000	607,000	607,000	4,856,000	
	식기세척기	84A, 84B, 84B1, 84C	1,110,000	111,000	111,000	888,000	
	3구 하이브리드 쿡탑	전 타입	570,000	57,000	57,000	456,000	
욕실	부부욕실 비데	전 타입	200,000	20,000	20,000	160,000	

※ 냉장고 패키지 선택 시 주방 냉장고장은 빌트인장으로 변경 시공되니, 계약 전 견본주택 확인 후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4. 납부계좌

구분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추가 설치 품목	BNK 부산은행	101-2087-2674-04	㈜반도건설

- 입금 시 반드시 동호수 및 계약자명을 기재(예:101동 501호 홍길동의 경우, 서명란에 "1010501홍길동"이라고 정확히 기재)하여야 합니다.
- 상기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추가 설치 품목 대금은 인정하지 않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계좌는 추가 설치 품목 대금 납부계좌로써 아파트 분양대금, 발코니 대금 계좌와 상이하므로 입금 시 유의 바랍니다.
- 견본주택에서 계약금(현금 또는 수표) 수납 및 신용카드 결제가 불가합니다.
- 타인 명의 등 계약금 납부 주체가 당청자와 상이하거나 불분명하게 입금된 경우에는 계약금 미납 및 계약 미체결로 처리될 수 있으며, 그로 인한 제반 문제에 대하여 사업주체에서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지정된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은 지정된 납부일에 입금하시기 바라며, 회사에서는 납부기일 및 납부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납부예정일이 변동(연기 등) 될 경우 사업주체는 계약자에게 문자, 우편물 등으로 통보 시 고지 된 것으로 합니다.
- 과오납으로 인한 환불처리기간이 소요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이자는 없습니다.

5. 유의사항

- 추가 선택 품목(유상옵션) 계약은 분양계약이 아니며,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 대상이 아닙니다.
- 추가 선택 품목은 아파트 공급계약과 별도로, 계약일정은 아파트 공급계약 일정 또는 일정기간 정하여 체결할 예정입니다.
-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시행지침」 제4조에 의거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품목입니다.
- 본 공고 외 추가 선택 품목에 관한 내용은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및 시행지침」에 따릅니다.
- 상기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이상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신청형별 설치 위치 등 세부 사항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추가 선택 품목 금액에는 취득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입주 후 관할 관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계약일 이후 추가 선택 품목을 계약하고자 할 경우, 일정기간을 정하여(중도금대출자서기간 등) 추가 설치 품목 계약이 가능하며 이후에는 시공상의 사유로 불가합니다.(아파트 공급계약 시 계약한 추가설치품목의 취소는 불가)
- 추가 선택 품목의 설치 위치는 계약자가 임의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 추가 선택 품목의 계약조건(납부금액 또는 납부일정, 계약체결 일정 등)은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추가 선택 품목은 아파트 공급계약과는 별도 계약사항이며, 아파트 공급계약이 해제 또는 취소되는 경우에는 자동으로 해제 또는 취소됩니다.
- 추가 선택 품목에 따라 일부 배선기구 및 조명기구의 사양, 수량, 중,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질, 품귀 시 동급이상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기 선정된 제품의 형태, 설치, 위치 등의 세부사항은 카달로그 및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추가 선택 품목의 경우 사업주체가 선정한 제조사 및 모델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인허가도면, 홍보물 등의 가구 및 가구표현 등이 견본주택과 상이할 경우 견본주택 및 계약 시 선택한 사항이 우선하므로 반드시 계약 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 미건립세대인 59, 84A, 84B1, 84C타입은 평면형태 및 공간크기에 따라 마감 및 가구 구성, 가구 길이, 가구의 입면 및 도어 개폐방향, 가구/마감재 색상의 조합, 거실 우물천장 및 커튼박스의 크기 등이 상이하며, 분양자료(VR, 이형모형, 분양 카달로그 등)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의 연출용(전시품목 등) 및 공간 확보(주방, 가전제품 사용 공간 등) 부분 등에 대해 계약자는 사전에 견본주택을 충분히 확인한 다음 분양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추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견본주택 단위세대 내부에 설치된 인테리어 소품가구(커튼, 침대, 소파, 책상, 식탁, 전시조명, 거실장 등), 디스플레이 가전제품(냉장고류, 세탁기류, TV), 기타 전시용품 등은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한 연출용으로 입주 시 제공되지 않으며(분양가 미포함), 분양가에 포함된 품목은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자가 사용 또는 희망하는 가전제품(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등 일체)의 용량 및 규격에 따라 세대내 설치가 불가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고, 계약 및 입주 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VR동영상은 견본주택을 촬영한 것으로 마감재 이외에 추가 선택 품목과 디스플레이를 위한 전시용품이 포함된 VR동영상이므로 제공품목은 청약 및 계약 전에 반드시 견본주택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현장의 외부 마감은 입면 CG와 설계도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신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 선시공 후분양 아파트의 특성상 공정상의 사유로 선 시공된 발코니 확장은 계약기간 동안 계약하여야 하며 계약 이후 취소는 불가합니다.
- 추가 선택품목에 따라 일부 가구 후면 및 바닥 마감이 시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타입별로 개방형 발코니 유무 및 실 크기에 따라 드레스룸 특화 및 시스템선반 구성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IX 단지역건 및 유의사항

※ 다음의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어 착오 없으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안내사항 및 유의사항

■ 공통 안내사항

구분	내용
공통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 사업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거정비과-16543, 2023.12.05.일에 사업시행계획(경미한)변경을 득한 사업으로 일부 규정은 최초 사업시행계획인가 당시의 규정이 적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 공사 중 천재지변, 전염병 발생, 정부의 정책이나 관계법령의 변경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 시기 등이 지연 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지원보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주택건설지역 인근 기반시설(도로, 녹지, 공원, 학교, 상/하수, 전기/난방, 저류시설 등) 및 각종 개발계획은 사업주체나 시공사가 아닌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지역개발공사(또는 LH공사) 등이 설치하거나 추진하는 사항으로 사업추진 중 변경·취소·지연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입주지연과 생활불편 및 시세 하락 등의 제반 문제점에 대해서 사업주체나 시공사는 책임이 없으므로 현재 진행사항에 대하여는 사전에 충분히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공급가격은 각 세대의 주택형별, 층별, 향별 등의 다양한 조건들을 고려하여 책정한 금액으로 주택형별 공급금액의 상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준공시 경계(분할)측량 후 대지면적이 변경될 수 있고 이에 따라 계약면적상의 대지면적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공급금액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이로 인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동일한 타입이라 하더라도 층/구간별 서비스면적 및 발코니 확장면적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인지하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실시계획인가 과정 또는 준공 후 확정측량 등으로 인해 대지 면적의 증감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인지하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보존등기 및 소유권 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지적공부정리 절차 등으로 지연될 수 있습니다. - 공급면적과 대지면적은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절차로 인한 차이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공급금액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일부 탐상형 지붕층 및 옥탑층, 상가 지붕층에 조경공간(식재), 의장용 구조물, 향공장애등, 야간경관용 조명, 공청 및 위성안테나, 피뢰설비, 살외기, 태양광 발전설비 등의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소음, 진동 등의 환경권과 조망 및 빛의 산란에 의한 사생활의 침해받을 수 있습니다. - 단지 내에는 자전거 보관소, 생활폐기물보관시설, 기계·전기실 급·배기구, DRY AREA(채광, 환기, 방습 따위를 위하여 지하에서 지상으로 난 통풍구) 등이 설치될 예정으로 계약 시 위치를 확인해야하며 설치 결과에 따라 일부 저층세대는 조망권 및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단, 위치는 시공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사전에 사업부지 내·외 현장을 필히 방문하시어 주변현황 및 현장여건, 주변개발, 조망권, 각종 공사로 인한 소음발생 여부 등을 확인한 후 청약신청 및 계약체결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계약세대가 속한 층 및 향에 따라 일조권 및 조망권 등이 다를 수 있으며, 마감자재 내용은 형별, 타입별 등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동 조합으로 인한 요철 및 입면디자인으로 인한 장식으로 일조권 및 조망권 등이 일부 침해될 수 있습니다. - 마감재의 사양은 타입에 따라 차이가 있으니, 견본주택에서 분양상담을 통해 정확하게 인지하신 후 분양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9조에 의거 공동주택 실내 공기질 측정결과를 주민 입주 7일전부터 60일간 입주민의 확인이 용이한 곳에 공고할 예정입니다. - 입주 후 불법 구조 변경 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실입주자를 위하여 건립되는 것이므로 투기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신청서의 내용 변조 등의 행위로 주택공급 질서를 어지럽힐 시에는 법에 따라 처벌됩니다. - 입주 예정 시기는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 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합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첨자가 계약 체결 시 견본주택, 평면도, 배치도 등 현황관계를 확인하고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추후 이를 확인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문제는 계약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습니다. - 단지 외부의 녹지, 근린공원, 학교 등 공공시설물 설립 및 완공계획 등은 자치단체 일정에 의하며 이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와는 무관합니다. - 부대 복리시설은 관리사무소, 운동시설(휘트니스센터, GX룸, 골프연습장),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세대창고 등이 있습니다. 사용상의 편리성과 디자인의 개선 및 현장 여건에 따라 용도 변경 및 통합, 실내구획, 위치 및 외관과 크기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의 특성상 층간, 세대간, 용도별 소음파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입주 후 주차 공간을 이용함에 모든 이용자가 상호간에 불편을 야기하거나 방해하여서는 아니되며, 주차 문제에 관한 다툼이 발생되어지는 경우에는 반드시 관리사무소의 지도·감독에 따라야 합니다. - 단지 내 전기실, 발전기실, 방재실, MDF실, 지하주차장, 각종 통신/설비/전기 배관 및 시설 등 공동주택(아파트)와 판매시설이 공유되는 공간, 장비 및 시설이 있으므로 계약 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체결을 위해 수집한 개인정보는 사업주체, 시공사, 금융기관 등에서 계약관리 및 추후 주요일정 통보 등의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 공개 후 타 공동주택의 마감사양, 가전제품, 공용시설, 조경시설 등을 본 아파트와 비교하여 견본주택 및 사업시행인가도서에 적용된 사항 이외에 추가적인 마감사양, 가전제품, 공용시설, 조경시설 등의 변경을 요구할 수 없으므로 주변지역 공동주택과 충분히 비교하신 후 청약 및 계약을 하기 바랍니다. - 본인 동호수 배정 시 동일 주택형이나 견본주택과 달리 평면이 좌우대칭이 될 수 있으니 청약 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 기부채납 도로 등 기반시설은 실시계획인가 등 인허가청과의 협의에 따라 계획안이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습니다. - 건축 구조물 외부에 BI 및 경관 조명이 설치되며, 계약 전 이점 양지하시고 계약하기 바랍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관련으로 개인정보 요구 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제공을 할 수 있습니다. - 외국인인 국내 토지를 취득할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국내 거주 외국인인 주거목적의 국내 주택 구입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 토지취득신고를 해야 합니다. ② 국내 미거주 외국인인 국내 부동산 취득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토지취득신고, 「외국환거래법」 상 부동산 취득신고를 해야 합니다. ③ 영리목적 법인의 국내 설립 후 토지 취득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신고,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을 마치고 토지취득신고를 한 후 국내 토지를 취득하여야 합니다. -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에 의거합니다.
--	------------------------------------------------------------------------------------------------------------------------------------------------------------------------------------------------------------------------------------------------------------------------------------------------------------------------------------------------------------------------------------------------------------------------------------------------------------------------------------------------------------------------------------------------------------------------------------------------------------------------------------------------------------------------------------------------------------------------------------------------------------------------------------------------------------------------------------------------------------------------------------------------------------------------------------------------------------------------------------------------------------------------------------------------------------------------------------------------------------------------------------------------------------------------------------------------------------------------------------------------------------------------------------------------------------------------------------------------------------------------------------------------------------------------------------------------------------------------------------------------------------------------------------------------------------------------------------------------------------------------------------------------------------------------------------------------------------------------------------------

■ 설계 유의사항

구분	내용
공통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 공고문에 미 기재된 내용 및 오기된 내용에 대하여는 「주택법」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 분양홍보물 등 인쇄물에 사용된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그림)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촬영 또는 제작한 것으로 실제와 다소 상이할 수 있으므로 경희공 유보라 홈페이지(https://www.경희공유보라.com) 및 현장을 방문하시어 직접 확인하시기 바라며, 계약 체결 시 견본주택에서 평면도, 배치도 등 현황 관계를 확인하고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추후 이를 확인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문제는 계약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습니다. - 입주자모집공고 이전 제작, 배포된 홍보물은 사전 홍보 시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 시공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경희공 유보라 홈페이지(https://www.경희공유보라.com)를 통해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또한 홍보과정에서 주변 환경, 개발계획, 교통여건 등의 계획 또는 예정사항은 추후 관련 정책 등의 변화로 변경될 수 있으나, 관련 사항별 관계기관에 반드시 본인 확인 후 청약 및 계약을 하여야 하며, 향후 미확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분양 관련 팸플릿, 인쇄물 등에 삽입된 조감도, 단지배치도, 이미지컷 등 각종 홍보물 및 견본주택에 설치된 모형(주변현황 및 기반시설은 이미지로 제작되었기 때문에 실제와 다를 수 있고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 이해를 돕기 위해 설치함)상의 외부 공간 식재, 시설물, 포장계획, 시설물의 위치, 규모 및 색채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측량결과, 각종 평가 심의결과 및 사업계획(변경)승인, 기반시설 실시계획인가, 비관리청 공사시행허가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설계, 시공관련 적용기준의 우선순위는 견본주택, 준공도서, 도급계약서, 사업시행계획인가 도서, 공사 시방서(착공신고) 순으로 정합니다. - 입주자모집공고문 등의 내용을 정확히 숙지한 후 계약을 하여야 하며, 입주자모집공고문 등의 내용을 정확히 숙지하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에게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아파트 홍보물의 조감도 및 배치도 상의 주변 토지 및 건물 현황은 간략하게 표현된 것이므로, 청약 및 계약 전에 현장 답사 및 사전 확인을 반드시 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의 도면은 견본주택에 비치되어 있으며, 단위세대 마감자재 내용은 주택형별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견본주택 및 홈페이지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의 입주 후 불법 구조 변경 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층간 차음재의 성능은 시험실 인정성능 기준으로 현장 측정 시 시험실 성능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세대 당 주거전용면적, 주거공용면적, 계약면적 및 대지지분은 법령에 따라 공부절차 즉 준공 시 확정측량으로 인한 대지면적 증감이 있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며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는 공급금액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이 경우 상호 정산 또는 부대복리시설 면적 조정 등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 평면도 및 이미지 컷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임의로 가구 등을 시뮬레이션한 것으로 계약 시 포함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기본품목, 공간 분할 등에 대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조감도, 세대 평면도, 면적, 치수 등 각종 내용이 분야별 도서 또는 홍보물 상호간 오류로 인하여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사전 확인하시기 바라며, 공사용 도서의 구체화(세부도서작업) 과정에서 인·허가 도서의 불합리한 설계나 표현의 오류 오기 수정 및 성능개선과 품질제고를 위하여 본 공사 진행 중에 이루어지는 각종설계의 경미한 변경에 대하여 사업주체의 결정에 따르며 제반권리를 사업주체에게 위탁하는 데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하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습니다. - 분양시 홍보물, 모형, 이미지 등에 제시된 마감재 및 제품집기는 실제 시공 시 재질, 색상, 디자인, 수량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의 현장 여건 및 구조 성능 상품개선 등을 위하여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으며 관련법규에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사업주체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아파트 배치구조 및 동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등의 환경권이 불리한 곳이 있을 수 있으니 확인하고 청약하여야 합니다. - 청약 및 계약 관련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청약신청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취소나 정정이 불가합니다. - 청약 및 계약 전에 사업부지 내·외 현장을 반드시 방문하시어 주변현황 및 현장여건, 주변개발, 각종 공사로 인한 소음발생 여부 등을 확인하신 후 청약신청 및 계약 체결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습니다. - 경희공 유보라 홈페이지(https://www.경희공유보라.com)에 기재된 마감재 수준 이상으로 변경요구는 불가하므로 마감재 수준을 자세히 확인하신 후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분양 관련 팸플릿 인쇄물에 삽입된 조감도 단지배치도 이미지컷 등 각종 홍보물 및 견본주택에 설치된 단지모형은 분양시점 시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본 공사 시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시공사의 디자인가이드 지침에 따라 입면 디자인 및 마감 등이 동등 수준이상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약신청 및 계약 장소에서 발생하는 각종 상행위 인테리어 시공 업체, 부동산 중개업자 등의 영업행위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와 무관한 사항입니다. - 당해 사업에 사용된 시공사의 브랜드 등은 향후 회사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주택의 공사 중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의 귀책사유가 아닌 천재지변, 문화재 및 암반 발굴 노동조합의 파업 및 전염병 발생, 정부의 정책이나 관계법령의 변경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예정 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지연에 따른 지체상금이 발생하지 않으며, 입주지연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공사 시 추가 지질조사 및 현장여건 등에 따라 가시설 및 구조방식, 기초의 형식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사업주체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 외부에 사용되는 각종 자재의 경우 수급불가 및 단종, 외부환경 및 현장여건 등의 사유로 인하여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제품으로 변경 시공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입주자에게 별도의 동의절차를 받지 않습니다. - 추후 인·허가변경 시 현장 여건 및 관련 기관과의 협의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으며 입주자의 개인취향이나 민원에 의한 변경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충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 이후 계약자의 요구에 의한 설계변경은 불가합니다. - 준공 전·후, 개인 또는 임의 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내용(세대 내·외 공용부분 시설물 등)을 요구할 수 없으며, 만약 준공 전·후 최종 건축허가도면 이외의 사항을 요구할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 조감도, 세대 평면도, 면적, 치수 등 각종 내용이나 설계관련 문서의 내용 중 불합리한 설계나 표현의 오류, 오기 및 성능개선과 품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본 공사 진행 중에 이루어지는 각종 설계의 경미한 변경에 대하여 사업주체의 결정에 따르며, 제반권리를 사업주체에게 위탁하는데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실 대지 측량 결과, 관련법규의 변경, 인·허가의 변경, 건축허가인변경 및 신고, 대지지분 정리 등에 따라 본 계약 물건의 견본주택, 단지배치, 단지내도로 선형, 조경(수목, 수경, 시설물, 포장 등), 동·호수별 위치, 각종 인쇄물과 모형도 상의 구축선, 단지 내 시설물의 위치, 설계도면 등의 표시, 대지지분 및 분양면적 등이 계약체결일 이후 입주 시까지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사용공간 신청 전 「주택법」제42조제1항,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의거 「공동주택의 소음측정기준」에 따라 소음측정 시행, 법정 기준소음 이상 측정 시 해당 부위에 사업주체(시행사)가 소음저감 시설(방음벽 등) 등을 추가로 설치 할 수 있으며, 방음벽 설치로 인한 민원 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 토목 옹벽 및 건축 옹벽 디자인과 마감재, 녹화계획 등은, 실제 시공시 기능 및 성능개선, 주변 실제 현황, 인허가 관계기관 협의 결과에 따라 계약자의 동의 없이 향후 다소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단지내 옥외 계단 및 엘리베이터, 계단실, 외부 통로 등과 인접한 세대는 소음피해 및 사생활권, 조망권 등의 간섭이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위치 등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하여 추후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에 기간통신사업자의 이동통신 중계기 및 옥외안테나가 설치 될 예정이며, 본 공사 시 우수한 통신품질이 제공될 수 있는 위치로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습니다. 추후 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할 수 없으므로 청약 전 반드시 확인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 판매시설 및 오피스텔 지붕(2, 4층 옥상구간)에는 실외기, 탈취기, 제연팬 등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인접세대는 냄새, 소음 및 진동, 시야 간섭 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지하5층에 공동주택, 오피스텔, 판매시설의 전기실, 발전기실, 펌프실, 저수조, 정화조 등이 설치되며 이로 인한 소음, 악취, 매연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p style="text-align: center;">주변여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 아파트의 주변도로 및 단지 외부시설, 아파트 배치, 동·호수별 위치 등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진동 등으로 환경권 및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외부의 차선 및 교차로, 횡단보도, 자전거도로, 보도 등은 인허가 결과에 따라 결정된 것으로서 임의의 재조정할 수 없습니다. - 주변단지의 신축, 단지 내 공용시설물 및 도로선형의 변경, 단지 내 설치되는 석축 등의 종류/높이/이격거리 등의 변경 등과 단지 배치상 세대 상호간의 향이나 층에 따라 일조권/조망권/환경권/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으며, 공공장소인 휴게공간과 필로티, 부대복리시설, 주민운동시설, D/A, TOP LIGHT, 상가, 관리동 등의 설치로 일조권/조망권/환경권/소음피해/사생활권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으니, 필히 시설의 위치 및 규모를 확인하셔야 하며, 추후 설치 위치 및 시설면적 변경요구 등 근본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단지 주변 도시계획도로는 최종 측량결과에 따라 도로 폭, 선형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주변 아파트 및 건축물의 신축과 주변 시설물의 변경 등으로 단지 내 아파트 동별, 향별, 층별 위치에 따라 소음, 일조, 조망 등의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단지에 인접하여 공동주택 건립이 계획되어 있으므로 추후 일부세대에서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사생활권 등에 간섭 및 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당사와는 무관한 사업이므로 일체의 민원 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 지하1층에 해당하는 북동측 판매시설 앞은 공개공지로 계획되었으며 공공보행통로로 이용됩니다. 이로인한 일체의 민원 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남측으로 12M도로, 단지 서측으로 15M도로, 단지 북측으로 32M 도로 및 현저고가차도로, 공공공지와 동측으로 영천시장 있으므로 이로인해 인접세대에 소음, 분진, 빛공해 등이 발생할 수 있으니 계약 전 주변여건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일체의 민원 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단지의 계약체결일 이후 인접부지에 개발계획으로 인해 소음, 진동, 분진, 조망, 일조 등의 문제 및 간섭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는 당 사업과는 무관한 내용이므로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계약 전 사업부지 현황을 방문하시어 주변 혐오시설 유무, 송전탑, 소음, 진동, 분진, 조망, 일조, 진입로, 캠핑장, 다목적체육시설, 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텃밭, 판매시설 등 주위 환경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현장여건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일체의 민원 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주변 도로로 인한 소음, 진동 및 분진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약 전 반드시 주변도로의 상황을 확인하시고 해당사항 미확인 및 위 사항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 후 위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제반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일체의 민원 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각 동 지하 통신실 및 헬룸에 중계장치가 설치될 예정임에 따라 차후 소음 및 진동 또는 전파의 교란 등이 발생할 수 있음.(전파상태,인허가,이동통신사 협의 결과에 따라 설치 위치 변경 또는 설치개소가 증감될 수 있음.) - 저층 세대는 판매시설의 옥상녹화로 인하여 소음, 일조, 조망 등의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판매시설 및 오피스텔 지붕(2, 4층 옥상구간)에는 실외기, 탈취기, 제연팬 등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인접세대는 냄새, 소음 및 진동, 시야 간섭 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101동 북측 판매시설 옥상층에 실외기실이 계획되어 있으며, 이로 인해 생활권, 조망권 간섭 및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p style="text-align: center;">배치 및 동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지 내 시설물 명칭, 등은 향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단지는 아파트, 오피스텔, 판매시설로 구성된 주상복합 아파트로서 협소한 부지 특성으로 보행자와 차량이 같은 공간에서 진출입이 발생하여 이용에 불편이 있을 수 있으니, 해당사항을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단지의 계약체결일 이후 현장 여건에 따라 단지 내 공용 시설물 및 도로선형의 변경, 단지 내 설치되는 옹벽·석축 등의 종류·높이·이격 거리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추후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 주차입구, 경비실 위치, 주차장은 교통 통제의 필요성, 효율성, 측량결과 등에 의거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설계변경 필요시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실제 시공 시 대지면적, 연면적, 용적률, 주차대수 및 조경면적, 자연지반면적, 인공지반 녹지면적 등은 축소 또는 증가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사업주체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세부계획에 따른 단지 내 도로선형, 산책로 등의 동선계획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여건상 단지 내,외부에 단차가 발생하며, 단지 내부를 연결하기 위해 계단 및 엘리베이터가 시공되며, 현장여건에 따라 형상 및 위치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지상1층 외부에 쓰레기집적소, 지하2층 지하주차장 내부에 폐기물보관창고가 설치되며, 이로인해 소음, 악취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해당위치를 필히 확인하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내 주차는 지하주차장으로 조성되고, 지하 5개층(지하1층 판매시설)이 조성이 되므로 사전에 인지하시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지하주차장(총 337대)은 공동주택 주차장(241대), 오피스텔 주차장(72대), 판매시설 주차장(24대)이 나뉘어 사용되며, 추후 주차차단이 추가설치로 인한 주차대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시설물의 위치, 규모, 외관 및 색채, 단지명칭, 동 표시 등은 측량결과 및 각종 평가 심의/협의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공동주택의 명칭은 향후 관할지자체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정하여 질 수 있으며, 분양 시 입주민의 이해를 돕기 위한 동·호수의 표기 또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명칭 및 동 번호는 관계기관의 심의 결과에 따라 입주 시 본 광고의 명칭과 상이할 수 있으며, 추후 변경 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당해 사업에 사용된 사업주체의 브랜드 등은 향후 회사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해당 관청의 인허가조건[사업계획(변경)승인, 교통영향평가, 건축심의, 구조안전심의, 에너지사용계획 협의결과 조건, 관계 기관 심의결과, 기반시설 실시계획인가, 비관리청공사시행허가 등 포함]에 따라 단지 내·외의 도로(인도, 차도, 자전거도로 및 비상차량동선 등), 단지 내 조경수 식재계획과 조경시설, 부대복리시설 등의 선형, 위치, 크기, 모양, 마감재료 및 대지경계선형과 같은 사항은 변경 시공될 수 있습니다.
- 주변 도로의 경사도 및 대지의 레벨차이에 의해 도로와 본 건물의 레벨 차이가 있으며, 단지 내 도로의 경사도는 시공 중 주변도로의 경사도 및 레벨에 순응하기 위하여 일부 조정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사업주체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측량 결과에 따라 일부 주동의 위치가 경미하게 변경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지하층 층고, 일부 지하주차장 레벨, 램프 위치 등이 다소 변경 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사업주체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경계부는 도로와의 높이 차이가 있으며, 단지 외부와의 단차로 인하여 토목 또는 건축옹벽, 난간, 사면처리 등의 방법으로 시공되고, 주변 및 외부 여건 등에 따라 축조 규모와 형태 등의 변경이 필요할 경우, 입주자 개별 동의를 별도로 받지 아니하고 설계변경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판매시설 내·외·옥상부 공간계획은 확정되지 않았으며, 분양홍보물(모형, CG 등)상에 설명된 것과는 상이하게 시공될 수 있고 공동주택 계약자와 무관하게 설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쓰레기분리수거장이 본 아파트 지상1층 외부 및 지하2층 주차장 내부에 설치되며, 해당 폐기물 및 쓰레기의 수거 또한 아파트 지상층 외부 및 지하층 내부를 통하여 수거 됩니다. 계약자는 해당 사항을 필히 확인하고 계약하시기 바라며, 이로 인한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주차장 출입구 및 소방용 비상차로에 인접한 세대는 차량소음, 경보음, 야간 차량불빛, 공회전에 의한 매연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의 주변도로 및 단지 외부시설, 아파트의 배치구조, 동호수별 위치, 단지 내 조경공간(녹지 등)등으로 인해 이와 인접한 일부 세대는 소음 등 생활에 불편함이 있을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진동 등으로 환경권 및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비상차로 및 포장구간 중 일부는 화재 등의 응급상황 발생 시 비상차량(소방차)의 정차위치로 표기/활용될 수 있습니다.
- 다음의 경우에는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사생활권이 간섭받거나, 소음피해 등 불편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단지의 배치 특성상 동별, 향별, 층별 차이, 공간 거리, 세대 별 층호 위치 등의 상이에 따른 불편.
- * 본 계약물건의 계약 체결 이후 주변단지의 신축, 단지 내 공용 시설물 및 도로선형의 변경 등과 배치 상 세대 상호 간의 향이나 층에 따른 불편
- * 공공장소인 휴게공간과 필로티, 부대시설, D/A(환기구), 관리사무소, 주민공동시설, 쓰레기 분리수거장, 자전거보관대, 산책로, 판매시설, 경비실 등의 설치 및 통행에 따른 불편.
- * 단지 내 주출입구, 주차출입구, 부대시설, 경비실 등 단지 내외 시설물 등의 설치로 인한 불편.
- 대지경계선에 인접한 주동의 전면 또는 측면에는 단지와 레벨차이가 있어 이를 극복하기 위한 옹벽이나 석축, 주변 녹지내 보도 및 도로 등으로 인한 조망 침해, 사생활 침해가 생길 수 있으며 인·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시 여건에 따라 옹벽 및 석축 등의 위치, 높이, 재질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동 및 부대복리시설(주민공동시설) 주변에는 쓰레기 분리수거장, 자전거보관소, D/A(환기구) 등이 설치되며, 저층 세대 발코니 전·후면 하부에 환풍, D/A(환기구), 가스배관 등의 설치로 구조물, 그릴창, 그레이트팅, 난간, 가스배관커버 등의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환경권 및 생활권, 조망권이 일부 제한되거나, 사생활 간섭을 받을 수 있고, 상세 위치는 설계도 및 분양자료 등의 시설물 안내도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각종 환기구(D/A 등)는 환기장치 작동 시 기류 및 장비소음 및 배기가스가 발생할 수 있으니 계약 시 시설물 배치계획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지상에 설치되는 주차장 환기용 그릴은 본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모형 및 홍보물 등에 표현된 장애인 정형 블록은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입주민의 주차장(지하3층~지하5층)은 오피스텔(지하3층~지하2층), 판매시설(지하2층) 주차장의 하부층에 계획되어 있어 차량 진출입 시 판매시설 주차장을 경유함에 따라 교통의 혼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지상1층 주차 차단기가 1개소 설치될 예정이며, 향후 주차구획이 판매시설(지하2층), 오피스텔(지하2층~지하3층), 아파트(지하3층~지하5층)로 구분됨에 따라 각 구획사이에 주차 차단기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주차 차단기 위치는 법적 기준에 따라 이동될 수 있습니다.

주동

- 각동의 필로티 출입구는 구조에 따라 천장고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동 지하층 및 지상층과 주변에 환풍 또는 제연환풍이 계획되어 있으며, 일부 저층세대에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각 동 출입구의 위치 및 형태와 주출입구 문주 형태, 경비실의 위치 및 형태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주동의 위치 및 동, 층, 호수에 따라 코어 및 주출입구 부분의 평면, 단면, 창호형태 등의 계획은 서로 상이할 수 있고, 이용에 불편이 있을 수 있으니, 계약 전 필히 확인하시기 바라며, 계약 이후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 레벨차이로 인해 단지 및 주동으로 진입하는 보행로는 단차(계단) 또는 경사로가 형성될 수 있으며 그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 동 필로티 설치에 따라 필로티 옆, 상부층 세대는 외부 통행에 의해 소음 발생 및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으며, 필로티 위층의 난방 효율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 각 동에 설치된 엘리베이터는 동별 형태 및 층수에 따라 대수, 속도 및 사양이 다를 수 있으며, 엘리베이터 기계실 및 승강로에 인접한 세대는 소음 및 진동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각 동에 설치된 계단 및 엘리베이터는 아파트와 오피스텔이 공동으로 사용함으로써 인한 불편함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각 세대의 배치 및 조합에 따라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는 세대수가 차이가 있습니다.
- 이삿짐 운반 시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여야하므로 청약 및 계약 전 반드시 확인 후 청약 및 계약을 하여야 합니다. (사다리차 이용불가)
- 옥탑, 지붕, 외벽 등에 의장용 구조물, 야간경관조명, 공칭 및 위성안테나, 피뢰, 축뢰, 항공장애가 발생 할 수 있으며, 이것들로 인한 소음, 진동, 빛의 산란으로 인한 불편함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p>- 건축물 측벽에 낙뢰예방(「건축법 시행령」 제87조,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20조)을 위한 측벽 피뢰침이 시공 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익을 제기 할 수 없습니다.</p> <p>- 임의의 구조물 추가, 구조변경, 마감변경 등은 입주후 입주자대표회의와 본 단지의 아파트 관리규약에 따라 상호 협의 후 진행하여야 하며 협의되지 않은 임의의 변경, 개량, 이용시 누수에 의한 하층의 피해 등의 유지관리책임과 비용부담 의무와 책임이 따릅니다.</p> <p>- 건본주택 미건립세대는 건본주택과 동등 수준의 마감재로 진행되며, 평면형태 및 공간크기에 따라 마감 및 가구 구성, 가구 및 상판의 길이와 폭, 가구의 입면 및 도어 개폐방향, 가구/마감재 색상의 조합, 거실 우물천장 및 커튼박스의 크기 등이 상이하며, 분양자료(VR, 이형모형, 분양 카달로그 등)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p> <p>- 건본주택 미건립세대인 59, 84A, 84B1, 84C타입은 건본주택의 84B 타입과 동등 수준의 마감재로 진행되며, 평면형태 및 공간크기에 따라 마감 및 가구 구성, 가구 및 상판의 길이와 폭, 가구의 입면 및 도어 개폐방향, 가구/마감재 색상의 조합, 거실 우물천장 및 커튼박스의 크기 등이 상이하며, 분양자료(VR, 이형모형, 분양 카달로그 등)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p> <p>- 주택형별 및 층별로 서비스(발코니) 및 확장 면적이 다르므로 반드시 확인하고 추후 이에 따른 이익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p> <p>- 계약세대가 속한 층 및 향에 따라 일조권 및 조망권, 사생활권, 소음 등이 다를 수 있으며 사생활 등의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p> <p>- 각 세대의 주출입구, 엘리베이터 홀, 계단실 등의 공간은 주거공용 부분으로서 전용화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p> <p>- 건축법 및 주택법을 준수하여 시공한 인접 동 및 인접세대에 의하여 조망권 및 향, 일조량이 감소될 수 있으며, 건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p> <p>- 본 단지의 각 동 저층세대는 기존단지의 인접에 의한 일조 및 조망, 환경권 및 사생활의 제약이 있을 수 있으므로 계약 시 충분히 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p> <p>- 본 단지의 각 동 일부 세대 전·후면 녹지 내 대형수목 식재로 인해 일부 조망권이 간섭받을 수 있으며, 수목의 높이는 모형 및 CG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p> <p>- 야외 조경용 조명 및 공용부위 조명 등에 의하여 일부 세대는 눈부심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익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p> <p>- 일부세대는 수분양자의 동의를 얻어 샘플하우스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p> <p>- Mock up 세대의 운영으로 인해 발생한 마감재의 파손, 훼손에 대해서는 준공 전 보수 또는 재시공 등 원상복구하여 인도할 예정으로 이에 대한 이익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p> <p>- 본 아파트는 공동주택 바닥 충격을 차단구조인정 및 관리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33)을 준수하며 층간소음 및 진동 등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익을 제기할 수 없으며, 엘리베이터, 기계실 운행에 의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p> <p>- 단위세대 실내 천정고는 거실기준 2.3m이며, 실외기, 다용도실 등 발코니 부분과 욕실은 상이합니다.</p> <p>- 당사가 안내하는 세대 내의 위치에 따라 계약자가 희망하는 용량(규격)의 가전제품(냉장고류, 세탁기류, 건조기류 등) 및 가구 등이 길이, 폭, 높이 등의 차이로 인하여 배치가 불가할 수 있으니 청약 전 반드시 확인 후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p> <p>- 세대 내 입주자가 설치하고자 하는 가전제품(냉장고류, 세탁기류, 건조기류 등)의 사이즈에 따라 일부 설치가 불가할 수 있습니다.</p> <p>- 대피공간은 화재발생 등 비상시 대피하는 공간으로 내부에 물건을 적재하지 않아야 하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은 입주자에게 있습니다.</p> <p>- 단위세대의 커튼박스의 길이와 깊이는 본공사 시 현장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p> <p>- 전기, 설비배관 덕트 내부에는 미장마감 시공이 되지 않습니다.</p> <p>- 마루(강마루, 원목마루) 및 벽타일 등은 실제 시공시 자재의 고유문양 및 색상에 따라 육안상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p> <p>- 옵션사항으로 벽타일이 시공될 경우, 안목치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p> <p>- 단위세대 내 목문을 및 시트마감 부위는 시공상 불가피하게 타가편 자국이 보일 수 있습니다.</p> <p>- 단위세대 내 일부 가구 후면 및 바닥은 마감이 시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p> <p>- 욕실 내 설치되는 수건걸이는 평형별 구조에 따라 길이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p> <p>- 주방에 설치되는 세라믹상판은 시공상 접합부에 이음매가 발생합니다.</p>
단위세대	<p>- 발코니 부분의 면적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 따라 산정되었으며 바닥면적에 포함되는 초과 발코니 면적은 「공동주택의 발코니설계 및 구조변경 업무처리지침(2006.1.23)」에 의거하여 주거전용면적으로 산정하였습니다.</p> <p>- 전후면 발코니 및 콘크리트 난간 높이는 동 위치 및 층수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에 실제 시공 시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p> <p>- 확장하지 않은 발코니는 준 외부공간으로서 난방시설이 설치되지 않으므로, 내·외부 온도차에 의하여 결로 및 결빙에 의한 마감 손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p> <p>- 발코니 외기에 면하는 벽체에는 결로방지를 위한 단열재 시공으로 도면상의 면적과 일부 상이할 수 있습니다.</p> <p>- 세탁실, 실외기실, 발코니 등에 결로 발생 예방을 위한 환기구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p> <p>- 세탁기와 실외기가 설치되는 공간 또는 발코니에 수전이 설치되는 곳은 겨울철 동파가 발생할 수 있으니 창문 닫기 및 보온 조치 등 입주자의 신중한 관리가 필요합니다.</p> <p>- 발코니 부위에 설치되는 각종 설비배관은 노출배관(천장, 벽)으로 인하여 미관을 저해할 수 있으며,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p> <p>- 실외기실 또는 주방발코니에 전열교환기와 실외기가 설치되며, 본 시공 시 배관이 노출되거나, 내·외부마감(창호와 그릴, 전등의 크기 및 위치) 및 건축입면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p> <p>- 주방 발코니(다용도실)의 형상에 따라 입주 후 보일러 점검을 위해서는 세탁기, 건조기 등의 이동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p> <p>- 주방 발코니(다용도실)에는 수납을 위한 시스템선반 및 가구가 제공되지 않습니다.</p> <p>- 각 세대 내 실외기실 또는 주방발코니에 전열교환기와 실외기가 설치되어 배관이 노출되며,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p> <p>- 발코니 천정높이로 인해 보일러 연도의 위치가 낮아 보일 수 있으니 사전 확인 바랍니다.</p> <p>- 우·배수 선홍통의 위치 및 개수는 현장 여건에 따라 본 공사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p> <p>- 바닥배수구, 우·배수배관 입상, 수전공구류, 약세사리류, 워셔드기, 환기 디퓨저 및 전열교환기, 스프링클러 헤드, 에어컨 실내기, 빨래건조대, 조명기구 등의 위치는 본 공사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p> <p>- 수전이 설치되지 않는 실외기실에는 배수구가 설치되지 않으며 물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p> <p>- 84A, 84B1, 84C 타입은 각각 침실1(84B1), 침실2(84A, 84C)에 개방형 발코니가 설치되며, 배정된 세대에 따라 설치방향이 다를 수 있습니다.</p> <p>- 일부 타입(84A, 84B1, 84C)에 설치되는 개방형 발코니는 서울시 건축심의 기준에 따라 5~20층 까지만 적용되며, 이외 층에는 개방형 발코니가 설치되지 않습니다. 다만, 추후 서울시 건축심의 진행 후 21~22층에 개방형 발코니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p>
창호/문	<p>- 건본주택 창호에 설치된 유리는 건본주택 설치를 위해 임의로 지정된 제조사에서 생산된 제품이며, 본 공사시 유리제조사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p> <p>- 창호 및 문의 열림 방향, 이와 인접한 날개벽체는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p> <p>- 세대 내 창호 및 문의 형태 및 위치는 건본주택 및 분양홍보물 기준으로 시공되나 규격 및 사양, 열림(개폐)방향, 형태, 날개 벽체 길이 등은 실제 시공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p> <p>- 본 공사 시 외부창호의 제조사, 크기 및 두께, 재질, 색상, 디자인, 손잡이, 하드웨어, 유리사양, 개폐방향, 설치위치 등은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건본주택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p> <p>- 공동주택 외부창호(발코니)는 내풍압 구조검토 등의 결과에 따라 세대별, 층별, 위치별로 창호사양(유리, 하드웨어, 창틀)이 상이하게 시공될 수 있습니다.</p>

	<p>- 세대 금속도어(현관방화문, 실외기실)의 프레임 및 손잡이는 사이즈, 형태, 위치, 개폐방향 등이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습니다.</p> <p>- 각 세대는 개별난방으로 계획됩니다.</p> <p>- 세대 내 평면의 배치 및 구조에 따라서 각 세대별 전용부위 및 공용부위에 설치되는 각종 배관 및 배선은 시공방식 및 길이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p> <p>- 복도 및 세대 천장 내부는 기계설비 및 전기시설물의 경로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p> <p>- 세대분전반(전기분전반)은 세대타입, 옵션선택에 따라 안방, 침실 또는 복도 내부 벽체 중 한 곳에 설치되어, 미관을 저해할 수 있고,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p> <p>- 통신단자함은 안방 및 침실 내부 벽체 중 한 곳에 설치되어, 미관을 저해할 수 있고,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p> <p>- 세대분전함은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주택용 분전반 업무처리방법 특별강조 지시사항에 따라 노출된 장소에 시설되며 추후 위치 변경은 불가합니다.</p> <p>- 통합단자함은 초고속정보통신 건물 처리지침에 따라 노출된 장소에 시설될 수 있으며 추후 위치 변경은 불가합니다.</p> <p>- 통신단자함, 세대(또는 호실)분전반, 전기 배선기구류, 조명기구, 전기 / 통신관련 마감재의 제품사양, 위치, 높이, 수량 등은 본 공사시 현장 여건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으며, 좌우 세대 및 옵션선택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한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사업주체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p> <p>- 벽걸이TV 설치 시 전선, 케이블 등이 노출될 수 있습니다.</p> <p>- 5층, 6층, 최상층 세대에 동체감지기가 설치되며, 위치 및 수량은 변경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사업주체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p> <p>- 욕실, 발코니 등에 설치되는 바닥 배수구, 수전, 우·배수 선출통, 보일러 등은 위치 및 형태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사업주체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p> <p>- 호실 내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해 점검구가 설치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p> <p>- 주방가구 하부장에 온수분배기가 설치되며 본 공사시 위치가 변경 될 수 있습니다.(주방가구 하부는 별도의 마감이 되지 않음)</p> <p>- 렌지후드 환기 배관 및 덕트를 점검하기 위한 점검구가 상부장 내부에 설치될 수 있으며, 현장 여건에 따라 점검구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p> <p>- 렌지후드 환기 배관으로 인해 일부 상부장 내에 자동식소화기 설치에 따른 사용이 제한 될 수 있으며, 환기 배관은 세대 천장, 발코니 천장, PD 등을 관통하여 외부에 배출되는 구조로 설치될 수 있습니다.</p> <p>- 가스배관이 설치되는 위치에 따라서 가스계량기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p> <p>- 인덕션 설치시 전기차단기의 위치 등으로 인하여 주방 약세사리의 설치 위치 및 방법과 수량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p> <p>- 발코니 확장 시 발코니 조명은 설치되지 않으며, 방등이 방 중심 쪽으로 위치 이동하여 설치됩니다.</p> <p>- 현관 쪽에 설치되는 일괄소등 스위치의 기능에는 승강기 호출기능을 포함하고 있습니다.</p> <p>- 발코니 및 욕실, 주방 등 상부층 세대 배관정경 및 보수를 위해 부득이 하부층 세대에서 천장배관을 점검할 수 있습니다.</p> <p>- 발코니,실외기실 부위에 설치되는 각종 설비배관은 노출배관(천장, 벽)으로 인하여 미관을 저해할 수 있으며,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p> <p>- 세대 환기(거실, 침실)용 전열교환기는 실외기실 또는 주방발코니 천정에 설치되며, 전열교환기 및 급배기 디퓨저 위치 및 수량은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p> <p>- 전열교환기, 에어컨, 보일러등의 가동으로 인해 소음이 발생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p> <p>- 세대 실외기실에는 배관, 덕트 등이 노출되어 시공될 수 있습니다.</p> <p>- 세대 환기를 위한 전열교환기는 주택형별 상이할 수 있으며, 해당 위치는 견본주택 및 문의를 통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p> <p>- 일부 세대에 공용설비 점검을 위한 점검구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p> <p>- 실내 점검구는 설비공사 등의 유지관리를 위해 수량이 증감될 수 있으며, 사양,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p> <p>- 전 평형 욕실내 건식공간에는 바닥 난방이 설치되나 가구장 하부, 샤워부스, 욕조 하부는 설치되지 않습니다.</p> <p>- 욕실에는 바닥 배수를 위한 바닥배수구와 환기를 위한 욕실 팬이 설치됩니다.</p> <p>- 화장실 천정에 매립형태로 급수급탕 분배기가 설치될 예정이며 본 공사 시 위치가 변경 될 수 있습니다.</p> <p>- 각 세대 타입별 옵션 선택에 따라 조명기구, 배선기구류의 설치 위치와 수량, 사양 등이 상이 할 수 있으며,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하기 바랍니다.</p> <p>- 승강기 운행으로 인한 진동 및 소음이 세대 내로 전달될 수 있으니 이점을 인지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p> <p>- 실외기 설치 시 세대 설치 요건에 따라 냉매배관의 설치 방향 및 형태가 세대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p> <p>- 벽체 내부에는 전기/통신용 배관 및 각종 설비배관(급수, 온수, 환기 등)이 매립되어 있으므로 벽체에 못박음이나 드릴을 이용한 작업시 안전상, 기능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p> <p>- 인덕션이 설치된 세대의 경우, 현관측 일괄소등 스위치 및 거실 월패드인 가스차단 기능이 전기차단 기능으로 변경됩니다.</p> <p>- 아일랜드장, 화장대 등 가구의 위치를 옮길 경우 바닥에 인출된 전선관 또는 케이블이 노출될 수 있으므로 위치 이동 및 철거 시 고려해야 합니다.</p>
<p>전기 /기계 설비</p>	<p>- 단지 내 공용시설(엘리베이터, 주차장, 편의시설, 부대복리시설(주민공동시설) 등)의 경우에는 동별 위치에 따라 이용에 불편이 있을 수 있으니 계약 전 필히 확인하시기 바라며 계약 이후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p> <p>- 본 아파트는 지상1층, 지하2~3층에 부대복리시설(주민공동시설 포함), 지상1층, 지하1층에 판매시설이 계획되어 있으니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로 인한 소음피해 및 사생활권 간섭이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하여 추후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습니다.</p> <p>- 쓰레기 분리수거장은 지상1층에 설치될 예정으로 일부 입주인에 주차장 배기 및 소음, 진동, 조망저해, 냄새, 해충에 의한 사생활권 등의 환경권 침해가 발생 할 수 있습니다. 해당 위치를 필히 확인 후 계약하시기 바라며, 세대와 인접하다는 이유로 이동요구, 설치거부를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p> <p>- 쓰레기분리수거장의 위치 및 개소는 사업시행계획인가 및 변경 도서 기준으로 시공되며, 시공 시 규모, 위치, 개소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고, 쓰레기수거장의 설치로 인한 미관저해, 냄새 및 소음, 분진, 해충 등에 의한 환경권, 조망권 및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쓰레기 수거차량의 상시접근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약 시 반드시 위치를 확인하시고,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p> <p>- 자전거 보관소는 각동 1층 및 옥외 EV 위치에 설치되며, 위치와 수량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p> <p>- 자전거보관소는 법 또는 사업시행계획인가 조건을 충족하는 수량을 설치하며, 설치 위치 및 규모는 공사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p> <p>- 지상1층, 지하1층에 판매시설이 위치하며, 입주 업종의 종류에 따라 냄새, 소음 등의 환경권 침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계약자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p> <p>- 판매시설, 부대복리시설의 구성 및 건축이용계획은 인-허가 과정이나 본 공사 시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판매시설, 부대복리시설은 입주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p> <p>- 판매시설, 부대복리시설은 법적으로 설치가 의무화된 품목만 당사가 시공하므로 제공 집기 및 마감재도 변동될 수 있습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판매시설, 부대복리시설 상부 및 인근에 실외기실이 계획되어 있으며, 이로 인해 조망권, 간섭 및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부대복리시설(관리사무소, 운동시설(휘트니스센터, GX룸, 골프연습장),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세대창고 등)은 설계변경을 통해 일부 실의 규모 및 배치형태, 내부구조 등의 건축계획과 마감재, 집기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향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주민공동시설 내 일부 공간은 입주인을 위한 A/S센터가 운영된 뒤 향후 주민공동시설 등으로 변경될 계획입니다. - 단지 내 설치되는 부대시설 등에 대한 사용과 운영방안에 대해서는 실 입주 후 관리사무소 및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하여 운영됩니다. - 입주 시 입주자의 편의 제공을 위하여 공용부분(주거공용 제외) 및 복리시설 중 일부를 입주지정기간 시작일로부터 6개월간(필요에 따라 연장 가능) 입주 지원을 위한 업무시설로 사업주체가 사용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사용료 등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입주 개시일로부터 5년간 입주자들의 편의 증진을 위해 공용부분(주거공용 제외) 및 복리시설 중 일부를 하자보수를 위한 업무시설 및 하자보수용 자재 보관 장소로 사업주체가 사용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사용료 등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 부대시설(관리사무소, 운동시설(휘트니스센터, GX룸, 골프연습장),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세대창고 등)은 사업주체가 설치하고 운영 및 관리 등은 입주 후 입주자 부담으로 입주자가 직접 운영하여야 하며,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인수·인계하기 전까지 위탁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 관리사무소는 동일 업체를 선정하여 별도로 운영 예정이나 향후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부대시설의 구성 및 건축 계획은 공간 활용의 개선을 고려해 실 배치 계획, 구조, 창호의 위치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분양 이후 설계변경 필요 시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주민공동시설은 추후 시설의 사용용도에 따라 구성되며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 향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입주 후 입주자들의 편의 증진을 위해 공용부분(주거공용 제외) 및 복리시설 중 일부를 하자보수를 위한 업무시설 및 하자보수용 자재 보관 장소로 사업주체가 사용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사용료 등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부대복리시설(주민공동시설)은 지하 및 지상에 설치될 예정으로 인접 지층부 세대는 외부통행으로 인한 소음 및 야간조명에 의한 간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부대복리시설(주민공동시설) 비주거부분 등의 옥상 및 단지 주변에는 에어컨실외기, 급배기, 환기팬, 기계장비, 조영 등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인접한 지층 세대에 조망권 침해 및 소음, 진동, 냄새, 분진, 눈부심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판매시설은 별도의 분양시설로서 아파트 계약자가 임의로 설계변경이나 대지지분 변경을 요구할 수 없으며, 공동주택단지외 별도구획이 불가하므로 향후 각 대지지분에 따른 구획 및 분할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 부대복리시설(주민공동시설) 및 판매시설의 실외기 시설이 시설의 옥상 또는 인근동 주변 및 동 판매시설 지붕에 설치될 수 있으며, 배관이 아파트 공용부를 지나갈 수 있습니다. 설치 상세 계획은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판매시설, 관리사무소, 부대복리시설(주민공동시설)등의 에어컨 실외기 설치로 인한 인근세대의 소음 등의 환경권 간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판매시설 및 부대복리시설의 환풍, 실외기실, 배기탑, 가스배관 및 제연환풍 D/A 등의 지상 돌출물의 위치 및 형태 일부가 공사 중 변경될 수 있고 일부 지층세대에서 소음 및 진동, 시선 간섭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지하층에 설치되는 기계실, 전기실, 저수조, 환풍 등은 본 시공 시 위치 및 크기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사업주체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발전기 가동시 발전기 D/A 인접세대 및 보행자에게 소음, 진동, 매연 등으로 인한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으며, 위치 및 설치 개소는 실제 시공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무인택배설비업체 운용지원 무상기간은 3년이며, 그 이후 “을”은 서비스 적용과 연장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각 동별 세대수 대비 무인택배함 수량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지상1층 경로당, 관리사무소, 지하2층 휘트니스센터, 지하3층 골프연습장 지하2~4층 세대창고는 공동주택 점유부분으로 계획되었으므로, 오피스텔 및 판매시설 입주자는 사용이 불가합니다.
<p style="text-align: center;">주차계획 (지하주차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차장 출입 가능한 제한 높이 : 지하2층 주차 통행로 2.7M(에스컬레이터 PIT구간(2.3M) 제외), 지하3층~지하5층 차량통행로 2.3M, 각각 주차구획 2.1M로 계획되어 있으며, 지하층 내 각종 설비 계획에 따라 일부 구간은 층고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무인택배함은 일부 동 지하층에 분산 배치예정이며, 배치계획은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차대수는 대지형태, 주동배치에 따라 동별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주차대수는 전체세대에 대한 지하에 배치된 주차대수의 평균 대수이므로 각 동과 인접된 주차장이 주차대수보다 부족하다 하여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습니다. - 아파트 입주민의 주차장(지하3층~지하5층)은 오피스텔(지하3층~지하2층), 판매시설(지하2층) 주차장의 하부층에 계획되어 있어 차량 진출입시 판매시설 주차장을 경유함에 따라 교통의 혼잡이 발생할수 있습니다. - 공동주택과 오피스텔 및 판매시설의 주차장 진출입로는 단지 남측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 단지 내 주차장은 동선, 기능, 성능개선을 위하여 설계변경 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사업주체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아파트의 주차장에 해당하는 지하주차장은 통합으로 계획되어 있으므로 현재의 배치, 차량 동선에 의하여 동별 주차 배분, 출입동선의 길이 등은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주차장 및 기타 공용연적에 포함되지 않는 피트부분 등의 면적은 변경 사용될 수 없습니다. - 주차장 상부는 각종 배선, 배관이 노출될 수 있습니다. - 주차장에는 공동주택 및 오피스텔, 판매시설의 배관, 케이블 및 기타설비 등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주차장은 최종 사업시행계획인가 도서에 준하여 시공되며, 현장 여건에 따라 경미한 변경이 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주차장, 부대시설 등 단지 내 부대시설 이용에 대하여 각 동별 계단실 등의 위치에 따라 거리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배치 및 이용여건 등에 대해 충분히 확인 바랍니다. - 전기자동차 충전설비는 주차장 내 분산 배치되어 있으며, 동별 접근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입주 후 기기에 대한 유지, 관리, 보수 및 전기세 납부는 입주자의 책임과 비용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 지하주차장과 각 동을 연결하는 통로공간과 지하부분 엘리베이터 홀, 계단실은 습도 및 온도차에 의해 결로가 발생 할 수 있으며, 주기적으로 환기를 적절히 시행하고 관리 차원의 예방조치가 필요하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습니다. - 주차장 출입부의 디자인은 현장여건에 따라 분양모형과 상이하게 시공될 수 있습니다. - 주차장은 계획상 기동 간격이 일정하지 않아 일부 주차면에는 기동과 간섭(운전석 및 보조석)되어 승하차 시 불편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주차장 및 펌프실, 전기실 등의 환기를 위하여 D/A(환기구)가 설치되며 이로 인한 시야 가림, 소음, 분진, 냄새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시고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 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단, 해당시설의 위치는 시공시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p style="text-align: center;">조경</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지 녹지, 조경 식재 및 시설, 포장, 조경부대시설, 동선계획 등의 면적, 위치, 규모, 수량, 크기, 색채, 형태 등이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습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부 조경 식재 및 시설물(녹지, 잔디, 수목, 휴게시설, 운동시설, 조경시설물, 보도/차도 포장재, 가로수, 외부조명 등)은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물으로써, 입주민에게 인계된 이후 발생하는 유지/보수/관리 및 특정서비스에 관한 책임 및 발생비용은 입주자에게 있습니다. - 단지 조경선형, 바닥포장 및 세부 식재계획은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습니다. - 단지 조경(식재, 시설물, 공간계획, 수경시설, 포장 등)은 설계변경 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사업주체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세부계획에 따른 단지 내 도로선형, 산책로 등의 동선계획이 및 단지 내부 포장의 재료, 패턴 및 색상은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습니다. - 수목의 생육과 단지 활착을 위해 식재 시 뿌리분에 감겨진 철사, 고무바 등은 제거되지 않고 존치될 수 있으며, 이는 수목고사와 전혀 관련 없는 사항으로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 조경공간에 시설물 환기를 위한 시설물(D/A)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 단지 내 식재계획의 위치와 규모, 수종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 조경 선형이나 포장 및 각종 시설물의 규모, 재료, 형태, 색채, 위치 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부 포장의 재료, 패턴 및 색상은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조경, 조경수 식재는 단지조화 등을 고려하여 설치나 위치가 변경될 수 있고, 관계기관의 심의결과 또는 시공과정에 의한 설계변경에 따라 도로의 선형 및 포장, 조경시설물의 색채, 형태, 재료, 위치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분양 관련 팜플렛, 인쇄물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단지 조경(식재, 시설물, 공간계획, 포장 등)은 설계 변경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사업주체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실제 시공 시 현장 여건 따른 소방안전 검토에 따라 설계 시 반영된 소방차 전용구간 및 소방/안전 활동을 위한 구획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조경계획이 변경되거나 수목이 식재, 변경될 수 있으나 이는 민원대상이 아닙니다.
<p style="text-align: center;">입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동 외부 특화 계획에 따라 세대별로 외부 창호의 크기, 색상 및 모양이 다를 수 있으니 반드시 계약 전 확인 후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 내 건축물의 색채, 형태, 패턴, 마감재와 같은 외관 디자인은 시공 상의 문제 또는 향후 지자체 경관자문 및 시공과정 상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 주동의 외벽에 부착되는 싸인물, 장식물은 분양모형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의 외부색채와 외부 상세계획 등은 인·허가, 색채심의 및 법규의 변경, 디자인의 개선 등으로 인하여 향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단지의 외부 마감에 따라 일부 세대의 전/후면 발코니 등에 장식물 및 외부별도 마감재가 부착될 수 있으며, 아파트에 부착되는 옥상장식물과 난간, 기타 부착장식물 등은 인접세대에 소음 및 눈부심 등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 판매시설의 외관 및 색채, 마감자재는 분양 후 외관 개선을 위해 변경될 수 있으며, 경미한 사항의 경우 별도의 동의 없이 진행될 수 있으며, 경미한 사항 외의 경우 추후 관련한 내용의 안내에 따라 설계변경 동의서를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합니다. 해당 설계변경 동의서의 미 협조 시 외관 개선이 불가하며 견본주택에 전시된 모형 및 CG를 기반으로 시공됩니다. - 본 단지에 적용된 각종 입면 및 마감, 색채에 대한 디자인 일체는 사업일체의 고유한 자산이므로 인·허가 등 중대한 변경 사유발생 및 마감수준 저하가 아닌 경우 별도의 동의절차를 받지 않습니다. - 인허가 진행 및 본 공사 시 외관개선을 위하여 아파트 및 부대시설의 외관디자인(입면 마감재료 및 색채, 축벽디자인, 옥탑장식물, 몰딩, 창틀 모양 및 색상 등), 필로티, 동 현관, 캐노피, 지하출입구, 난간 디테일, DRY AREA, 조경패턴 등 외부 시설물 등은 관계기관의 협의 결과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상기 사항은 입주자의 개인 취향이나 민원에 의해 변경 될수 없습니다. - 본 단지의 저층부, 판매시설의 외부 입면디자인과 마감재 변경 및 기타 설계변경 등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아파트 축벽 로고의 위치는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취향 민원에 의한 변경사항이 될 수 없습니다. - 외부에 사용되는 각종 자재의 경우 수급불가 및 단종, 외부환경 및 현장여건 등의 사유로 인하여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제품으로 변경 시공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입주자에게 별도의 동의 절차를 받지 않습니다. - 주동 외벽 등에 장식물(로고 등), 조명 및 외부별도 마감재가 부착될 수 있으며, 외벽에 부착되는 장식물, 조명, 난간, 보일러배기구, 가스배관, 환기구 기타 부착장식물 등은 인접세대에 소음,냄새 및 눈부심 등을 일으킬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하여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추후 경관조명 등 관련 좋은 빛(빛공해) 심의 예정으로 수량이나 설치 위치 등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동 및 부대시설의 외관(입면, 창호, 난간, 로고 등의 형태 및 색), 공동부분의 계획(조경, 주동출입구, 지하출입구 등)은 실제 시공 시 설계 개선, 시공성, 편의성, 구도 등의 개선사유로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입주자에게 별도의 동의 절차를 받지 않습니다. - 단지 내 동 현관, 지하 출입구 등 공동부분은 디자인 의도에 따라 형태, 재질, 색채 등이 각기 다르며 상기 사항은 입주자의 개인 취향이나 민원에 의한 변경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 노출되는 옹벽이나 구조물의 마감은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데크형태의 입면(옹벽, 조경석, 토목옹벽 등의 구조물, 주차출입구, 부대복리시설, 판매시설 입면 포함)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p style="text-align: center;">전기/통신/ IOT 관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지 내 전기공급을 위한 한전 시설물(전주, 변압기, 개폐기 패드 등) 및 통신사업자 시설물(케이블 등)이 동 주변 지상에 설치되어 일부 세대에서 보일 수 있고, 해당 설비 및 전력맨홀, 통신맨홀 등의 위치와 외부 배관 인입위치는 한국전력, KT 또는 기간 통신사업자와 협의의 후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통신실(TPS실)의 Work Group Switch Hub, 광분배기 및 통신 세대단자함 내에 시설되는 MultiPlexer 등은 기간사업자 제공 본으로 시공사에 설치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주차관제시스템 등 입주자 편의시설 원활한 사용을 위하여 개인정보(휴대전화번호, 차량번호 등)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주차관제시스템(입출차 차단기 등)의 위치는 교통통제의 편의성 및 효율성을 위하여 이동하여 설치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조명기구 설치로 인해 일부 세대는 다소 불편함을 겪을 수 있으며, 이와 관련된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에너지 생산량은 자연환경 및 입주자의 유지관리 유무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 반도유보라 바이비 스마트 단지 서비스 홍보 내 표현한 기능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 입주시 성능개선 또는 미구현 등으로 서비스향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반도유보라 바이비 스마트 단지 서비스는 단지 입주 시작을 기준 4년간 무상으로 제공될 예정입니다. 무상 제공기간 종료 후 단지에서 서비스 이용을 원할시 월 단위 과금 예정입니다. - 반도유보라 바이비 스마트 단지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스마트폰 단말기가 인터넷에 연결되어야 하고 (통신사 무관), 아파트단지 네트워크 망이 외부 네트워크와 연결되어 있어야 하며, 제어방식에 따라 일부 기기는 별도의 서비스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이용조건은 사용자와 바이비 서비스의 계약 내용에 준하며, 추후 서비스 내용에 따라 변경 및 종료될 수 있음) - 반도유보라 바이비 스마트 단지 서비스 관련하여 추후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변경 사항이 발생할 수 있고, 서비스 운영사(HTbeyond)의 사업정책에 따라 예고 후 종료될 수 있으며, 세부 이용조건은 서비스 운영사(HTbeyond)의 계약 내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 및 카달로그에 유니트가 건립되지 않는 주택형의 내부 치수 및 마감재의 사양, 각종 가구 및 설비 등은 견본주택에 유니트가 건립되는 주택형과 상이할 수 있으며, 추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p style="text-align: center;">기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열재 사양 및 공동부, 부대시설, 필로티 계획 등 관련법규(「건축법」, 「주택법」 등)에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사업주체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에 포함된 시설물(전기&통신시설물(공동조명 포함), 단지 홍보용 사인물, 포장시설, 수목관리 등)로 인하여 발생하는 유지/보수/관리에 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용부위 조명 및景觀조명, 보안등, 조경용 조명, 싸인용 조명 등 단지에 포함된 시설물을 인하여 발생하는 유지, 보수, 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단지 내 설치되는 미술장식품은 인허가 관청의 미술장식 설치계획 심의를 득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위치, 형태, 수량 등은 심의과정과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한국전력 전기 공급약관에 의거하여 부지 내 한전 개폐기 또는 점주 및 전선 등이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상수도사업소 상수도 공급기준 등에 의거하여 부지내 수도메타기 등이 설치 될 수 있습니다. - 동파가 우려되는 설비배관에는 동파방지를 위한 열선이 적용되며 이에 따른 전기료가 관리비에 포함되어 부과됩니다. - 소방내진법규에 의거하여 위생/소방용 구조의 규격, 재료, 형식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준공시 소방 및 장애인 기준에 관련된 사항은 허가 완료시 보다 법적 의무 적용사항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으며, 해당 기준에 맞춰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으므로 이를 인지하고 계약하여야 하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분양 시 계획된 야간경관조명 계획은 야간경관심의 의견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景觀조명으로 발생하는 유지, 보수 등에 대한 비용은 입주자가 관리비로 부담하여야 하며, 시설물에 대한 계획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판매시설 내 복도 내부 소방시설물인 옥내소화전이 부득이하게 설치될 수 있습니다. - 본 단지는 아파트, 오피스텔, 판매시설로 구성된 주상복합 아파트로서 관리실 및 방재실 등 공용사용 공간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	------------------------------------------------------------------------------------------------------------------------------------------------------------------------------------------------------------------------------------------------------------------------------------------------------------------------------------------------------------------------------------------------------------------------------------------------------------------------------------------------------------------------------------------------------------------------------------------------------------------------------------------------------------------------------------------------------------------------------------------------------------------------------------------------------------------------------------------------------------------------------------------------------------------------------------------------------------------------------

■ 기타 유의사항

구분	내용
전시품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본주택은 84B 타입만 설치되며, 건본주택에 미설치된 타입에 대해서는 분양상담을 통해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평면 및 마감재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건본주택에 설치된 모든 CG, 모형, 홍보물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건본주택 모형의 색상, 입면, 구조물, 주동 출입구 등은 본 공사 시 디자인 및 구조, 재질, 설치 위치 등이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습니다. - 건본주택 모형 단지 경계 외부는 이해를 돕기 위한 표현으로 사실과 다를 수 있습니다. 청약 및 계약 전 현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건본주택 모형의 단지 경계 내 바닥표현 모형의 스케일에 따라 표현에 한계가 있는 사항으로, 본 시공 시 패턴 및 색상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청약 및 계약 전 해당 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건본주택 내 조명, 디스플레이용 장식품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설치한 것으로 본 공사 시 제외되며, 단지 모형의 조경, 식재, 주변 환경 및 부지 고저차 등은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건본주택에 시공된 제품은 자재의 품질, 품귀, 생산중단, 제조회사의 도산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동질, 동급의 타사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분양자에게 통보하기로 합니다. - 건본주택에 설치된 타일 및 시트판(옵션)은 본공사 시 품질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타일 나누기가 추가되거나,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건본주택은 분양 후 일정기간 공개를 거쳐 폐쇄 및 철거할 수 있으며, 철거 전 동영상 또는 사진으로 건본주택 내부를 촬영하여 보관할 예정입니다. - 건본주택에 설치된 감지기, 유도등 및 스프링클러는 건본주택 자체의 소방시설이며, 본 공사 시 설계도면 및 화재안전기준에 의거하여 설치됩니다. - 건본주택에 설치된 조명기구, 분전반, 통신 단자함, 배선기구류, 월패드 등은 제품의 성능, 디자인 및 기능 개선을 위해 제품 사양, 위치, 수량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건본주택 내에 설치된 전시조명 및 디스플레이 연출용 조명은 연출을 위한 조명으로 본 공사에 적용되지 않는 품목입니다. - 건본주택의 전시품 및 연출용 시공부분, 분양홍보물, 팜플렛 등 각종 인쇄물 및 조감도는 개략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구획선과 시설물의 위치, 규모, 색채 및 설계도면 등의 표시가 계약체결 이후 설계변경승인 및 신고 등에 따라 일부 변경될 경우에는 인·허가 내용대로 시공되며 계약자에게 통보함.(단,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대해서는 6개월 이하의 기간마다 그 변경내용을 모아서 계약자에게 통보할 수 있다.) - 사이버 건본주택의 VR 동영상은 건본주택을 촬영한 것으로 마감재 이외에 디스플레이를 위한 전시상품이 포함된 VR 동영상이므로 사이버 건본주택상의 전시품목 안내 및 건본주택은 청약 및 계약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건본주택에 설치된 단지모형 및 단위세대는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며, 대지 주변현황, 공사 시 필요한 설비기기 및 출입문 등은 표현되지 않습니다. - 건본주택에 설치된 세대 환기 장치, 환기 디퓨저, 온도조절기, 콘센트 및 바닥배수구, 욕실환풍기 등의 제품사양 및 위치는 실시공사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건본주택관 내에서 확인이 어려운 사항인 공용부분의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의 용량·속도, 탑승위치 등)은 사업시행계획인가 도서에 준하며, 이로 인해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카달로그 내용과 입주자모집공고문 및 공급계약서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주자모집공고문과 공급계약서 내용이 우선 적용됩니다.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양 시 홍보물 및 실내투시도에 표시된 가전제품 및 인테리어소품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계약 시 비포함 사항임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건본주택에 설치된 스프링클러와 감지기는 건본주택용 소방시설로, 본 시공과 무관합니다. - 건본주택에 설치된 보조 조명, 커튼, 소파, 거실장, 거실 테이블, 침대, 책상 등의 이동식 가구, 디스플레이 가전, 액자 및 소품은 세대 연출을 위한 것으로 본 공사 시 시공에서 제외합니다. - 건본주택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무상옵션 품목 뿐 아니라 추가 품목 선택도 설치되어 있으므로 반드시 계약 전 마감사양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이버 건본주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이버 건본주택의 이미지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용으로 실제 적용시 설계 도서에 준하여 적용될 계획이며, 청약 및 계약 전 건본주택 내 비치된 설계도면 및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통해 충분히 확인하시기 바라며 추후 이와 관련된 어떠한 민원 및 민·형사상의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사이버 건본주택에 표현된 창호 외부에 보이는 전경은 이미지일 뿐이며, 본 전경 이미지는 평형 별 동호라인의 조망 및 향에 따라 준공 후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 홈페이지, 각종 인쇄물 등에 사용된 사진, 이미지, 그림 등은 소비자 이해를 돕기 위해 촬영 또는 제작한 것으로 실제와 다소 상이할 수 있으므로 계약 전 방문하여 직접 확인하시기 바라며 각종 홍보물에 표시된 기반시설 및 개발계획은 사업주체나 시공사가 아닌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해당공사 등이 설치하거나 추진하는 현재의 계획 및 예정사항으로 향후변경, 취소, 지연될 수 있으므로 계약자는 이를 사전에 충분히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추후 이에 대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홈페이지, 각종 인쇄물 및 건본주택 사인물에 삽입된 광역위치도, 교통망, 토지이용계획도, 조감도, 단지배치도, 조경 및 부대시설, 각 주택형별 단위세대 평면도, 이미지 컷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이므로 실제 시공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식재 및 시설물의 위치와 규모는 측량결과 및 각종 평가의 결과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홈페이지의 VR동영상 및 카달로그 등 각종 인쇄물에 사용된 인테리어 사진은 건본주택을 사전에 촬영한 것으로 마감재 이외의 추가 설치 품목, 디스플레이를 위한 전시용품이 포함된 것으로 계약 전 건본주택을 방문하시어 건본주택 상의 전시품목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건본주택 개관 전 사전에 이루어진 광고, 홍보 상 부대시설 및 기타사항 등은 인허가 과정에서 변경, 축소될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 후 청약 및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각종 홍보물 상의 단지 내 운동시설, 휴게센터, 관리사무소 등의 내부구조 및 시설물에 대한 제공여부, 수량, 인테리어 계획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향후 변경될

	<p>수 있으므로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하시길 바라며 추후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종 홍보물에 분양홍보자료는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로 변경 및 취소될 수 있으며 개발계획 예정도 등은 예정사항으로 향후 변경 또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 및 도면에 표현된 바닥배수구, 선출통, 온도조절기, 콘센트, 스위치, 환기디퓨저, 스프링클러헤드, 보일러, 위생기 등 제품 사양 및 위치는 본 공사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홍보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 카탈로그 및 홍보물 등에 이용된 사진, 일러스트(그림) 등은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촬영 또는 제작한 것으로 실제와 상이할 수 있으며, 식재 및 시설물의 위치와 규모는 다소 변경될 수 있으므로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분양 홍보에 사용된 모형(단지모형 등)과 공급 안내문, 카탈로그 및 각종 인쇄물, 홍보영상 기타 홍보물에 삽입된 CG(광역 위치도, 조감도, 배치도, 투시도, 주민공동시설 평면도, 입체도와 평면도 등),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그림), 평면도(치수, 구획선), 실내투시도(색상, 구획선), 면적 및 도면내용 등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촬영 또는 개략적으로 제작된 것으로 실제 시공과는 다소 상이할 수 있으므로 견본주택 및 현장을 방문하시어 직접 확인하시기 바라며, 추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위세대 평면도 및 이미지 컷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임의로 가구 등을 시뮬레이션한 것으로 계약 시 포함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분양 홍보물 및 모형에 표현된 주변 토지 및 건물현황은 간략하게 표현된 것이므로 계약 전에 현장답사 및 사전확인을 통하여 충분히 확인하시기 바라며 추후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입주자모집공고 이전 제작·배포된 홍보물 등은 사전 홍보시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현재와 다소 상이할 수 있으니 견본주택을 확인하시어 계약 시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 각종 광고 및 홈페이지 VR, 홍보물(카탈로그, 전단, 안내문 등) 등 홍보과정에서 현재 계획 또는 예정으로 홍보한 내용은 추후 인허가 과정이나 관계기관의 사정, 관련정책 등의 변화로 변경될 수 있으며, 홍보물 제작과정에서 오기·오탈자로 인하여 잘못 기재 될 수 있으니 견본주택에 방문하시어 확인하시고 청약 및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 이미지 컷 및 전시모형은 전 세대 발코니확장을 감안하여 작성되었습니다. - 카탈로그 및 홍보물 등에 이용된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그림) 등과 견본주택 내 전시모형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임의로 가구 및 집기류를 표현하여 촬영 또는 제작 연출한 것으로 식재 및 색상, 시설물 등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견본주택 및 현장을 방문하시어 직접 확인하시고 청약 및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고내용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건축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에 의거합니다.

■ **하자담보 존속기간 및 하자보수**

- 하자담보 존속기간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동법시행령 제5조,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36조에 의거하여 적용됩니다.
- 하자의 판정은 국토교통부 고시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이 적용됩니다.
- 콘크리트의 폭 0.3mm이하의 미세한 균열은 공사상의 하자 범위에서 제외합니다.
- 하자보수 절차는 「공동주택관리법」 제37조에 의거하여 적용됩니다.
- 하자 판정 기준 도면은 사용검사(사용승인) 도서를 기준으로 합니다.
- 아파트 입주자의 하자보수 관련 일체의 입주자 피해보상은 「공동주택 관리법」 제36조, 제37조, 제38조에 따라 적용됩니다.

X 기타사항

■ **친환경 주택의 성능 수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제21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에 따라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을 다음과 같이 표시합니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4조에 따른 친환경 주택의 건설 기준 등)

의무사항	적용여부	사양, 성능, 설치위치, 설치개수(필요시)
고단열 고기밀 현관문	적용	- 1등급
창의 기밀성능(세대 직접외기 이중창)	적용	- 1등급
건축부분 설계기준 (제7조 제3항 제1호)	단열조치 준수(가목)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 제1호에 의한 단열조치
	바닥난방의 단열재 설치(나목)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 제3호에 의한 바닥난방에서 단열재의 설치
	방습층 설치(다목)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 제4호에 의한 기밀 및 결로방지 등을 위한 조치를 준수
기계부분 설계기준 (제7조 제3항 제2호)	설계용 외기조건 준수(가목) (냉·난방설비가 없는 경우 제외)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8조 제1호에 의한 설계용 외기조건 준수
	고효율 전동기(라목)	-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 따라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인증받은 제품을 사용
	고효율 난방, 급탕·급수펌프(마목)	-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인증 받은 제품을 사용하거나 또는 그 평균 효율이 KS 규격에서 정해진 기준 효율의 1.12배 이상 제품을 사용
	절수형설비 설치(바목)	- 세대 내 설치되는 수전류는 「수도법」 제15조 시행규칙 제 1조의2, 별표2에 따른 절수형 설비 적용
	실별 온도조절장치(사목)	- 각 실별 온도 조절장치 설치
전기부분 설계기준 (제7조 제3항 제3호)	수변전설비 설치(가목)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 제1호에 의한 수변전설비 설치
	간선 및 동력설비 설치(나목)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 제2호에 의한 간선 및 동력설비 설치
	조명설치 설치(다목)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 제3호에 의한 조명설비 설치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 설치(라목)	- 거실, 침실, 주방에 각 1개소 이상 설치
	공용화장실 자동정열스위치(마목)	- 부대시설 화장실 내 자동정열 스위치 설치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 주요 내용

보증서 기간	보증금액	보증서 번호
입주자모집공고승인일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사용검사 또는 당해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검사 포함)까지	92,718,500,000	01292024-104-0000600

※ 본 주택은 HUG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을 득한 아파트입니다.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약관

제1조 (보증채무의 내용)

공사는 「주택도시보증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주채무자가 보증사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 해당 주택의 분양이행 또는 환급이행 책임을 부담합니다.

【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의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주채무자】 보증서에 적힌 건축주 또는 사업주체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주상복합주택】 주택 이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에 건축하는 경우 주택을 말하며, 이 경우 그 주택과 함께 동일 건축물에 건축되는 일반에게 분양하는 복리시설(주택 이외의 시설중 오피스텔을 제외한 시설을 말합니다. 이하 “복리시설”이라 함) 및 오피스텔을 포함합니다.

【분양이행】 주택법령에서 정한 주택건설기준 및 해당 사업장의 사업계획승인서,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여 임주를 마칩니다.

【환급이행】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되돌려 줍니다.

제2조 (보증이행 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입주금 등의 납부)

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분양권 양도자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포함)에는 보증채권자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않습니다.

1. 천재지변, 전쟁, 내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사정으로 주채무자가 주택분양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여 발생한 채무
2. 주채무자가 대물변제·허위계약·이중계약 등 정상계약자가 아닌 자에게 부담하는 채무

【대물변제】 주채무자의 채권자가 그 채권에 대하여 주채무자가 분양하는 아파트 등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변제에 갈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허위계약】 분양의사가 없는 자가 주채무자의 자금 유통 등을 돕기 위하여 명의를 빌려주어 분양계약을 하는 것으로 차명계약을 의미합니다.

3. 보증서발급(주택의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를 말한다) 이전에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입주금】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로부터 받는 계약금과 중도금 및 잔금을 말합니다.

4.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한 입주금납부계좌(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분양계약서에서 지정한 계좌를, 공사가 입주금납부계좌를 변경·통보한 후에는 변경된 납부계좌를 말함)에 납부하지 않은 입주금
5. 공사가 보증채권자에게 입주금의 납부증지를 알린 후에 그 납부증지통보계좌에 납부한 입주금
6.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납부기일 전에 납부한 입주금중 납부기일이 보증사고일 후에 해당하는 입주금. 다만, 공사가 입주금을 관리(주채무자 등과 공동관리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계좌에 납부된 입주금은 제외합니다.
7. 보증채권자가 분양계약서에서 정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넘어 납부한 입주금
8.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입주금에 대한 이자, 비용, 그 밖의 종속채무
9. 보증채권자가 입주금의 납부지연으로 납부한 지연배상금
10. 보증채권자가 대출받은 입주금 대출금의 이자
11. 보증사고 전에 분양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에게 되돌려 주어야 할 입주금. 다만, 보증사고 사유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유로 보증채권자가 보증사고 발생 이전에 분양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12. 주채무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입주예정일 이내에 입주를 시키지 못한 경우의 지체상금
13. 보증채권자가 제5조의 보증채무 이행청구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3조의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그 밖에 보증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발생하거나 증가된 채무
14.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주택 또는 일반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의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않은 사양선택 품목(예시:홍오토, 발코니샤시, 마이너스오피션 부위, 그 밖의 마감재공사)과 관련한 금액
15. 주채무자·공동건축주(공동사업주체)·시공사 등과 도급관계에 있는 수급인, 그 대표자 또는 임직원 등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주채무자·공동건축주(공동사업주체)·시공사 등에게 자금조달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납부한 입주금
16. 주채무자·공동건축주(공동사업주체)·시공사 또는 그 대표자 등이 보증채권자에 대한 채무상환을 위하여 납부한 입주금
17. 주채무자·공동건축주(공동사업주체)·시공사 또는 그 대표자 등으로부터 계약금 등을 빌려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② 공사가 제6조에 따라 분양이행으로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에는 보증채권자는 잔여입주금 및 제1항 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입주금을 공사에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입주금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잔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1. 사용승인일(사용검사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잔금
2. 임시사용승인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잔금 중 전체 입주금의 9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잔금

【보증채권자】 보증서에 적힌 사업에 대하여 주택법령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준수하여 주채무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분양권 양수자를 포함)를 말합니다. 다만, 법인이 주택을 분양받는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 이전에 그 주택분양계약에 대하여 공사에 직접 보증편임을 요청하고 동의를 받은 법인만 보증채권자로 봅니다. 이하 같습니다.

제4조 (보증사고)

- ① 보증사고란 보증기간 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주채무자의 정상적인 주상복합주택분양계약(이하 “분양계약”이라 함)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를 말합니다.
 1. 주채무자에게 부도·파산·사업포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예정공정률(주채무자가 감리자에게 제출하는 예정공정표상의 공정률을 말함. 이하 같음)보다 25퍼센트P 이상 부족하여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다만, 입주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행청구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3.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75퍼센트를 넘는 경우로서 실행공정이 정당한 사유 없이 예정공정보다 6개월 이상 지연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4. 시공자의 부도·파산 등으로 공사 중단 상태가 3개월 이상 지속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보증기간】 해당 주상복합주택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일(복리시설의 경우 보증서 발급일을 말한다)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사용승인(사용검사) 또는 해당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승인(동별사용검사)을 받은 경우에 한함]까지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② 보증사고일은 공사가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사고 안내문으로 알리면서 다음 각 호 중에서 보증사고일로 지정한 날을 말합니다. 이 경우 공사는 보증서에 적힌 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를 한 일간지(공고를 한 일간지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1개 일간지를 말함)에 실어 통보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이하 같습니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부도·파산일, 사업포기 관련 문서접수일 등
2. 제1항 제2호에서 제4호의 경우에는 보증이행청구 접수일
 - ※ 아파트 공사진행 정보 제공 : 분양보증을 받은 아파트 사업장의 공사진행 정보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HUG-i)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음.
 - ※ 분양자(매도인)는 이 계약체결과 동시에 수분양자(매수인)에 대한 분양대금채권을 주택도시보증공사에게 양도하고 수분양자는 이를 이의없이 승낙하기로 함.

■ **감리회사 및 감리금액(감리금액은 사정에 따라 다소 변동될 수 있음)** (단위 : 원,VAT포함)

구분	건축	소방·정보통신	전기	비고
회사명	(주)해승종합건축사사무소	상지이앤씨(주)	상지이앤씨(주)	
감리금액(VAT포함)	1,867,192,800	541,200,000	281,600,000	

■ 사업주체 및 시공회사

구분	사업주체	시공사
상호	영천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주)반도건설
법인등록번호	274171-0006643	180111-0624311
주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191-1, 4층(영천동)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7길 12, 11층(역삼동, 허버허바빌딩)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견본주택 또는 사업주체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에는 관계법령이 우선함)

■ 견본주택 위치 :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23

■ 분양문의 : ☎ 1661-0161

■ 홈페이지 주소 : <https://www.경희공유보라.com>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분양계약서의 일부로 구성되며, 청약자는 필히 본 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견본주택 또는 사업주체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사항의 오류 및 공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이 우선합니다. / 본 공고와 공급(분양)계약서 내용이 상이할 경우 공급(분양)계약서가 우선합니다.]

※ 자세한 공사범위 및 마감재는 견본주택에서 확인 바랍니다.